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발표자 (2)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삼승 (변호사)

○사회자 (1)
송영천 (서울 제2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언론사 (17)
이호준 (서울신문 인터넷 부장)
이재구 (전자신문 국제기획부장)
강서규 (중앙일보 디지털뉴스센터 편집장)
정진건 (매일경제 사회부 차장)
강무성 (SBS 컨텐츠운용팀 차장)
안재형 (SBS 사내변호사)
민경중 (CBS 노컷뉴스 부장)
장기영 (YTN 디지털뉴스팀장)
임홍렬 (대전 KBS 보도팀 기자)
이수강 (미디어오늘 뉴미디어팀장)
변희재 (런아시아넷 편집국장)
김중기 (매일신문 인터넷뉴스팀장)
진영록 (전북일보 미디어팀장)
한성일 (중도일보 문화부 차장)
양근용 (충청투데이 부여주재 기자)
박유화 (동양일보 취재부장)
김정연 (인터넷 부여 뉴스 기자)

○중재위원 (18)
조준희 (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
허광욱 (부위원장)
안병준 (서울 중재위원)
이수언 (서울 중재위원)
노향기 (서울 중재위원)
신찬균 (서울 중재위원)
박봉간 (서울 중재위원)
문영희 (서울 중재위원)
이기중 (서울 중재위원)
주동황 (서울 중재위원)
김동호 (서울 중재위원)
한상곤 (대전 중재위원)
김강덕 (대전 중재위원)
이도영 (충북 중재위원)
박종호 (충북 중재위원)
임경숙 (경남 중재위원)
김창룡 (경남 중재위원)

○포털사이트 (2)
박정용 (네이버 미디어유닛장)
오인균 (네이트 미디어서비스 그룹장)

○언론유관단체 (1)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정계 (1)
권순철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 비서관)

○사무처 (13)
김용주 (사무총장)
임병국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본부장)
오중석 (전문위원)
김일경 (조사연구팀 팀장)
김문성 (조사연구팀 직원) 외 8인

〈제1주제〉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

황 용 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동아대 사회학과 졸
□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 한국전산원 인터넷 백서 편찬위원회 집필위원
□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1. 문제제기

오늘날 언론은 19세기 중반 동전신문(penny press)이라고 하는 대중신문이 등장했던 이래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20세기말과 21세기를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언론은 이전의 변화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변화의 핵심에는 인터넷이 있다.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뉴스와 언론의 개념뿐만 아니라 뉴스의 공급과 소비방식 등 구조적 변화를 불러온다. 언제 어디서나 소비되는 뉴스, 글로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순간적으로 전개되는 뉴스보도, 상호작용성,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뉴스 전달과 소비의 극단적인 개인화 등은 인터넷이 만들어내고 있는 언론현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Pavlik, 2000).

그런 점에서 인터넷이 갖는 의미는 구텐베르그의 활판인쇄에 버금가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결합되는 사회체제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인쇄기술은 산업사회, 대의제민주주의 그리고 대중사회와 결합해서 오늘날의 대중매체 즉, 언론을 탄생시켰다. 대중매체에 기반 한 언론은 근대정치의 가교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반면, 인터넷은 정보사회,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와 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상으로 거시적이고 구조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

정치가와 저널리스트가 구분되지 않던 시대에서 저널리스트가 직업적으로 분화되어 나온 것이 저널리즘의 역사라면, 지금은 저널리스트와 시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채널 역시 이야기꾼의 재담에서부터, 인쇄매체, 전파매체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혁

신적인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의 구조와 관행이 기술과 통합되면서 생성된다(Boczkowski, 2004). 인터넷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론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낡은 개념 틀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개념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념은 사회현상을 앞질러 가기보다는 뒤따라가며 정의 내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할 적절한 개념 도구는 부족하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의 하나로 자리 잡은 포털뉴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뉴스와 저널리즘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통적 개념들만으로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새로운 현상이지만 이미 우리사회의 주류 현상이 된 포털뉴스를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 서비스가 가져온 언론학적 변화를 점검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매체동학적 관점에서 포털뉴스의 변화상과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포털뉴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포털의 일반적 정의

포털(portal)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관문역할을 하는 사이트를 일컫는다.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색, 뉴스, 무료 이메일, 토론그룹, 온라인 쇼핑, 참고자료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mason.gmu.edu/~montecin/netterms.htm). 최초의 웹 포털은 AOL과 같이 온라인 접속서비스였지만 최근에는 대표적인 검색엔진들이 많은 수의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 기능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smartbizconnection.com/advertising__glossary__index.htm).

포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다른 사이트를 가기 위한 관문이자 교차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관문으로서 포털은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는 네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 같은 웹브라우저를 제공하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네트워크에 산개되어 있는 정보가 많아지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야후나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같은 초기 검색업체가 주요 포털로 등장했다. 오늘날은 다음이나 네이트와 같이 커뮤니티나 블로그 기능이 강조된 사이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문주영, 2001).

두 번째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사이트로서 일정 수준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단순히 웹사이트에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털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관문을 통과하는 이용자가 많아야지만 포털이 갖는 미디어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용자가 있어야 포털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세 번째는 포털은 단지 인터넷 접속 시 최초로 접하는 사이트로 다른 사이트로의 연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오정수, 2003). 즉, 많은 이용자들이 단지 거쳐가는 관문으로써의 역할이외에도 최초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핵심역량인 많은 트래픽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수익원인 광고나, 전자상거래, 콘텐츠 판매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포털사이트 미디어 콘텐츠의
주된 공급자이자 소비처로
자리 매김해

다양한 콘텐츠 기업들이 포털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해 나갔다.

포털의 성격은 검색포털, 접속포털, 커뮤니티포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색포털은 구글, 야후, 알타비스타, 엠파스 등 검색엔진에서부터 출발한 포털을 의미한다. 접속포털로는 인터넷제공자(IP)가 운영하는 초기 접속 사이트로 KT의 메가패스, 하나로통신의 하나포스 등이 있다. 커뮤니티포털은 메일이나 무료홈페이지 등을 제공하는 포털로서 다음, 싸이월드, 네띠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류는 그 포털서비스의 진화순서와도 일정 정도 일치한다.

2) 언론매체로서 포털

포털업체들은 주로 많은 이용자 트래픽을 기반으로 광고수익에 의존하여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점차 미디어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구현하는 복합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초기 포털의 개념이 인터넷 접속의 관문이거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한 허브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의 포털은 회원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공간(블로그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서 최대한 사이트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오정수, 2003. p.154). 이것은 포털이 단순한 중개사이트에서 목적지 사이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털 서비스의 진화는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포털이 미디어 콘텐츠의 주된 공급자이자 소비처가 된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서도 뉴스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포털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가. 언론개념의 이중성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는 매우 복합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언론의 개념은 다양한 개념차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의 관점에서 언론은 언론인이라는 전문직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 그 자체 또는 그것을 매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의의 관점에서는 의사소통 행위 일반을 지칭하기도 한다.

언론이라는 개념이 갖는 이중적 측면은 헌법상에도 나타난다. 헌법상의 언론관련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검열제의 금지,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정주의 그리고 언론·출판의 내재적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의 개념이나 언론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헌법상 조문에 따른다면, '언론'은 표현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개인적 담화(speech), 출판, 신문, 방송 그리고 통신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와 그것을 매개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서는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를 매개하는 매체의 형태적 특성을 제한하지 않고 의사표현 행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이나 지식, 정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언론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도 의사표현과 의견형성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언론적 특성을 인정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박선영, 2003).

포괄적 의사표현 행위로서 언론을 정의내릴 경우, 포털뉴스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의사표현과 전파행위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털과 같은 인터넷 매체의 언론성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차원에서 온라인 담론을 펼치거나 또는 글을 쓰는 것과 같은 공표(publishing)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블로그, 뉴스그룹 서비스나 게시판 그리고 공공문제를 다루는 토론방과 같이 가상공간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온라인 담론영역을 개념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윤영철, 2001).

그러나 언론을 언론인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의 제작, 전송, 복사 행위로 본다면 그 의미는 조금 더 축소된다. 이러한 행위를 지칭하는 언론개념은 'journalism'을 번역한 경우와 'press'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저널리즘을 번역한 언론의 개념은 "언론활동이나 이러한 활동분야, 시사적 문제에 대한 뉴스 등을 취재, 편집해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보도, 논평, 해설 등을 하는 활동 또는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분야"를 말한다.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쥬르나(jurna) 즉,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것이 변해서 영어의 저널(journal)로 변형이 되었다. 저널의 개념은 우리말로 정기간행물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행위, 주의, 제도, 직업 등을 뜻하는 'ism'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임영호, 2000).

어원상으로 저널리즘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업활동을 의미하지만 방송과 같은 전자매체가 등장하면서 방송을 포함하게 되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광고나 오락적 활동을 제외한 시사문제에 대한 논평이나 해설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프레스(press)를 번역한 언론의 개념은 신문사 또는 신문제작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언론의 개념을 사용한다.

워드(Ward, 2002)는 언론(journalism)을 언론인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그 핵심 과정을 4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뉴스의 독자나 수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확인(identify)하고 발견(find)하는 행위, 둘째, 기사작성에 필요한 소재를 수집(collect)하는 행위, 셋째, 수집된 정보 가운데 선택(select)하는 행위, 넷째,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시(present)하는 행위가 그것이다(Ward, 2002. p.30). 그리고 뉴스를 발견, 수집, 선택 그리고 제시하는 행위가 언론 행위이며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행위자의 집합체를 언론 또는 언론사라고 정의한다. 또한 언론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유통 중심의 불균형적 언론모델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포털뉴스는 '불완전한 언론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포털뉴스는 뉴스의 재매개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언론과정의 핵심과정인 정보의 확인과 발견, 수집, 선택 행위가 배제된 곳이 많다. 언론활동은 언론인들의 집합적 활동에 의해

포털뉴스는 타 언론사가 만든 뉴스를 재 매개하는 행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취재원과 수용자를 뉴스로 매개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자연적 매개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invented manner)을 통해 매개된다. 인위적인 방법은 취재, 편집(선별) 그리고 보도라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Janowitz, 1975).

그러나 포털뉴스는 타 언론사가 만든 뉴스를 재 매개하는 행위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 포털뉴스가 제공하는 뉴스기사의 출처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능은 명확해진다. 신윤진과 황용석(2004)의 연구[1]에 따르면 각 포털사이트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뉴스의 67.1%를 기존 신문사 뉴스에 의존하고 있었다. 20.8%는 통신사 뉴스였으며 자체취재 기사는 0.8%에 불과했다.

언론으로서 포털뉴스의 생산적 차원의 불균형은 인력구성의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뉴스 생산 노동보다는 편집과 같은 매개 노동에 더 중요한 비중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포털뉴스의 종사자 분포를 직종별로 보면, 총 응답종사자 130명 가운데 '편집/웹디자인' 분야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산/기술' 분야가 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취재'는 가장 적은 16명이었다(신윤진과 황용석, 2004).

〈표1〉 기사의 생산 및 구성(평균 %)

(n=13)

	자체 취재기사	통신사뉴스	기존신문사 뉴스	기존방송사 뉴스	기 타	계
구 성 비	0.8	20.8	67.1	2.5	8.8	100.0

〈표2〉 포털뉴스의 직종 형태

( )는 %

조사대상 포 털	계	성 별		직 종				고 용 형 태	
		남	여	취 재	편집/웹디자인	기획/영업/관리	전산/기술	정규직	비정규직
13	130	65(50.00)	65(50.00)	16(12.31)	51(39.23)	27(20.77)	36(27.69)	109(83.85)	21(16.15)

※출 처 : 신윤진·황용석(2004). 2004 한국의 인터넷 신문. 서울 : 한국언론재단.

1) 이번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9일간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조사원과 조사보조원이 방문조사했으며 피조사자가 설문지를 읽고 답변을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들은 사전에 조사목적과 설문조사 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체 21개 대상사의 61.9%인 13개사로부터 응답 설문지를 회수했다. 조사대상사 선정에는 독립형 인터넷 신문사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검색사이트를 이용했다.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 엠파스(www.empas.com), 한미르(www.hanmir.com, 현재의 파란)의 5개 검색사이트를 통해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검색어는 '포털사이트'를 사용했으며 검색된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서비스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대상사를 확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조사대상사는 23개사였다. 하지만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하이텔과 한미르가 통합, 파란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조사대상에 제외되어 최종 확정된 조사대상사는 21개사가 되었다.

다. 뉴스의 재매개 활동과 뉴스가치의 랜덤화 (randomization)

2004년 AOL의 뉴스디렉터인 게리 케벨은 한국에서의 초청강연에서 "AOL은 뉴스 생산 및 논평 기능이 없지만 언론계 경험이 풍부한 편집진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어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편집적 기능만으로도 포털뉴스가 언론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도이체(Deuze, 1999)는 포털뉴스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목록형 온라인저널리즘'(index online journalism)으로 불렀다. 뉴스의 생산보다는 기존 언론이 만든 뉴스를 재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형태로서 웹에 있는 다른 뉴스 사이트와 링크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뉴스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자체 편집진에 의해 기존 뉴스를 분류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포털뉴스의 인덱스는 객관화된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종의 편집된 목록을 제공한다. 즉, 재구성된 현실의 창이다.

임종수(2005, p.18.) 역시 포털미디어가 뉴스를 소비하는 최종 수용자와의 접점에서 뉴스 자체를 대상으로 선택과 공시를 통한 매개의 고유 권한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포털은 제한적 취재기능을 갖지만 재매개 활동 자체가 뉴스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인 게이트키핑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포털의 게이트키핑이 기존 언론과 다른 점은 이것이 뉴스의 가치를 랜덤화(randomization)시킨다는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뉴스를 다양한 맥락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내용물이라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뉴스는 이데올로기, 미디어 외적 차원, 조직차원, 미디어 관행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만들어진 가치를 내포한 산물이다. 신문에서 개별 기사는 제목과 리드를 통해 뉴스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전체 기사는 편집과 레이아웃을 통해 가치를 분배받는다. 방송 역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치가 배분된다.

그러나 포털뉴스는 이종적인 가치의 산물들, 즉,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적으로 편집하고 배치하는 '가치의 랜덤화'를 낳는다. 뉴스 편집의 탈규범화 및 탈가치화 현상이 편집과정에서 일정부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뉴스의 선택권을 수용자가 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세상을 이해하도록 구성된 창으로서 모자이크된 뉴스가 가져올 지식의 불균형과 같은 부정적인 우려도 예상된다.

뉴스의 재매개화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뉴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이 아닌 보도의 경우, 포털사이트는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뉴스의 전송과 복사로 인한 피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있다.

라. 인력의 전문직화 미비

단순한 인력의 수적 분포를 넘어서 언론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직화에도 차이가 난다. 이미 온라인저널리즘 영역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자리 잡았다. 싱어(Singer, 1999, pp.29)도 온라인저널리스트가 아직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등을 탐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 런던에서 있었던 넷미디어 컨퍼런스(NetMedia Conference, 2000)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온라인저널리스트들을 독자적인 직업군(breed)이라고 보는데 동의했다(Meek, 2000). 브릴(Brill, 2001)도 웹에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자, 편

포털뉴스는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적으로 배치하고 편집하는
'가치의 랜덤화' 현상 나타내

집자, 사진기자, 디자이너, 컴퓨터 기술자 등과 같은 역할 분화는 신문에서 취재기자, 편집기자, 교정기자, 윤전부 직원 등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는 온라인저널리즘 종사자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갖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언론인은 단순한 직업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모델의 하나는 '저널리즘 전문직주의(journalism professional)' 관점이다. 포털뉴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통적 언론과 같이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탐구해 볼 문제이다. 이 문제는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문직은 직업구성상 한 하부단위로서, 수많은 직업 가운데 일부를 지칭하는 범주이다. 전문직과 관련해서 직업사회학 영역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론적 관점에 따라 전문직을 바라보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전문직을 다른 직업과 구별하는 기준도 명확치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고 하면,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일의 내용이나 조건을 외부로부터 간섭받거나 통제 받지 않는 직업범주를 의미한다(심윤종 유홍준 박승희, 1992. p.152.).

언론인을 전문직 범주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다소 논쟁이 있지만 전문직주의가 언론의 지향점이라는 데 있어서는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보가타 등(Borgatta E. and Borgatta M. , 1992, pp.1552-1553.)의 정의에 따르면, 언론인은 고전적 전문직은 아니지만 최근에 권위와 자율성을 획득하고 높은 수입을 얻는 직종들인 신흥 전문직에 속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기술자, 회계사, 건축업자, 신문기자, 방송인, 컴퓨터 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특정 직업(occupation) 혹은 활동 내용이 전문직(profession)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빔(Beam, 1900. pp.3-4.)은 전문직의 특성을 6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론체계를 갖추는 것, 둘째는 폭 넓은 의무와 책임 즉, 자율성(autonomy) 또는 권위(authority)를 갖추는 것, 셋째는 개인의 경제적인 보상에 대비되는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를 수행하는 것, 넷째, 전문직 문화를 개발(a professional culture)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전문직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범, 가치체계, 상징 등을 개발하는 것, 다섯째는 전문직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은 표준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섯째는 그 구성원들이 평생교육(lifelong)에 전념하는 것이다.

전문직 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명시적인 척도 중에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편집정책이나 규약의 존재여부, 연수나 편집규약 등이 있다. 최근 포털뉴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자사의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부족하고 뉴스아이템을 다루는 사내의 편집규약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신윤진, 황용석, 2004). 이 조사에서 1년 동안에 뉴스 관련 종사자의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2개의 응답 포털뉴스 가운데 '실시했다'고 답한 응답사는 1곳뿐이었고 11개사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포털뉴스 담당자들의 연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물었더니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이 5개사였고 전체 응답사의 절반이 넘는 7개사가 '보통이다'고 답했다. 포털사이트들이 아직 뉴스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전문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업계 스스로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만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다음은 2005년 5월 21일 "포털사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유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포털사들은 뉴스 운영과 편집에 대한 기준을 공유해 이를 준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육성에 앞장설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음은 7개 사항을 담은 '포털 뉴스 운영과 편집에 대한 공통 기준'을 공지했다.

네이버도 2005년 5월 22일 '더 유익한 네이버 뉴스가 되겠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게재, "최근 네이버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커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다"며 "지금보다 더 유익하고 책임감 있는 뉴스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네티즌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다"며 6가지 약속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포털 뉴스는 이용량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현행법에서 포털뉴스 지위

포털뉴스는 법적으로 보면, 언론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매체법인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뉴스는 '인터넷 신문'의 개념범주 밖에 있다. 그러나 공선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언론'이다. 신문법이 등록법적 성격이 있다면, 공선법은 내용 및 행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두 가지 법에서 각각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언론을 정의내리고 그 개념에 바탕해서 법안이 구성되어 있다. 두 개념의 개념정의 역시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모호하다.

이는 한국의 입법수준을 말해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언론의 존재성은 법과 무관하게 사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신문법이나 공선법

〈그림1〉 포털뉴스의 최근 1년간 뉴스담당자 연수 실시 여부 (n=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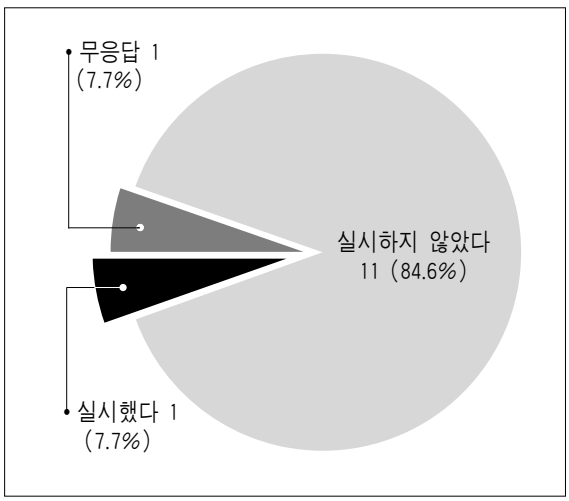

〈그림2〉 포털뉴스의 편집규약 유무(n=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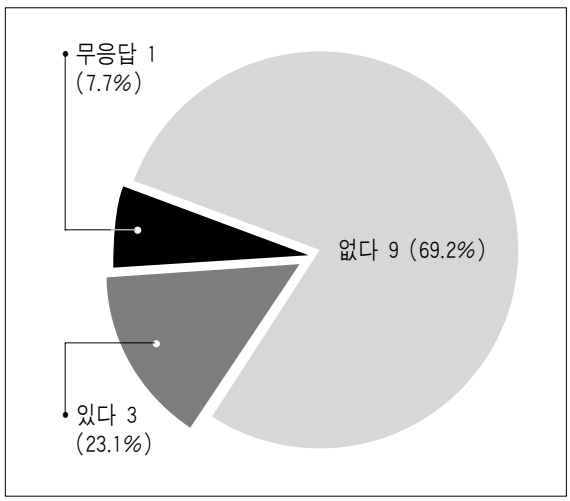

※출 처 : 신윤진 · 황용석(2004). 2004 한국의 인터넷 신문. 서울 : 한국언론재단.

포털이 갖는 이중적 성격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혼재돼 있다는 특성은
현행법제와 상충되는 측면있어

과 같은 법에서 매체를 개념정의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를 통해 매체행위가 규제되고 있는 만큼, 간략하게 관련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털뉴스와 관련되는 첫 번째 법은 통신과 관련된 법이다. 여기서는 포털이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분류되고 규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시장진입이 자유로우며 설립신고나 등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다. 흔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또는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IP)로 간주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통신 법제 내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내용 규제 등)의 보호와 규제를 받게 된다.

둘째는 2004년 3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이하 개정선거법)은 정부가 인터넷 언론을 최초로 정의 내리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법규이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인터넷언론사'(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5에 의거)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정의 내려졌다.

이 정의에서는 보도와 논평이라는 내용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운영의 형태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적 또는 공적, 개인소유 또는 조직이나 법인 소유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 사이트가 모두 포함된다. 언론적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는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시킬 수 있다.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선거 시기에 선거와 비선거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적 담론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보도 심의를 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2005. 1. 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 신문을 타 정기간행물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개념정의에는 포털뉴스는 빠져 있다. 그 근거는 신문법 시행령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 제5호에서 제시한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이라는 조항에 근거해 있다.

시행령에서 제시한 주간 게재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 기사로 생산하라는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신문 개념에서 배제되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뉴스를 통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포털뉴스는 그것이 갖는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매체법의 범주에서는 빠져 있지만, 선거보도와 같은 내용규제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는 모순된 법제 아래 있다. 그러나 포털이 갖는 이종적 성격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

은 현행 법과 상충되는 많은 요소를 갖고 있다.

3. 포털뉴스의 확산과 그 영향

1) 뉴스 소비시장에 미친 영향

가. 소비의 집중화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이 전체 미디어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매일매일 뉴스를 열람하는 독자는 총 인구의 27.9%로 종이신문을 매일 구독하는 23.4%의 신문 매체 수용자를 추월했다(인터넷뉴스: 코리안클릭 측정데이터, 7~65세 총인구 대비, 2005년). 또한 2004년 TV 총 개인 시청률은 17.4%에 불과하다.[2)] 인터넷은 일평균 사용률이 65%대, 시간평균 사용률이 23%대이며 TV시청률과 동일한 기준(PUT)을 적용한 사용률도 11.2%에 달해 TV 매체 소비량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

2005년 3월 현재 7~65세 인구의 63.7%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65세 인터넷 사용자의 90.8%가 인터넷 뉴스독자이다(유도현, 2005).

이처럼 인터넷이 뉴스매체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음은 중언할 필요가 없다. 특징적인 점은 인터넷 이용시간의 대부분이 포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코리안클릭의 2003년과 2004년 자료를 보면, 2003년에 일인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의 15.4%가 다음과 네이버 두 포털에서 일어났다. 포털로 분류된 사이트에 체류한 시간을 합산하면 인터넷 이용자가 이용시간의 29.4%를 포털사이트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털 이용의 의존도는 2004년에 더 높아져서 다음과 네이버에서 평균 체류하는 시간 비중이 24.7%로 무려 9.3%포인트나 높아졌다. 포털 사이트 전체에서의 평균체류시간은 49.9%로 무려 20.5%포인트 증가했다(유도현, 2005). 이 같은 데이터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용시간의 절반 이상을 포털에서 보낸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포털의 높은 서비스 집중도를 반영한다.

〈그림3〉 인터넷 이용시간 중 포털 평균 체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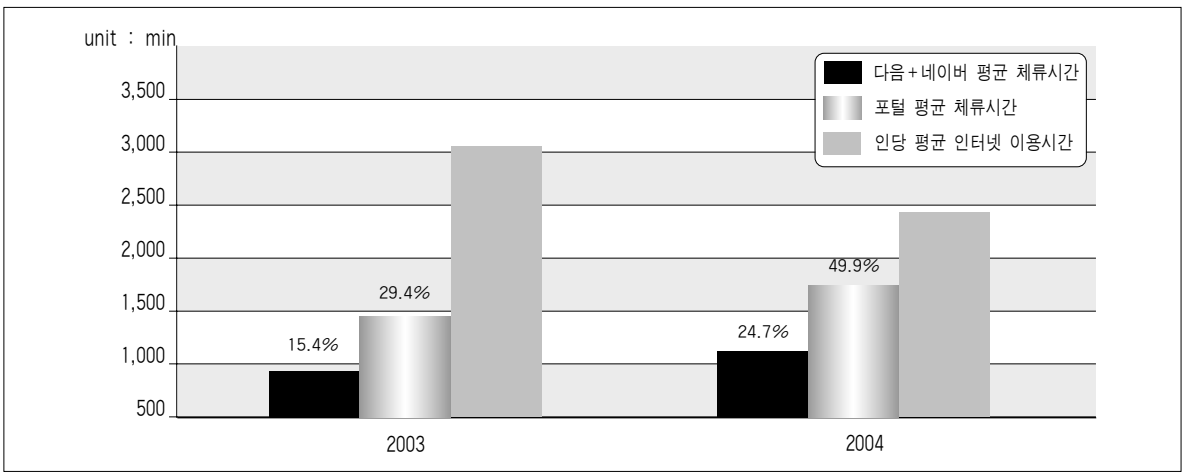

※ 2003년 12월과 2004년 12월 데이터임. % 수치는 전체 인터넷 이용 시간중 포털 체류시간 비율임.

2) 논문에 실린 인터넷 트래픽 자료는 코리안클릭 유도현 이사의 도움을 받아 사용했음을 밝힌다.

인터넷 뉴스시장은 포털 뉴스로
뉴스 소비가 집중화되는 현상 나타나

〈그림4〉 주요 뉴스 소비사이트(8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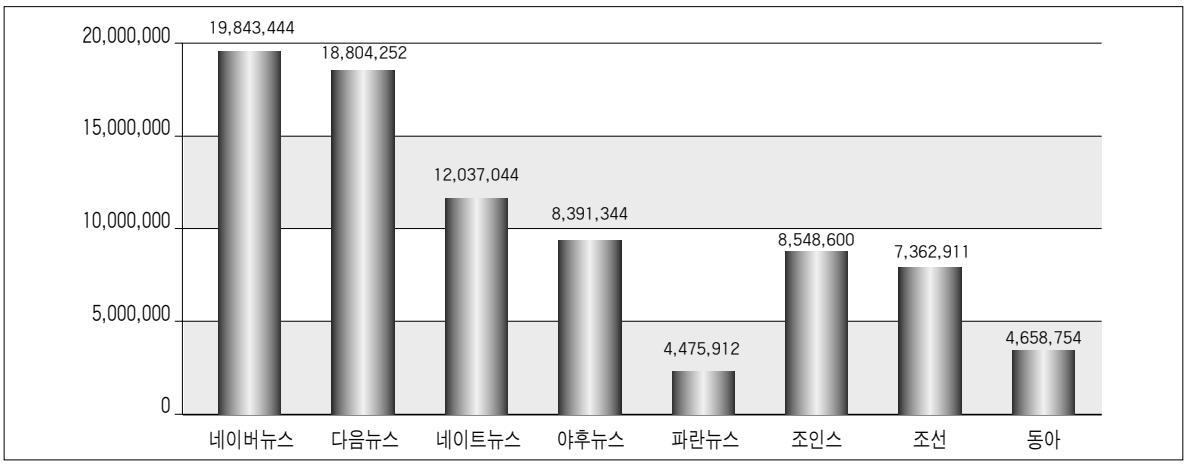

※출 처 : 코리안클릭(2005). 이용자 로그데이터 분석자료.

포털에 집중된 인터넷 이용시간은 뉴스이용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인터넷뉴스시장은 포털뉴스로 뉴스소비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 구조적인 면에서 포털의 압도적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포털 내에서 상위 2개 사의 뉴스집중도가 2004년 12월 현재 60%를 넘어서는 등 압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뉴스 시장은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미디어 사이트 방문자 비중이 86%(2003년 9월)에 달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이 시장은 2003년 초반까지 신문사 사이트가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월드컵과 대선을 거치면서 방문자가 급증한 포털 뉴스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림5〉 포털, 종합일간지, 스포츠지 이용자 수 비교

-인터넷 뉴스 사업자 별 UV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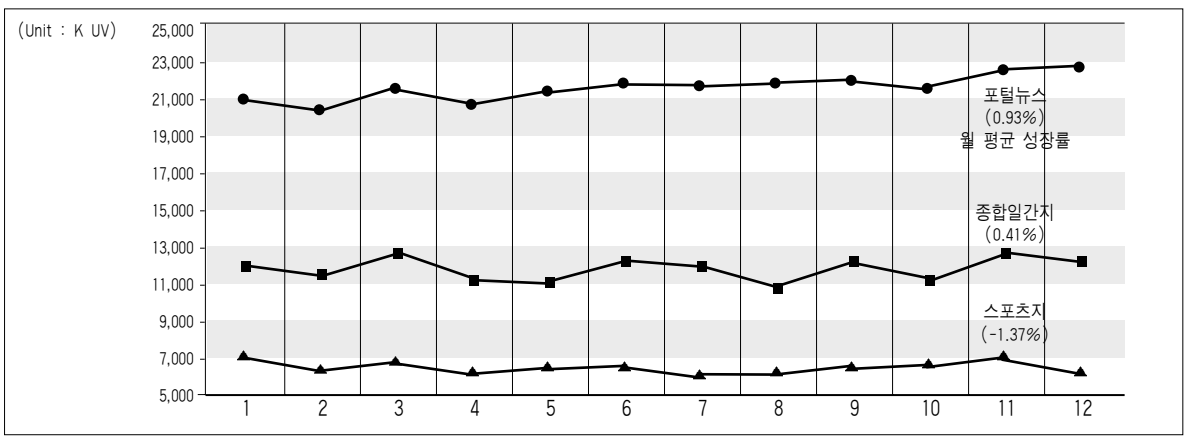

※ 포털뉴스는 다음, 네이버, 야후 뉴스 합산. 종합일간지는 조·중·동 합산. 스포츠지는 스포츠 서울, 스포츠투데이, 굿데이 합산 트래픽임.

〈그림6〉 포털사이트의 사업자별 평균 체류시간 추이

-인터넷 뉴스 사업자 별 평균 체류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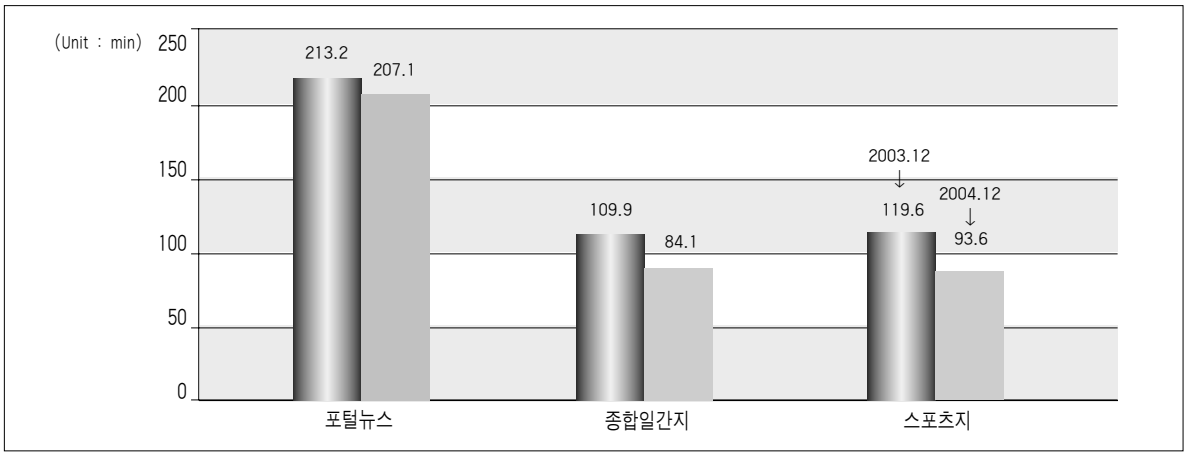

※출 처 : 코리안클릭(2005). 이용자 로그분석 자료.

이는 인터넷 미디어 종류별 트래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체 포털 뉴스의 방문자 수는 2003년 1월 1,700만 명에서 2004년 1월 2,200만 명 이상으로 약 30% 증가했으나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이트, 지상파 방송사, 인터넷 방송국 사이트의 성장은 정체돼있다(코리안클릭, 2004년 12월).

그리고 200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서 포털 뉴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포털 뉴스는 12개월 월평균 약 1% 가량 방문 규모가 순증가 했으나, 종합 일간지와 스포츠지 사이트의 경우 방문 규모는 약보합세이며 체류시간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30~40대 고정 독자층을 토대로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일간지와 달리 주이용 포털에서 스포츠/연예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해 스포츠지 사이트의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포털 뉴스 이용자들의 종합일간지 및 스포츠지 사이트 중복방문율은 10~20% 정도로 낮은 반면 종합일간지 사이트 방문자들의 포털 뉴스 중복 방문율은 40~70%대로 매우 높아 인터넷 뉴스 시장 내 포털 뉴스의 경쟁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포털뉴스와 종합일간지 및 스포츠지의 중복방문율

- 포털뉴스 vs 종합일간지 중복 방문율 -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야후 뉴스	조인스	조선
다음 뉴스	21.22	65.3	33.43	18.56	17.97
네이버 뉴스	75.86	13.11	34.43	21.05	20.61
야후 뉴스	74.05	65.67	10.82	23.82	23.68
조인스	71.89	70.21	41.66	4.51	46.85
조선	73.22	72.3	43.55	49.27	4.87

- 포털뉴스 vs 스포츠지 중복 방문율 -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야후 뉴스	스포츠 서울	스포츠 투데이	일간 스포츠
다음 뉴스	21.08	65.3	33.43	14.57	13.41	11.12
네이버 뉴스	75.86	14.17	34.43	16.07	14.1	12.25
야후 뉴스	74.05	65.67	12.23	17.8	14.25	13.42
스포츠 서울	74.97	71.19	41.34	3.48	48.21	45.26
스포츠 투데이	77.67	70.29	37.26	54.27	2.76	43.6
일간 스포츠	76.56	72.61	41.72	60.59	51.85	1.91

※ 출처 : 코리안클릭(2005). 이용자 로그분석 자료

특정 포털뉴스에 뉴스가 집중되는 현상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 중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 가능

이 같이 포털 사이트가 공격적으로 뉴스 시장에 참여, 막강한 커뮤니티와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인터넷 뉴스 시장의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포털 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은 여러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일례로 2003년 10월 시사저널이 전국 각계 전문가 1,04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위에 '다음'이, 14위에 '야후'가 올랐으며 가장 좋아하는 언론 10위에 '다음'이 오르기도 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포털 내에서도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털 뉴스 시장 내에서는 다음과 네이버 두 개 상위 사이트로의 이용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상위 4개 포털이 전체 포털 내 차지하는 비중(Time share)이 80%를 넘어서 인터넷 사용자의 상위권 사이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나. 포털뉴스 집중화의 이유

특정 포털뉴스에 뉴스가 집중화되는 현상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 중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과 같이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직접적 효과라고 한다. 대규모의 네트워크가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네트워크의 간접적 효과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은 사람이 가입해 있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 것도 네트워크 효과의 하나이다.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림8〉 상위 4개 포털이 전체 포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용시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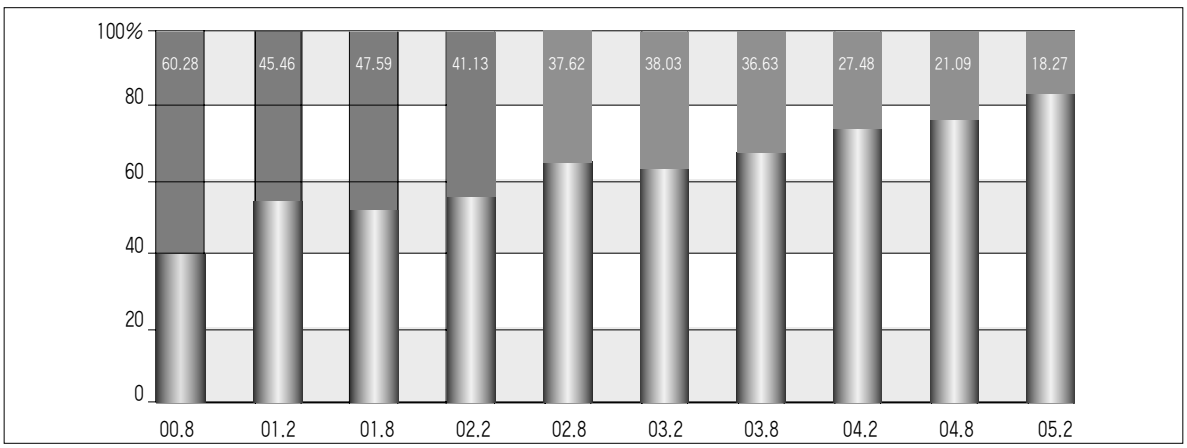

※ 출처 : 코리안클릭(2005). 이용자 로그분석 자료

(홍동표 · 이상오 · 유선실, 1999).

선두권의 포털사이트로 집중화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시장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 효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개념이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과 잠금효과(lock-in effect)이다. 선두기업은 계속 앞서고 후발기업은 계속 뒤쳐지는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원칙으로 인하여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시장(winner-take-all market)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잠금효과란 전환비용(switching costs) 때문에 소비자가 기존제품을 고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 이용하던 소프트웨어나 사이트는 이미 사용자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학습경험을 버리고 다른 사이트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를 버려야 하는 매몰비용(sunk costs)이 발생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일반적 특성인 잠금효과는 포털 뉴스로의 집중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실제로 상위권 포털로의 뉴스 이용 집중은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 변화와 연관이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문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된 포털이 사용자의 인지 및 행동 비용을 최소화시켜 주고 이것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잠금효과를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평균 방문 사이트 개수는 1년 사이 20% 이상 감소하고, 상위권 포털 내 체류하는 시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허브구조가 갖는 자연노출 효과 때문이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반복해서 방문하는 주요 포털에서는 뉴스의 자연스런 자연노출이 일어난다. 아래 표에서처럼, 포털사이트 다음을 이용하는 사람의 71%, 네이버 이용자의 51.4%가, 야후 이용자의 38.0%가 첫 페이지에서 뉴스섹션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털의 중요 콘텐츠로서 뉴스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것과 동시에 뉴스의 자연노출에 따른 이용증대 효과를 보여준다.

셋째, 포털뉴스는 복수의 뉴스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개별 언론사의 주소를 쳐가며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사이트 안에서 나열된 뉴스 제목들을 통해 하루의 주요 이슈를 훑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05년 3월 현재 네이버

〈그림9〉 포털사이트의 첫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뉴스섹션으로 이동한 순이용자 비율
(2004.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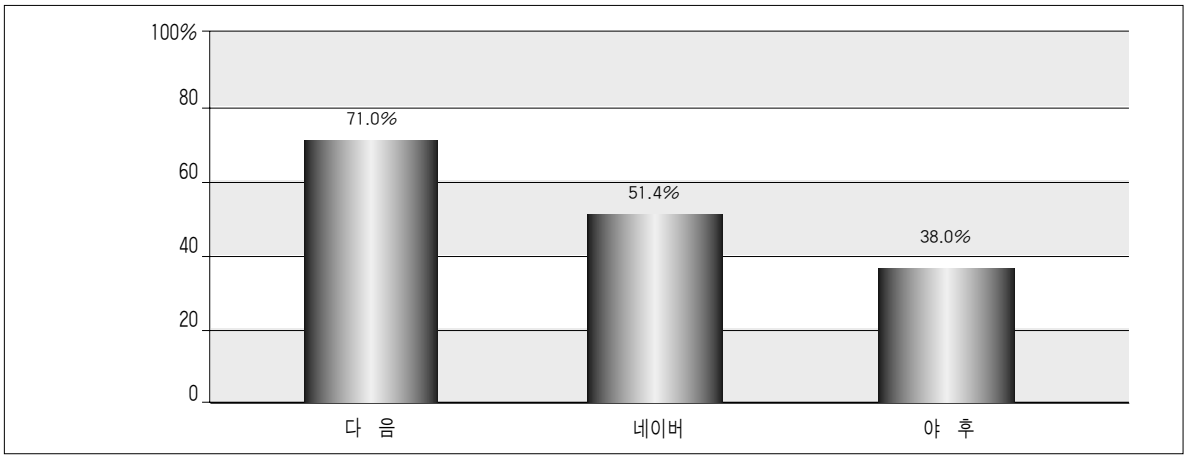

※ 출 처 : 코리안클릭(2005). 이용자 로그분석 자료

'뉴스의 재매개화' 기능, '강력한 속보성' 등이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 설명

는 65개 매체, 야후는 56개 매체, 미디어다음은 38개 매체의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서비스를 뉴스의 복합적 재매개화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다양한 뉴스소스를 통합적으로 재매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성을 높이고 탐색비용을 줄여준다.

넷째, 다양한 뉴스 소스원을 활용하는 포털뉴스는 단일 언론사가 커버할 수 없는 속보기능에서 우위를 갖는다. 유동성이 큰 네티즌들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사이트에 몰려든다. 이러한 속보 전쟁에서 수십 개 매체의 속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강력한 검색엔진과 커뮤니티, 블로그를 보유한 포털은 뉴스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이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탄핵'이 큰 이슈가 됐을 경우 이용자들은 지식검색을 통해 탄핵의 절차 및 내용, 실효성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으며 정보욕구가 덜 충족됐을 경우 자유롭게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올릴 수도 있다.

2) 자기선택적 뉴스 이용과 연성화

흄(Hume, 2000)은 뉴스란 "공중의 삶과 관련된 검증된 정보"라고 정의했다. 즉, 이 정의는 뉴스는 검증된 정보이어야 한다는 점과 그 내용이 공중의 삶과 적절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한다. 이 정의는 매우 짧지만 뉴스가 갖는 핵심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다. 스칼란(Scanlan,

〈표3〉 주간 가장 많이 본 기사의 주제별 분포 : 주간 상위 20위 인기기사(%)

영 역	정 치	경 제	스포츠	공연/예술	연 예	사건/사고	사 회	미 담	황당/엽기	전 체
네이버	0 (0.00)	4 (2.86)	37 (26.43)	0 (0.00)	55 (39.29)	14 (10.00)	24 (17.14)	3 (2.14)	0 (0.00)	140 (100.00)
다 음	8 (5.71)	12 (8.57)	14 (10.00)	0 (0.00)	22 (15.71)	43 (30.71)	41 (29.29)	0 (0.00)	0 (0.00)	140 (100.00)
야 후	1 (0.71)	1 (0.71)	15 (10.71)	0 (0.00)	101 (72.14)	14 (10.00)	3 (2.14)	1 (0.71)	4 (2.86)	140 (100.00)
엠파스	1 (0.71)	1 (0.71)	15 (10.71)	0 (0.00)	101 (72.14)	14 (10.00)	3 (2.14)	1 (0.71)	4 (2.86)	140 (100.00)
네이트	12 (8.57)	9 (6.43)	13 (9.29)	0 (0.00)	34 (24.29)	29 (20.71)	29 (20.71)	6 (4.29)	8 (5.71)	140 (100.00)
5개 총합	30 (4.29)	33 (4.71)	128 (18.29)	0 (0.00)	259 (37.00)	114 (16.29)	108 (15.43)	12 (1.71)	16 (2.29)	700 (100.00)

※ 조사기간 : 11월 1일-11월 7일
※ 조사대상 : 5개 포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 20위까지의 기사를 범주화해서 코딩

2001)에 따르면, 뉴스의 핵심요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얼마나 그 내용이 시의 적절한가(시의성), 그 내용이 공중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중요성) 그리고 그 내용이 공중의 관심을 얼마나 끄는가(관심도)이다.

전통적 저널리즘의 저널리스트들에게는 공중의 삶이 게이트 키핑의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뉴스들이 무작위적으로 선택되는 포털뉴스에서는 뉴스 이용의 주도권을 이용자가 갖는다(Pavilik, 2001). 이것은 이용자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뉴스가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터넷 뉴스의 일반적 특성이지만, 프론트페이지 레이아웃구조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언론사닷컴이나 순수 인터넷 신문 보다 포털뉴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용자들은 공중의 삶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포털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많이 읽히는 가를 살펴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표3〉은 국내 5대 포털뉴스에서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읽힌 기사를 범주해서 교차분석한 것이다. 결과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연예기사와 스포츠기사의 인기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위 20위 기사에 들어간 기사 중 37.0%가 연예기사였다. 다음으로는 18.29%를 기록한 스포츠기사, 살인사건 등을 다룬 사건/사고기사가 16.29%였다. 공공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기사는 불과 4.29%에 불과했다. 경제기사 역시 4.71%였다.

이러한 분포는 인터넷 이용자 중 10대와 20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불균형적인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뉴스 이용의 연성화 패턴을 보여준다. 포털별로는 야후와 엠파스가 같은 기간에 연예기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다음과 네이트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포털뉴스의 뉴스소비 형태는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의제설정 방식, 공급방식, 공급속도 그리고 인터페이스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본성에 기반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포털뉴스의 강한 연성화 경향의 원인인지 명확치 않다. 아직까지 인과관계를 추론할만한 정밀한 연구결과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둘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다.

포털저널리즘의 뉴스소비형태를 분석한 임종수(2005)는 포털뉴스는 직접적인 의제설정보다는 뉴스의제소비에 있어서 선차성을 갖는 미디어라고 말한다. 언제든지 접속하고 이탈하는 단발적 뉴스 이용매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포털뉴스가 뉴스의제에 대한 충분한 스캐닝 또는 탐색을 통해 이용되지 않고 포털사이트 이용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포털뉴스는 포털사이트의 다목적 서비스 공간에서 임의적이고 즉각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소비는 계획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브라우징을 통해 순간적으로 선택되고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포털뉴스의 의제설정을 분석한 송경재(2005)는 포털 뉴스가 언론본연의 기능과는 다른 즉자적이고 연성화 된 기사 공급 및 유통으로 저널리즘의 위기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포털뉴스는 연성화 된 기사를 공급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국제문제를 외면하기조차 한다고 비판한다. 이것이 저널리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침식이라는 후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까지 우려했다. 더 나아가 저널리즘의 고유한 영역인 진실추구와 독립된 감시자 역할은 사라지고 사실과 소문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

기자의 존재유무를 떠나 포털은 언론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도 갖고 있어

킬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포털의 이 같은 기능은 제목달기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이희완, 2005).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인터넷 언론 또는 온라인 저널리즘 일반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언론사닷컴이나 순수 인터넷 신문 역시 이슈의 선정성과 기사의 연성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털이 갖는 고유한 효과와 인터넷 신문 일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효과를 구별하는 정교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4. 결 론

포털뉴스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은 이 매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출발한다.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기자의 존재유무를 떠나 포털은 언론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도 갖고 있다.

포털뉴스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은 뉴스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분법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언론사나 인터넷 신문은 포털이 저널리즘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뉴스 생산자를 피폐화시키고 시장에 의해 추동되는 선정적 저널리즘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포털 종사자들은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 단순한 유통 즉, 중립적인 통로라고 반론한다. 그 근거로 규제법 밖에 있다는 것을 든다. 또 저널리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매해서 뉴스 생산자와 윈-윈(win-win)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이상헌, 2005. p.162.).

이러한 논쟁들은 이해관계와 연관된 담론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분법적인 논쟁은 사실 한국 저널리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포털뉴스는 우리사회에 득과 실을 모두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실에 바탕해 새로운 포털뉴스가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포털뉴스가 기여한 부분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포털은 우리사회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신문구독률과 방송뉴스의 시청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뉴스 이용시간만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시간이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용되는 뉴스의 질의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포털뉴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콘텐츠로 만들었다.

둘째, 포털뉴스는 새로운 인터넷 신문의 출현과 콘텐츠 유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인터넷 신문의 수나 종류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 특히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면이 있다.

셋째, 포털뉴스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양식을 개발했다.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좋은 콘텐츠를 프론트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 content)의 확산에 기여했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는 시민참여 저널리즘과 함께 변화하는 뉴스개념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포털사이트들은 현재의 언

론사 제공 콘텐츠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용자 제공 콘텐츠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색엔진이나 블로그, 미니홈피와 결합된 뉴스 소비방식을 확산시켰다. 즉, 뉴스의 편재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넷째, 포털사이트는 독자의 니즈(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방대한 뉴스 제공 콘텐츠를 바탕으로 중요한 사안에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기존 언론사들이 수용자의 니즈를 더 신중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특히, 개별 언론사들이 뉴스생산과 분배 차원에서의 혁신을 수행하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일부 언급된 것처럼, 포털뉴스는 몇 가지 점에서 언론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뉴스 생산자의 시장 기반을 축소시켰다. 포털뉴스의 높은 집중도는 기존 언론사 및 인터넷 뉴스를 언론매체에서 단순한 콘텐츠 공급자(CP)의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포털로 집중된 이용자 분포는 개별 언론사들이 인터넷에서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언론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브랜드나 뉴스 크레딧이 이용자들로부터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랜덤하게 소비되는 유통구조는 장기적으로 저널리즘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것은 언론시장이 질의 경쟁보다는 선정적 소재나 속보를 통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든다. 뉴스를 제공하는 개별 언론사의 브랜드와 크레딧이 독자적으로 가치를 발휘할 때 뉴스 소비의 진정한 다양성이 확보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정경쟁 환경이 만들어진다.

셋째, 포털뉴스는 속보경쟁을 앞당김으로써 반대급부로 언론의 기본요소를 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가 네트워크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내용이 유포되기도 한다. 속보경쟁은 선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넷째, 공공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수준의 높은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그들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뉴스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와 같은 방식의 포털뉴스 소비는 장기적으로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이나 관점만을 반영하는 사이트에만 접근하고 다른 내용은 회피할 수 있다. 단발적인 정보들로 채워져서 짧은 시장기를 메우는 포털뉴스 소비방식은 균형잡힌 공공지식을 습득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Corrado, 1996).

여섯째, 뉴스의 저작권자와 배포 및 복사자가 분리됨으로써 기사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 점은 포털뉴스의 영향력과 맞지 않는 입법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과다한 댓글 기능으로 인한 왜곡된 토론과 토론의 선정성이 문제시된다. 포털에서의 댓글은 이용자 참여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이것이 이용자 개인들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해결하는 표현지향적 이용이 주류를 이루면서 사회적 갈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면도 없지 않다. 물론, 이것은 포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인터넷 신문 일반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다.

여덟째, 공공사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스스로를 단순한 유통 또는 통로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포털은 이미 뉴스소비와 공급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거기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비지니스 저널리즘의 균형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책임있는 자세 필요

야 한다. 한편으로는 뉴스에 대한 과다한 트래픽 경쟁을 지양하고 저널리즘 질의 경쟁을 유도하는 편집과 레이아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뉴스 배급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의 언론환경은 동적이며 예측불가능하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가치에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이상만큼 안정적이며 충족해야할 기본요소들이 있다. 비즈니스와 저널리즘의 균형추가 크게 기울지 않도록 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필자가 쓴 글을 포함해서 포털과 관련된 많은 주장과 명제들을 뒷받침해줄만한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Boczkowski, Pablo J.(2004). Digitizing the News : Innovation in online newspapers. Cambridge : The MIT Press.

Beam, Randal A.(1990). Journalism Professionalism as an Organizational-Level Concept. Journalism Monographs. no. 121. (Columbia, SC: AEJMC, 1990).

Borgatta, E. , and Borgatta, M. (1992). Encyclopedia of Sociology. New York : Macmillen.

Brill, Ann M.(2001). Online Journalists Embrace New Marketing Func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Spring2001, Vol. 22 Issue 2, p.28, 13p; (AN 5386890)

Corrado, Anthony and Firestone, Charles eds(1999). Elections in Cyberspace: Toward a New Era in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Deuze, Mark (2003). The web and its journalism: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types of news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Vol5(2). pp.203-230.

Hume, Ellen(2000). Journalism and Citizenship. Nieman Reports. March 29, 2000. Harvard University.

Janowitz, Morris (1975). "Professional Models in Journalism: The Gatekeeper and the Advocate." Journalism Quarterly, spring, pp. 618-626.

Meek, Colin (2000). Online Journalism a breed apart, say NetMedia Speaker. dot Journalism. 2000. 8.16. at http://www.journalism.co.uk/ezine__plus/dotjark/story135.shtml

Pavlik, J. (2001). Journalism and New Medi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Schultz, T. (2000).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22, pp.205~221.

Singer, J. B. (1997). Still Guarding the Gate? The Newspaper Journalist's Role in an On-line World. Convergence: The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3(1): 72-89.1997)

Ward, Mike(2002). Journalism Online. Oxford : Focal Press.

박선영(2003). 인터넷매체와 관련한 제언. 국회언론발전연구위 제10차 토론회. 2003년 5월 28일

송경재(2005). "포털 저널리즘의 등장과 의제설정: 의제설정 과정의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민주언론운동연합 포털 실태조사 보고서. 2005. 7.24.

슈메이커, P. / 리즈, S., 매스미디어 사회학 (김원용 역), 나

남 1996 (Pamela J. Shoemaker / Stephen D. Reese, Mediating the Message :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 Longman 1996)
신윤진 · 황용석(2004). 2004 한국의 인터넷 신문. 서울 : 한국언론재단.
심윤종, 유홍준, 박승희(1992). 산업사회학. 서울 : 경문사.
윤영철(2001). 온라인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7호. pp.182-213.
이상헌(2005). "선정적인 포털. 더 선정적인 언론".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재단. 2005. 9월호. pp.162-164.
이희완(2005). "3사 포털사이트의 '뉴스박스' 모니터 분석". 민주언론운동연합 포털 실태조사 보고서. 2005. 7.24.
임영호(1999). 신문원론, 서울 :연암사.
임종수(2005). 포털 미디어 재매개에서의 뉴스소비 : 하나의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19-2. pp.8-44.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4). TV시청률 백서.
홍동표 · 유선실 · 이상오,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전략, 정보통신정책이슈, 제11권 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황용석 외(2004). 인터넷언론과 법. 서울 : 한국언론재단.
황용석 외(2005). 위기의 한국신문 : 현황, 문제점, 지원방안. 서울 : 한국언론재단.
황용석(2003). 온라인저널리즘. 세계의 인터넷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p.61-94.
황용석(2005). 조직특성에 따른 온라인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조직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 연구. pp.
황용석, 김재영, 정연정(2000).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서울 : 한국언론재단.
홍동표 · 이상오 · 유선실(1999). 홍동표 · 유선실 · 이상오,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전략, 정보통신정책이슈, 제11권 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타 웹 자료

-〈인터넷 트래픽 데이터〉 (주)코리언클릭(www.koreanclick.co.kr)의 내부 보고서 참조.
- 유도현(2005). 인터넷 사용자의 트랜드 변화와 뉴스 소비형태. KPF-건국대 온라인저널리즘 디플로마 발표자료
- 포털사이트 정의 : mason.gmu.edu/~montecin/netterms.htm
- smartbizconnection.com/advertising__glossary__index.htm

〈제2주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양 삼 승
변 호 사

□ 서울대 법대 및 동대학원 졸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사

1. 들어가는 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볼 수 있느냐의 '포털 뉴스서비스 정체성 논란'에서부터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갖는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하루빨리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그 스펙트럼도 참으로 다양하다.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확대된 포털사이트와 여기서 제공되는 뉴스서비스의 영향력 및 강력한 파급력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강력한 멀티미디어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이 더해져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더욱 강력하고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지금까지의 차원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9년 경, 오프라인 신문사의 인터넷판인 신문사 닷컴(종속형 인터넷 신문)이 뉴스콘텐츠를 통한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포털사이트에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을 기화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시작됐다.[1] 현재와 같은 뉴스의 선택 및 배열이라는 '편집' 없이 뉴스리스트만을 제공하는 단선적인 서비스로 시작된 포털사

1) 최정훈(2005), 포털의 뉴스서비스, 과거와 현재, 미래. 진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 '포털의 뉴스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논문, 2005. 6. 2.

이트의 뉴스서비스는 효순·미선양 사건 관련 촛불시위(2001년),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통령 탄핵사건 등의 사회적 거대 이슈들을 만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2]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의 상호작용성과 쌍방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포털사업자들의 발 빠른 행보가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기존 매체가 생산해 낸 뉴스의 단순 유통자에 불과했던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이제는 편집(editing)과 공시(publicity)와 같은, 즉 기존 언론사로부터 제공되는 수많은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선별하고 편집해 제공하는 '저널리즘 활동'을 하고 있다.[3]

이와 같은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성장세 및 이용률, 뉴스 집중도 등은 몇 가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12월까지만 해도 뉴스서비스의 순이용자가 종속형 인터넷 신문들에 뒤졌던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불과 2년만인 2003년부터는 그간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뉴스서비스 이용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또한 지난 3월, 인터넷 광고 미디어 랩사인 나스미디어가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18개 사이트와 공동으로 인터넷 이용자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7%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반면 오프라인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0.3%에 그쳐 포털사이트의 뉴스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네티즌이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보다 무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 측면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뉴스 집중도 역시 기존 매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현재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미디어 다음'이라는 별도의 뉴스 섹션을 마련해 40여 개 제휴사로부터 약 4,000~5,000건 이상의 뉴스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다.[4] 또 다른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역시 100여 개의 제휴사로부터 5,000~10,000여 건의 뉴스를 전달받아 제공하고 있다.[5] 뿐만 아니라 올 초에 발생했던 '연예인 X-파일' 사건, '개똥녀' 사건 등을 통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6]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의 양과 그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그 시행령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와 함께 범위를 설정했는데[7] 이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뉴

2) 최정훈(2005), 앞의 글.
3) 임종수(2004), '미디어로서 포털: 포털, 저널리즘, 변화', 2004 한국방송협회 가을학술대회 발제논문.
4) 특히 '미디어 다음'은 취재인력 및 편집인력 각 8인과 1,000여 명의 국내외 통신원을 두고 직접 기사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5) 이상헌(2005, 5월), '책임 다해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해야',『신문과 방송』, 제413호, p.162.
6) 만일 이를 인터넷 뉴스 업체가 기사화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매개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카더라' 수준에서 머무는 뒷이야기 정도로 남았을 것이다(양성희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그러나 포털 사이트가 이를 받아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무수히 많은 댓글 - 예컨대 '어느 사이트에 가면 연예인 X-파일을 구할 수 있다'는 식의 - 들을 방치함으로서 결국 '연예인 X-파일'에 등장한 연예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으로 비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에 포털사이트들은 자사 사이트의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 그와 같은 댓글을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다.
7) 구체적인 법조항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지닌
영향력과 파급력에 걸맞는 법적 책임 부여
위한 논의 시작돼야

스서비스는 인터넷 신문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가 인터넷 신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게 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소한의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8]와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등의 방법으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일부나마 구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9] 하지만 이를 통한 피해 구제가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간편하고 신속한 언론조정 및 중재 제도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현행 법 규정만으로는 '빠른 확산성', '무한복제성', '강력한 파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야기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법제적 관점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접근해 볼 이유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라는 주제 하에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언론법제 관련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와 연계해 언론중재법 및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쳐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신문(언론)의 범위를 살펴보고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어떠한 이유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상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와 공선법 상의 '인터넷 언론'의 정의 등 인터넷 언론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과연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어떻게 법제의 테두리 안으로 넣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본다. 이와 아울러 현행 법조항에서는 놓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유형은 무엇이고 이들을 언론중재법 안에 넣어야 할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연계해 향후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매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 가야할 것인지도 짚어보고자 한다.

2. 포털사이트의 진화과정[10]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도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이재진(2003, 여름), '인터넷 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언론중재』, 통권 제87호, p.30.

10) 이상헌(2005, 5월), 앞의 글; 변희재(2005), '뇌 없는 공룡 포털, 언론권력을 장악하다', 『문화과학』에서 발췌, 정리.

이미 하이텔, 천리안과 같은 사설 BBS 등에서 뉴스서비스를 시행했다. 다만 당시의 뉴스서비스는 현재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와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하이텔의 경우 각 종합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를 서비스하면서 일체의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에서 송고한 기사를 순서대로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로 게시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이후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정보의 바다로 안내해 주는 길잡이 혹은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인 포털이 등장하게 되었다. 포털은 인터넷 보급 초기에 방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기능이나 전 세계 누구와도 손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우편 기능으로 출발했다. 그러던 것이 여러 포털 업체가 등장하고 검색이나 전자우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각 포털 간의 영역이 겹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시장경쟁을 벌이던 각 포털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 영역인 뉴스서비스 부문에 하나 둘 뛰어들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앞서 말한 바처럼 2000년도를 전후해서였다. 당시 언론사들은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기사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 포털에 기사를 팔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들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사를 사들였다. 초기만 하더라도 포털사이트는 뉴스서비스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고 현재와 같은 뉴스의 선택 및 배열이라는 '편집'없이 뉴스리스트만을 제공하는 단선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특별한 편집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지난 2001년 미 9. 11테러를 기점으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도 일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 소식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고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들도 엄청난 접속률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포털사이트들은 '뉴스로 장사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는 뉴스서비스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기사의 단순 게재'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사회적 거대 이슈들을 만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또 다시 급성장의 기회를 맞았다. 포털사이트들은 뉴스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차근차근 편집인력과 제휴사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04년 말,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파란닷컴(www.paran.com)이 독점적인 뉴스서비스를 위해 스포츠 신문들의 기사를 고가[11]에 사들이면서 포털사이트로 뉴스가 몰리는 현상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각 포털사이트들은 자사의 뉴스서비스 부문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직 기자 출신들을 영입하는 한편, 일부 포털의 경우 자체 기사 생산에까지 나서고 있는 등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 상에 포털사이트가 빠지면서 언론중재법상의 중재 및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정리하면 초기와는 달리, 포털사이트들이 뉴스서비스를 자사의 중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11) 5개 신문사 1개사 당 월 1억, 2년 계약. 기존 제공료는 회사당 700만 원~1,200만 원.

현행법 하에서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 규제 어려워

서 그리고 공급받은 뉴스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일종의 '편집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일종의 '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돈벌이의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광고 유치나 이윤 창출을 위해 보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뉴스, 기사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네티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기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소개하는 편집 전략을 구사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사들을 유통시키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내용 또는 그에 따른 명예훼손 등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태도로,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 구제의 대상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3. 현행법 하에서의 포털사이트의 위치

구체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신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법 제2조 3항 5호를 보면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인터넷 신문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 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으로 인터넷 신문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해 두었다.

한편 언론중재법의 인터넷 신문 관련 조항을 보면 제2조 8항 「"인터넷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제2조 9항 「인터넷 신문 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언론중재법에서는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인터넷 신문의 규정을 준용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터넷 신문만을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 신문 관련 법 규정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포털사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일부에서는 포털사이트에 관한 문제를 법 조항 안에 녹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언론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문법과 언론으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명백히 상이한 법

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신문법을 준용하여 인터넷 신문을 정의함으로서 시행 과정에서 입법취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일정 수준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포털사이트는 신문법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준용한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및 중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포털사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털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해 포털사이트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의 대상,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쟁점들

1) 미디어 측면의 쟁점

본 발제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12]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의 한 축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 또는 미디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논쟁의 한 당사자인 포털사이트 측에서는 포털사이트 스스로가 언론이나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유저(USER), 즉 이용자의 취향에 맞출 뿐 저널리즘으로서 포털사이트를 바라보는 것은 버겁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13] 다시 말해, 일부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뉴스의 생산자가 아닌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기존 매체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논의의 다른 한 편에 서 있다. 이들에 따르면 초기의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더 나아가 기존 언론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 종속되기도 하는 관계로 역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매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포털사이트는 자신이 언론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매체를 압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문이나 방송이 가진 의제설정(agenda-setting)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설정력을 갖는다[14]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 즉 무한복제성,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하이퍼링크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 신속한 파급력 등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가진 파워를 배가시키고 이를 통해 전 사회적인 이슈와 파장을

12) 본 발제문에서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13) 중앙일보, 2005. 4. 1일자, 「인터넷 '포털 저널리즘' 역할 논란」.
14) 원용진(2005), 포털 저널리즘에 대한 소고, 진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 '포털의 뉴스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논문, 2005. 6. 2.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

손쉽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라는 인프라의 완벽한 활용,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 활동과 거의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막강한 유통력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 혹은 통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역시 이제는 저널리즘의 한 영역으로 포섭되어 들어와 기존의 언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법에 기반한, 정당한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미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존 매체 이상으로 해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포털사이트의 관계자들은 여전히 언론으로서의 객관성과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스스로가 이미 강력한 영향력, 무한복제성, 엄청난 파급효과 등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해 낸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편집과 배열, 선택이라는 '편집'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정작 그에 상응하는 즉, 미디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작은 목소리만을 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아직 많은 논의와 진지한 숙의의 시간을 거쳐야 하겠지만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엄연히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이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 사회적·법적 장치들을 모색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법제적 측면의 쟁점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 제정으로 그동안 언론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인터넷 신문들이 법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언론으로서 이미 상당한 활동을 펼쳐왔고 또 언론에 상응하는 지위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적으로는 언론이 아닌 상황이 계속돼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던 인터넷 신문 업계에는 하나의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되는 등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더구나 인터넷 신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존 매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발상과 시도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 등을 떠올려본다면, 법제화와 이에 따른 언론중재 및 조정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인터넷 신문 업계 측에서는 비판기능의 축소나 과다한 중재 및 조정 신청으로 인한 시달림을 우려할 수도 있다.[15]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는 보도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인터넷 신

15) 황용석(2005, 2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적용될 것 - 인터넷언론 법제화의 의미', 『신문과 방송』, 제410호, p.35.

문 보도의 책임성을 한층 높인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인터넷 신문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언론으로서 인정 및 지원을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됐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신문이 새롭게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된 만큼 인터넷 신문의 매체적 속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정 및 중재활동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16]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또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의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 파급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이번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제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균형있게 조율하는 최소한의 피해구제 장치인 언론중재 및 조정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때문에 이미 피해를 본 국민들이나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될 지도 모를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이미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선정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17] 또한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언론 자본과는 성격이 다른 자본, 즉 보다 상업적 측면에 경도된 기업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서비스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존 언론으로부터 제공받은 뉴스들을 기사의 가치나 질보다는 '클릭수'와 '접속률'에 의존해 편집하고 배열하게 되고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연성화 된 기사들만을 전면 혹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정리해보자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자칫 이윤 창출 혹은 검색, 쇼핑, 오락 등의 여타 제공서비스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해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 상업적 측면에 치우친 편집권 행사가 이루어져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뉴스들을 적절히 걸러내지 못한 채 게시해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크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 질이 떨어지는 기사까지도 마구잡이로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기존 언론에게 있다. 하지만 갈수록 포털사이트와 기존 언론의 관계가 역전되는, 즉 포털사이트가 언론과 정보제공자의 권위를 와해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언론적 권위에 올라서는 해체적 권력을 쥐게 된 상황[18]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가진 영향력과 파급력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이미 언론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고

16) 황용석(2005, 2월), 앞의 글.

17) 양성희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는 "포털의 다른 뉴스들(연예뉴스 외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영역의 이슈들이 소위 제목장사에 치중하게 되고, 이처럼 연예뉴스화된 일반뉴스가 또다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러한 편집방향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단순히 연예뉴스의 센세이셔널화, 일반뉴스의 연예뉴스화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점차 센세이셔널해지고 단순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18) 원용진(2005), 앞의 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속성을 기반으로 한 무한하고 신속한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5. 인터넷 신문의 범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 신문(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황용석 교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가능한 형태들을 모두 포괄한 인터넷 언론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표1〉 참조).[19]

이를 바탕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언론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20]

〈표 1〉 인터넷 언론의 형태와 조직특성

인터넷언론의 형태	취재기자	칼럼리스트	편집권한	조직문화	자본금규모	중심기능	사례
독립형 인터넷언론	○	○	○	수평적	적음	뉴스의 생산 및 유통	• 시사형 온라인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브레이크뉴스, 독립신문 등) • 전문형 온라인뉴스 (아이뉴스24, 이데일리 등)
주류 인터넷언론 (종속형 인터넷 언론)	△	△	△	수직적	큼	• 오프라인 뉴스 유통 • 종합 콘텐츠유통	• 언론사 닷컴(동아닷컴, 조선닷컴, 조인스 닷컴 등) • 언론사내 온라인조직 (기존 언론사내 온라인뉴스서비스)
인덱스형 인터넷언론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	■	○	수평적	큼	• 뉴스콘텐츠의 2차 유통 • 다매체 뉴스의 통합분류 및 서비스	• 포털 뉴스(미디어다음, 네이버뉴스, 야후뉴스 등)
토론형 인터넷언론	■	○	○	수평적	매우 적음	• 뉴스를 기반으로 한 논평 및 토론	• 서프라이즈, 동프라이즈 등

19) 황용석(2004), 인터넷 언론의 법제화에 따르는 개념정의와 유형화의 문제, '인터넷 언론의 법적 쟁점' 언론재단 세미나 발표문, p.15.
20) 예로 든 인터넷 사이트들은 2005. 11. 15 현재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한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 중에서 일부를 고른 것이다.

1) 독립형 인터넷 언론

온라인 전용 뉴스를 생산하며 온라인으로 시작한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쇄된 형태의 신문은 따로 발행하지 않는다. 대체로 기존의 일간지처럼 시사종합지를 지향하면서 기존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형태의 독립형 인터넷 신문과 경제나 정보통신, 연예 분야 등으로 특화해 속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온라인상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독립형 인터넷 신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은 다음과 같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뉴스파워(www.newspower.co.kr)
뉴스툰(www.newstoon.net)
데일리안(www.dailian.co.kr)
데일리서프라이즈(www.dailyseop.com)
대자보(www.jabo.co.kr)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레이버투데이(www.labortoday.co.kr)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매스미디어뉴스(www.massmedianews.com)
시민의신문(www.ngotimes.net)
웹펜(www.webpen.co.kr)
아이뉴스24(www.inews.24.com)
업코리아(www.upkorea.net)
오마이뉴스(www.ohmynews.co.kr)
이데일리(www.edaily.co.kr)
이비엔뉴스센터(www.ebn.co.kr)
조이뉴스24(www.joynew24.com)
코나스(www.konas.net)
폴리뉴스(www.polynews.co.kr)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프로메테우스(www.prometheus.co.kr)
프레시안(www.pressian.com)
한국디지털뉴스(www.koreadigitalnews.com)

독립형 지역 인터넷 언론으로는,

거제타임즈(www.geojetimes.co.kr)
광명시민신문(www.kmtimes.net)
광주투데이(www.gjitv.co.kr)
광진닷컴(www.gwangjin.com)
남양주뉴스(www.nyjnews.net)
디지털화순뉴스(www.hwasunnews.co.kr)
밀양뉴스(www.imiryang.com)
부천매일(www.bcmaeil.com)
부천타임즈(www.bucheontimes.com)
성남일보(snilbo.co.kr)
수원일보(www.suwon.com)
시티뉴스(www.ctnews.co.kr)
영남뉴스(www.ynnews.co.kr)
우리힘닷컴(www.woorihim.com)
인천뉴스(www.incheonnews.com)
등이 있다.

2) 종속형 인터넷 언론

종속형 인터넷 언론이라 함은 인쇄신문의 기사를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는 인터넷 언론인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이들의 기사쓰기 방식, 뉴스가치의 판단, 독자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의 규범들은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종속형 인터넷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능이 오프라인 뉴스 콘텐츠의 유통에 두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영이나 편집에 대한 권한이 상당부분 오프라인 매체에 주어져 있다.[21]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1) 황용석(2004), 앞의 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엔덱스형 인터넷 언론'에
포함시킬 수 있어

국민일보(www.kmib.co.kr)
내일신문(www.naeil.com)
동아닷컴(www.donga.com)
매일경제(www.mk.co.kr)
매트로(www.clubmetro.co.kr)
문화일보(www.munhwa.com)
서울신문(www.seoul.co.kr)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스포츠투데이(www.stoo.com)
스포츠한국(www.sportshankook.co.kr)
시사뉴스(www.sisa-news.com)
시사저널(www.e-sisa.co.kr)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조선닷컴(www.chosun.com)
조인스닷컴(www.joins.com)
파이낸셜뉴스(www.fnnews.com)
한겨레(www.hani.co.kr)
한국경제(www.hankyung.com)
한국닷컴(www.hankooki.com)
헤럴드경제(www.heraldbiz.com)
기독교신문(www.gidoknews.co.kr)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
강원일보(www.kwnews.co.kr)
경기도민일보(www.kgdomin.com)
경기매일(www.kgmaeil.net)
경남신문(www.knnews.co.kr)
경북일보(www.kyongbuk.co.kr)
광주매일(www.kjdaily.com)
대구신문(www.idaegu.co.kr)
대전매일(www.ccyoday.co.kr)
무등일보(www.moodeungilbo.co.kr)
부산일보(www.pusanilbo.com)
새전북신문(www.sjbnews.com)
전라일보(www.jeollailbo.com)
제주일보(www.chejunews.co.kr)
중부일보(www.joongboo.com)
충남일보(www.choongnam.net)

3)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인덱스형 또는 목록 분류형 인터넷 언론이라 불리기도 하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뉴스사이트로서 각종 뉴스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유형은 웹에 있는 다른 뉴스 사이트와 링크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뉴스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자체 편집진에 의해 기존 뉴스를 분류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와 제휴를 맺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체 기사를 생산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특정 뉴스에 대해 수용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전자게시판과 같은 공간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는 뉴스의 단순 유통과 제한적인 뉴스 선택 및 편집권한을 발휘한다.[22]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놓고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23]

네띠앙(www.netian.com)
네이버(www.naver.com)
네이트(www.nate.com)

22) 황용석(2004), 앞의 글.
23) 뒷부분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보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
엠파스(www.empas.com)
프리첼(www.freechal.com)

4) 토론형 인터넷 언론

이 유형은 대단히 논쟁적일 수 있는 유형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인터넷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에 기반해서 일반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특정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웹사이트로 정치칼럼웹진 또는 논객 사이트로 부르기도 한다. 이 유형은 1차 정보로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으며 정치문제와 관련한 상호작용적 토론이 주된 운영의 목적이며 대안언론적 성격을 띤다.

둘째는 이른바 패러디사이트 또는 풍자사이트로 불리는 인터넷 언론이다. 패러디사이트는 전문주의적 언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의적인 풍자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이므로 사실보도와도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심의의 규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범주이기도 하다.[24]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딴지일보(www.ddanji.com)

6.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 신문(언론)에 포함시킬것인가

1) 언론(신문)의 개념

언론 내지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요구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취재', '편집', '배포'의 세 가지를 핵심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언론이라 함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언론이자 미디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언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

일단 언론이 되기 위해 가장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배포'의 기능이다. 배포가 없다면 즉, 알릴 수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정보를 담고 화려한 편집을 거쳤다 하더라도 언론으로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언론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에는 바로 배포의 기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배포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례로 종래의 오프라인 신문은 활자화를 통해 이를 인쇄하고 독자의 집 또는 각종 가판 등을 통해 직접 배달·판매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가장 원시적인 배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 기술 및 과학의 발달과 함께 배포의 기술 역시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것이 바로 방송,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배포인 방송이 그러하다. 또한 인터넷 신문의 경우 활자를 주 도구로 이용해 독자(네티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오프라인 신문과 별 차이가 없으나 배포의 방법, 다시 말해 독자(네티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큰 차이가 있다. 즉 활자화를 통한 인쇄의 방법으로, 종이 신문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통해 소프트웨어적으로 배포를 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오프라인 신문이 가지는 한계인 배포

24) 황용석(2004), 앞의 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취재, 배포, 편집의 언론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위에 있어 인터넷이 깔려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배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인터넷 신문은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을 훨씬 뛰어넘는 배포의 기능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재 역시 기존의 방식을 보자면 각 언론사가 자체 인력을 동원해 뉴스를 발굴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야가 넓어지면서 자사 언론사 소속 인력만으로 모든 정보를 취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신문에 있어서도 통신사 등을 통해 유료로 기사를 제공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체 인력으로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제도로 이미 마련되어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취재 역시 한 언론사가 독자적으로만 해야 한다는 개념 역시 변천될 수밖에 없고 다른 언론사 또는 통신사가 취재 작성한 기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도 넓게 보면 역시 취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편집[25]은 정보의 취사선택, 배열, 뉴스의 해석 및 평가를 통틀어 설명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신문 또는 방송에서는 편집회의가 자사의 면 또는 전파에 실을 내용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내용에서 보면 편집이야말로 언론 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취재와 배포는 편집을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즉, '취사선택', '배열', '해석'이 편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언론 및 언론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언론의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언론 해당 여부

앞서 언급한 언론의 세 가지 핵심 기능, 즉 취재, 배포, 편집의 기능을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 대입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별해 볼 수 있다.

먼저 배포의 측면을 살펴보면 포털사이트의 경우 이미 기존의 어떤 언론사보다 월등한 배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휴를 맺은 여러 언론사로부터 하루 4천~5천 건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통신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누구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강력한 전파력'은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정보 제공이 배포의 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취재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 포털사이트

25) 신문편집이란 그 날 그 날의 취재된 기사를 지면에 적절히 배치하면서 뉴스가치를 부여하고 기사내용을 요약, 압축한 제목을 붙이고 사진 및 그래픽들을 엮어 지면을 제작하는 편집국에서의 신문제작과정을 말한다. 즉 하루의 뉴스를 지면에 효율적으로 잘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박선홍, '신문편집론'(『현대신문학』), p.231 ~ 232.)

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자체 취재 인력 없이 제휴된 언론사의 기사를 공급받아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취재의 기능이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는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기존 언론에서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뉴스 역시 기존 언론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 기자가 취재해 온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포털사이트의 경우 전통적인 언론의 취재라는 부분에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지만 일종의 유사 취재로 볼 수 있으며 또는 취재의 개념을 넓혀 생각한다는 전제를 둔다면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의 경우는 특히 포털사이트에 대한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포털사이트는 공급받은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거나 공급받은 여러 기사들을 취사선택해 메인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름대로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 배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편집의 중요한 부분인 정보의 취사선택, 배열 그리고 정보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언론사만큼 정형화되어 있고 어떤 확실한 편집 규칙이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편집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포털사이트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6)]

이러한 관점에서 포털사이트 역시 언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7.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법제화를 위한 논의

지난 9월에 있었던 2005년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야의원들은 현 신문법 시행령 상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 따르면 '빠른 확산성', '무한복제성', '파급력' 등의 측면에서 그 어느 매체보다 영향력이 큰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 및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은 공유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27)]

하지만 법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현실화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제상 인터넷 신문(언론)의 개념 및 범위

법제적으로,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현

26) 이와 관련 포털사이트의 비전문적이고 부족한 편집인력, 애매한 편집기준, 편집권의 종속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27) 경향신문, 2005. 10. 12일자, 「'포털 피해' 구제장치 힘 받는다」.

공선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

행법상으로 보면 공선법에 근거한 것, 신문법에 근거한 것,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것의 세 가지가 있으며 현재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의 인터넷 언론 개념 두 가지를 더해,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28)]

먼저 공선법상의 인터넷 언론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8조의 5항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제8조의 6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피해구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선법상의 조항에서의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에 비해 범위가 훨씬 넓으며 공선법상의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선법에 따르면 각 언론사들의 기사를 사들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매개하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방송 등도 역시 심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므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도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

한편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상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살펴보면 제2조 3항 5호에서 「"인터넷신문"

28) 원래 본 발제문은 현행법(공선법,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는 인터넷 신문(언론)에 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작성 중에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인터넷 신문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으로 인터넷 신문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해 두었다.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상의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서는 인터넷 신문은 '전자화된 신문'이라는 부분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방송 등은 대상이 아니며 '매개'하는 사이트, 즉 포털사이트 등 역시 인터넷 신문이 아니다. 또한 자체 취재 및 편집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사 생산 건수를 요건으로 두어 취재 및 편집인력이 없거나 기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는 생산 기사가 법이 정한 건수에 모자라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신문은 제2조 8항 「"인터넷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와 제2조 9항 「"인터넷 신문 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 사업자를 말한다"」의 두 가지 조항에 정의되어 있다.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 및 시행령상의 인터넷 신문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는 중재 및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발의안을 보면 인터넷 신문(언론)에 대한 개념이 현행 언론중재법과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넷 신문 정의를 살펴보면 안 제2조 8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이란 인터넷 신문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고 인터넷 신문을 정의하고 안 제2조 9호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개념을 규정했다.

박찬숙 의원의 발의안은 공선법상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와 같이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 특징이며 신문법 및 시행령상의 인터넷 정의를 따르지 않고 중재법 안에 새롭게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넣어 이를 근거로 피해구제 실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매개'하는 이라는 용어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이라는 용어를 넣어 포털사이트를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안 제2조 1호에서 「"인터넷 신문" → "인터넷 언론"」으로 용어를 바꾸었고 안 제2조 8호에서는 「"인터넷언론"이란 인터넷신문과 방송·뉴스통신·신

언론중재법상에 인터넷 언론에 관한 독자적인 조항 마련해야

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안 제2조 9호에서는 「"인터넷언론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 발의안은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언론으로 용어를 바꾸고 그 대상을 방송, 뉴스 통신 등까지로 확장시켰으며 역시 '매개'라는 용어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포털사이트도 중재 및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상시적으로'라는 단어의 삽입은 의미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정리하면 신문법 및 그 시행령,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현행법 및 발의안들은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보다 넓게 잡고 있으며 기존의 언론이나 인터넷 신문들 뿐 아니라 매개의 기능을 하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들도 인터넷 언론의 대상으로 삼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요약 및 평가

위에서 전술한 바를 오늘날 흔히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신문의 유형, 즉 ① 독립형 인터넷 신문, ② 종속형 인터넷 신문, ③ 포털사이트, ④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⑤ 토론형 인터넷 신문[29], ⑥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6가지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공선법에 따르면 문헌상으로 보면 공선법상 인터넷 언론의 개념이 가장 넓은 것이어서 6가지의 인터넷 언론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독립형 인터넷 신문만이 해당된다. 한편 박찬숙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역시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공선법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노웅래 의원 안의 경우 '상시적'이라는 제한 문구가 포함되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제외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공선법의 규정은 지나치게 넓고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 언론중재법의 규정은 지나치게 좁다. 박찬숙 의원의 발의안 역시 공선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넓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기존 법안 및 박찬숙 의원의 발의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감안했을 때, 노웅래 의원의 발의안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보도..."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이 빠짐으로 해서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언론중재법에 독자적인 조항을

29) 기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칼럼 등의 의견을 전제로 이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신문.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언론중재법상에서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언론'으로 바꾸고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항을 「"인터넷 언론이란 인터넷 신문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로 바꾸어 삽입하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 또는 언론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잡아 법 조항이 추상화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고 또 개념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한 법조문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안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이라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개념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 비판은 물론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앞으로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신(新)개념의 매체가 나타났을 때에 구태여 또 다시 그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법률의 해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유연한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장래의 변화에 부드럽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언론에 관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환경의 변화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와 같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중재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 뉴미디어 또는 인터넷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새로운 매체에 의한 피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든가 중재 및 조정 담당 조사관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뉴미디어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보다 효율적인 조정 및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8. 결 론 - 인터넷 신문(언론)의 범위

1) 언론의 의미

언론이라 함은, 언론의 올바른 기능이라 함은 '사실을 보도'하고 '의견을 개진'해 일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사실 또는 의견을 제대로 알리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도모해 한 사회나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의견 진술에 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으나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나 반론을 허용하는 등 올바른 사실만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보도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르고 합리적인 여론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의 사명과 기능이라는 명제 하에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신문(언론)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2) 위 언론에 해당되는 범위

이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용되고 있는 위 6가지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신문을 비추어 보면 우선 토론형 인터넷 신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종속형 및 독립형 인터넷 신문은 언론중재법상의 조정 및 중재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

문은 의견개진을 주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언론중재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역시 올바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개성 표현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편 순수한 의미의 포털사이트는 언론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메일서비스, 쇼핑 등 다양한 상업적 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일종의 종합 정보 서비스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포털사이트 자체를 언론으로 보고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도 부적절하게 보인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국 언론중재법으로 다룰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 취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를 하고 가장 중요한 편집의 기능(취사선택, 배열, 해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중재법의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종속형 인터넷 신문

종속형 인터넷 신문의 경우 대개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사가 취재한 기사를 받아 웹상에 제공하는데 불과해 100 퍼센트 스스로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속형 인터넷 신문 역시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를 하고 있으며 종속형 인터넷 신문에 있어서 편집 역시 오프라인 신문과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역시 인터넷 언론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언론중재 및 조정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3) 독립형 인터넷 신문

독립형 인터넷 신문은 앞서 말한 취재, 배포, 편집에 있어 인터넷 언론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또한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상으로도 인터넷 신문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다만 현행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의 기준을 보면 그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신문법의 기준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의 개념으로 규정해 적용함으로서 법망을 피해가는 매체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맺는 말

모든 법에는 각각 그 법을 제정하는 근본 이유, 목적(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어떤 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면 그에 따라 관련되는 개념도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신문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개념은 그 입법 목적이 신문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규제'와 '지원'[30]을 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언론중재법의 입법 목적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의 개념은 당연히 신문법에서의 언론의 개념과는 달라져야 한다. 즉,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의 개념에는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즉 공정한 여론 형성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럴 가능성이 있는 언론매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앞서 본 6가지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인터넷 신문의 유형 중 독립형 인터넷 신문, 종속형 인터넷 신문,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인터넷 언론 중에서 포털사이트, 토론형 인터넷 신문,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이 그러하다면 현행 신문법의 규정과 같이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일정한 제한(시행령상의 기준)을 굳이 설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의 위상 내지는 역할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하면서 본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 특히 최근의 인터넷이나 통신 수단의 발달에 수반되는 언론중재제도의 변화 내지 개혁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고 세계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일도 우리가 항상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이는 앞서 나가는 사람의 어려움으로 알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선진적인 언론중재제도를 국내적으로는 보완·발전시켜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세계에 전파시키는 진취적인 역할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30) 재정적인 지원, 즉 신문발전기금에 따른 지원 등.

2005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송영천 서울 제2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포털 저널리즘의 이론적 개념과 현황,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그 문제점, 공급자로서의 언론사와 유통자로서의 포털 간의 관계설정 문제, 포털사이트에서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형식 문제, 급변하는 사회 및 미디어,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펼쳤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제1주제 토 론

박정용(네이버 미디어유닛장) : 이용자들은 포털뉴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문업계나 언론계 종사자들은 저희 포털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 교수님이 포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얘기해주셔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포털뉴스 담당자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을 느끼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포털 저널리즘, 즉 포털 뉴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 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포털뉴스는 선정적이다', '포털뉴스는 신문산업의 적이다', '포털뉴스가 저널리즘을 훼손하고 있다', '과다한 덧글 기능의 폐해처럼 인터넷의 역기능을 포털뉴스가 조장하고 있다' 등의 네 가지 정도가 포털뉴스에 대한 대략적인 비난의 핵심 또는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포털뉴스는 선정적이다'라는 지적에 흔히 따라오는 사례가 '가장 많이 본 기사'에 있어서 연예기사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뉴스는 대체로 포털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오른 내용을 이용자들이 클릭을 해서 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 메인페이지에 연예나 스포츠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절대 3분의 1 이상 노출하지 않는다는 편집규약을 정하고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헤드라인은 정치·경제·사회 기사로 채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본 기사의 1위부터 10위까지가 연예 기사인 이유는 연예기사는 굳이 키우지 않아도 포털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다 찾아내서 보기 때문입니다. 포털뉴스는 종합일간지가 아닙니다. 포털뉴스는 종합일간지의 성격도 있지만 경제지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지의 성격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방송적인 콘텐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털뉴스가 연성화된 기사나 선정적인 기사를 공급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엄밀히 말하면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포털뉴스의 선정성에 대해 비판을 하기에 앞서 어느 언론이 어떤 선정적 기사를 생산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자의 포털뉴스 이용 패턴과 포털뉴스가 공급받은 기사를 편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포털뉴스는 신문산업의 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신문산업과 포털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경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의 딜레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하루에 1300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뉴스는 하루에 350 ~ 400만 명이 방문합니다. 하루에 1억 페이지 뷰, 즉 약 400만 명이 25페이지 정도를 매일 와서 읽고 갑니다. 만약 포털뉴스를 온라인 뉴스에 포함시킨다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온라인 뉴스가 바로 네이버 뉴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털에서 뉴스 파트는 수익 부서가 아니어서 영업팀이 없지만 네이버에는 광고영업팀이 있기 때문에 광고가 포털로 많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수와 가장 많은 페이지 뷰를 내고 영업도 가장 잘되는 네이버 뉴스에서 (인건비나 서버 비용 등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오로지 언론사에 지급하는 콘텐츠 비용과 1년 동안의 광고 수익을 비교해보면 적자입니다. 네이버는 돈을 벌지만 네이버 뉴스는 적자임을 이해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통의 딜레마, 즉 인터넷 뉴스 전반과 넓게 보면 한국 신문 산업의 기형적 구조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뉴스 콘텐츠가 B2B가 됐든 B2C가 됐든 유료화되고 프리미엄화 돼서 독자들이 돈을 내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신문을 구독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공통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털이 신문사들에 제공하는 콘텐츠 이용료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진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갑자기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포털뉴스와 신문산업 양 측이 공통의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 Win-Win 모델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신문사만큼 Win-Win 모델에 대해 비친화적인 조직이 없다고 봅니다. 포털뉴스를 담당하면서 언론사들과 Win-Win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Win-Win 관계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즉 공통의 딜레마를 깨기 위한 부분에 있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통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포털업계와 신문산업 간의 공동 노력 있어야

셋째, '포털뉴스는 저널리즘을 훼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라는 것이 공중의 삶과 관련된 검증된 정보이며 저널리즘은 진실보도를 추구해야 하고 공중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선정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포털뉴스가 연성화됐다는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연성화라는 단어자체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 단어 자체에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기자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연성 기사는 악이고 경성기사는 선'이라는 고정관념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치기사와 좋은 연예기사가 있고 나쁜 정치기사와 나쁜 연예기사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연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는 관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저널리즘의 가치판단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 판단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던 고(故) 노충국 씨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하고 이것이 포털 이용자들에 의한 여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에 영향을 끼쳤지만 대부

분의 오프라인 매체들은 그 기사는 보도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체의 관점과 가치판단을 통해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연성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신문사나 언론이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신문들이 독자들과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문사 스스로가 권력화 되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털뉴스는 뉴스 이용의 조건 자체를 이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사나 정치권에서는 기존에 자신들이 주도했던 권력이 이용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할 수 있겠지만 뉴스 이용의 조건을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포털뉴스는 저널리즘이나 사회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의 선택이 절대 선은 아니지만, 포털뉴스가 뉴스 선택의 이용권이라든지 전반적인 저널리즘의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일정 정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포털뉴스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속보 경쟁의 폐해와 모자이크 민주주의라는, 파편적인 정보의 습득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정보가 무척 많아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정보만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4 ~ 50 페이지씩 인터넷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IT면 IT, 연예면 연예, 정치면 정치 등 자기가 관심있어 하는 기사만 봅니다. 종이신문의 경우, 신문을 읽다보면 관심이 없더라도 오늘 경제 톱은 무엇인지 등의 제목이라도 보게 되는데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진 정보 속에서 자기가 관심있어 하는 정보만 습득하게 되는, 그런 파편화 된 정보 습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털뉴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뉴스를 읽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나가길 원하지 절대 이 사람은 IT만보고 이 사람은 연예만 보길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매체의 관점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보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

마지막으로 '과다한 덧글 기능의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덧글이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지나친 덧글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등을 이용해서, 즉 인터넷의 역기능을 이용해서 포털사이트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뉴스에 하루에 달리는 덧글이 5만에서 약 10만 개 정도이고 페이지뷰로 따지면 하루에 약 10만 페이지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여러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덧글 때문에 발생하는 페이지뷰는 하루 5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는 하루에 1억 페이지뷰가 나는 상황에서 사실 500만 페이지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덧글을 관리하거나 게시판이나 카페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관리인원이 150명에서 200여 명이 됩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해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장 굳게 믿고 있는 곳이 바로 포털입니다. 애초에 덧글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원조교제가 채팅에서 발생하니까 채팅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에 관한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인데 어느 하나를 지칭해 놓고 저것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단순화되고 쉬워 보이지만 정작 대안은 없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은 포털 때

문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제대로 된 대안이 있는 비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경향은 현재 덧글의 성향이 단순 욕설이나 배설의 차원을 넘어 이용자들의 의식적인 참여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욕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이슈나 현상에 대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덧글을 쓰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이트의 경우 그런 형태의 덧글이 달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범죄다, 이 부분은 지켜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통부가 됐든 문화부가 됐든 기타 기관이 됐든 간에 이러이러한 사례는 범죄행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에는 표현을 한 당사자인 네티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덧글의 폐해에 대해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지 덧글을 규제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하는 형태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포털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향을 띄고 있으므로 기존의 저널리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독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라든지 하는 것과 같이 보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희재(런아시아넷 편집국장) : 현실에서 안 되는 일은 인터넷에서도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현실에서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유포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 한다면 인터넷상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터넷 전문가들이나 인터넷 언론인조차도 현실에서 하면 안 된다는 상식적인 일을 인터넷이라면 보다 폭 넓게 수용을 하자, 인터넷을 보다 자유롭게 내버려두자는 이런 판단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보호라든가 아니면 지고지순한 순결의 공간으로 놔두어야 한다는 판단 배경에는 '인터넷은 비상업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간'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정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아주 건설적인 비판사이트 혹은 거대 권력에 대항하는 안티사이트 등 건강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인터넷 공간들은 포털사이트가 이용 페이지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자유롭고 비영리적이고 공적인 인터넷 공간이 아니라 포털에 의해 모든 클릭 수 하나하나가 돈으로 환원되는 그 어떤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도의 상업적 공간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공간에서, 현실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인터넷 공간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상업적이고 현실보다 더 권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털뉴스는 이제 거대 권력화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 필요

신문법이 제정되면서 또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종이신문에 대해 규제가 많이 강화됐다고 봅니다. 신문구독을 미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일반 사회의 여론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이

제 신문하나 본다고 하면 냉장고를 준다거나 상품들을 주는 행위는 아주 파렴치하고 언론사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신문사들은 자본이나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다는 보다 질 좋은 콘텐츠, 질 좋은 기사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 포털뉴스의 성장과정, 발전과정을 보면 포털이 지금과 같은 언론권력으로 성장한 것이 더 좋은 뉴스, 기존 언론보다 더 질 높은 뉴스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검색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부대적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뉴스의 양을 늘리게 되고 그로 인해 영향력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일간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경품 제공 금지와 비교해 보면 포털이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포털뉴스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해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하는 순간에 바로 옆에 제공되는 뉴스에 시선이 가고 그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일을 쓸려다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뉴스콘텐츠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간지와 같이 규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문법을 보면 30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언론사의 지분 소유를 50%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포털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익과 국익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어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포털사이트의 경우 미국의 거대 기업들, 한국의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만들고 인수할 수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일간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포털사이트를 자본력으로 인수하면 일간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언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간지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 논리를 가지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송고하는 기자나 편집장 입장에서 포털사이트를 보게 되면 기사를 쓰는 기자는 물론이고 편집장까지도 포털사이트의 편집방향에 길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쓰면 포털 메인에 배치가 되고 어떤 아젠다나 이슈를 잡으면 포털 메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두 달만 해보면 금세 감을 잡게 됩니다. 나중에는 기자나 편집장 모두 포털에 메여서 포털의 메인에 올라갈 기사나 아젠다를 고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털에서는 언론사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써 보내지 않으냐고 말을 하지만 기자의 입장에서는 포털이 그 기사를 편집해주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양 측이 서로 조율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 매체의 규제 정도와 상응한 수준의 규제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도 있어야

포털뉴스는 수용자가 선택한다는, 포털은 수용자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포털의 편집은 아예 영향력이 없고 그냥 랜덤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현재 포털 피해자 모임에서 소송을 4건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가 다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명예훼손 문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 관한 수많은 뉴스가 단 한 번도 전체 포털의 메인에 배치된 적이 없습니다. 즉 클릭 수와 네티즌들이 선택한 뉴스들로 채워진다고 포털은 이야

기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대해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기사는 일체 메인에 노출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포털사이트에 대해 비판적인 칼럼들은 배치가 안 됩니다. 당연히 편집권을 포털이 가지고 있으면 포털은 포털의 사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편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편집권력의 남용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용석 교수(발표자) : 포털뉴스의 선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편집 특히 제목을 다는데 있어서의 선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포털뉴스에서 제목은 종이신문의 제목보다 훨씬 짧게 만든 제목들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달린 덧글들을 읽어보면 제목과 글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제목을 만드는 것은 뉴스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문에서의 프레임은 리드 기사와 제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포털뉴스에 의해 편집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뉴스의 프레임들이 재해석 되거나 새롭게 쓰여 배치가 되고 이것이 그 신문의 콘텍스트나 맥락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포털뉴스의 제목들은 수용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여를 일으킬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포털뉴스에 의한 편집과정에서 기존 뉴스들의 프레임들이 재해석되거나 새롭게 쓰여 원 맥락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 생겨

그리고 포털뉴스가 연예 콘텐츠 정보의 아주 중요한 소비처가 됨으로 인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연예 콘텐츠를 포털에 제공하는 소규모 미디어 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직접 취재가 아니라 간접 취재를 통해서 뉴스를 재가공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포털에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포털이 신문산업의 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박 유닛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부분이고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이 콘텐츠를 유료화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신문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공급되는 콘텐츠들 중 상호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즉 대체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라든가 포털에 대해 제공하는 협상력 측면에서도 많이 뒤처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신문의 문제라고 말하기 보다는 포털이 이미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소비 창구가 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다른 측면에서 Win-Win 모델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사와 포털은 'Turn - Key'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뉴스 콘텐츠들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50개 이상의 서비스 안에서 마음대로 재가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이용기간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즉 약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글처럼 딥링크를 이용해서 그것을 누르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는, 말 그대로 관문 기능을 해주면서 개별 신문사의 트래픽이 같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사와서 그것이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로 전환이 되는, 하나의 소재화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와 신문의 브랜드가 매몰되는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신문사는 자사의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브랜드가 매몰되고 또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브랜드 경쟁을 인터넷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딥링크를 한다든가 적어도 뉴스

를 제공할 때 기사를 제공한 뉴스 회사로 옮겨갈 수 있게끔 개별 언론사의 고유로고를 달아준다든가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어디로부터 제공되는가는 수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자 입장에서 이 뉴스의 브랜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개별 기사 페이지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공급자 간의 일종의 Win-Win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인 차원이나 협상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상호 트래픽이 같이 올라가고 뉴스 콘텐츠의 유입과 유출에 있어 일정 정도의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그리고 좋은 콘텐츠와 나쁜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유통의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콘텐츠와 저질의 콘텐츠가 한 무더기로 가는 것은 독자에게 있어서도 바람직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복잡한 상황을 일반화해서 '포털이 저널리즘의 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논의는 반대합니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포털이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막강한 영향력에 관한 책무와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 덧글이 여러 개 달리면 이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적어도 언론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문가들이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줘야 합니다. 팩트가 아닌 것을 삭제해줘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그 자체가 미디어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팩트가 아닌 덧글을 놓고 끊임없이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핫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토론을 조절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미디어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뉴스의 아젠다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편집의 역할들이 필요하고 편집의 공적인 가치들을 회사 내 하나의 뉴스룸 속의 에디터들이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포털은 그것을 뉴스룸의 편집정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널리즘의 훼손이라는 현상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결국 콘텐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측면에서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외부효과, 즉 과도한 속보경쟁이라든가 포털뉴스의 메인에 진입하기 위한 뉴스 아이템끼리의 경쟁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경영과 편집정책들이 명시적으로 있어야한다는 것 그리고 포털뉴스사들이 뉴스 CP들, 뉴스공급자들과 뉴스 편집 정책과 뉴스 제공 그리고 편집 제목을 다는 것에 대한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해나가는 것과 같은 조율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포털 스스로 사회적 책무나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 충분히 됐고 그런 것에 대한 장치들을 공급자와도 해야 하고 수용자들과도 해야 합니다.

포털뉴스사들도 사회적 책무나 공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인식 갖춰야

왜 우리나라의 덧글 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의 문제와 함께 법의 권위가 없고 법 집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임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한 권위가 서면 덧글로 인한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희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포

털서비스와 신문의 경품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털은 콘텐츠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고 신문의 경품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와 무관한, 서비스와 무관한 일이고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털뉴스를 수용자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국 수용자의 니즈 중심으로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자 욕구 중심의 소비가 가속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100년 200년에 걸쳐 만들어 온 저널리즘 규범이 사회 전반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젠다 세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널리스트가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뽑아주는 게이트키핑이 훨씬 더 균형적인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널리스트가 제공해주는 뉴스의 밸류와 수용자가 선택하는 밸류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무척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수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뉴스를 선택하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부효과, 즉 연성화 된 뉴스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경중(CBS 노컷뉴스 부장) : 지난 98년, 야후 사장이 앞으로 야후가 기존 언론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포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저널리즘이 스스로 원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방향으로 갔던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학자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이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에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검증없이 행동했던 부분들은 분명 반성해야 합니다. 이를 포털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언론인들이 냉정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포털사이트의 에디터들에게 연수도 받고 객관성을 가져라라고 강요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조차도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떠올려 볼 때 포털사이트의 에디터들에게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포털사이트를 옹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자는 측면에서 이 논의의 장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언론사와 언론인들 역시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상곤(대전중재부 중재부장) : 포털사이트에 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권의 독립, 편집자의 윤리, 수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기사 방향 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울 것이냐 등이 언론법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째,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명예훼손 등의 부분입니다. 포털사이트의 덧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법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시장인지 그렇다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몇 개의 사이트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가 공정거래법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포

털사이트 운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뉴스의 영역으로까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사이트를 지배했을 때 그런 부분이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아니지 않으냐 라는 부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문제라든지 등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경숙(경남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 저널리즘에 대해 다루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포털사이트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갈 많은 이들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진건(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 포털뉴스와 기존 언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실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털을 보면 뉴스와 뉴스를 가장한 글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털이 과연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뉴스를 가장한 글들을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뉴스로 인식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될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는 포털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글 관련해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덧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쓴 사람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포털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덧글을 쓰는 사람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포털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포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실성있는 기사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 포털도 진실성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기존 언론사와 포털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황용석 교수(발표자) :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단면만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현상의 원인을 하나의 대상으로 일반화시킬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자료들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털 스스로 책임있는 자세로 CP들과 문제들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포털사이트 문제의 결과론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정, 원인, 공급의 문제까지 살피는 시각 가져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현안을 볼 때 언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안을 볼 때 완전

성을 갖춰라'. 포털의 문제를 볼 때 부정적 외부 효과만, 결과론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정, 원인, 공급의 문제까지 다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2주제 토 론

신찬균(서울 제4중재부 중재위원) : 포털사이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정권고의 경우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잘못 됐을 경우 이를 게재한 신문사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삼승 변호사(발표자) : 오프라인 신문의 경우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신문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 그대로 게재했는데 그 기사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그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로부터 받은 기사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취사선택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연합뉴스에서 온 기사를 받아 실었다면 당연한 책임으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실무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요건에 당연히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 게재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한 책임, 즉 고의·과실로 인한 책임은 원래 기사를 제공한 연합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를 들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신문에 게재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따라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 신문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털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형식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그와 똑같은 논리구조를 통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예를 들어 연합뉴스나 조선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게재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논리를 가지고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허용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천 부장판사(사회자) :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문제는 지금 오프라인 신문에서 하는 것과 같은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자화 된 지면이 아니기 때문에 팝업 창을 띄운다든가 하는 식의, 포털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용(네이버 미디어유닛장) : 기본적으로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시작된

것 같습니다.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사실 다 하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신문법에서 포털이 제외된 것을 가지고 포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는데 사실 이번 신문법이 제정될 때 포털에서는 인터넷 신문에 포털을 넣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빼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디어 다음처럼 적극적으로 언론이 되길 원하는 측은 인터넷 신문 쪽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지겠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보다는 명백하게 합리적인 테두리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권한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포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 신문에서 포털이 제외됐습니다.

기사 생산 주체가 아닌 포털사이트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했을 경우 언론을 검열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 있어

언론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언론중재법에서 얘기하는, 또 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분과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 재보선 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몇몇 포털사이트에게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선거 관련 기사가 포털에 게재됐을 때 여당 후보의 사진이 이 정도 크기면 야당 후보의 사진도 똑같아야 한다, 그것이 기계적으로 똑같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를 경우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예를 들어 조선일보 기사였다고 치면 그 기사를 사실 포털에서는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들이 기사들을 리뷰하면서 논란이 있을 만한 기사의 경우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검색 DB에 남아 있을 뿐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해당 기사가 편파적이냐의 여부를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라는 말이냐, 그 기사를 임의로 삭제하라는 말이냐라고 문의하니까 삭제하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네이버의 계약관계에 의하면 기사의 내용과 이런 부분은 네이버가 임의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그 기사를 쓴 언론사의 권한 자체를 포털이 검열한다거나 판단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삭제를 하고 조선일보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기간이 특수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써서 저희가 그 기사를 게재했는데 조선일보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고 네이버 뉴스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포털이 쓴 기사가 아닌데 반론보도를 네이버 뉴스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자칫 이 기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기사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조선일보가 아니라 포털이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거나 책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성격이 다른 것이고 책임의 성격이 다르면 책임을 지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는 기사의 생성과 기사의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포털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사를 유포하거나 배포한 쪽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서 단신으로 실

었던 기사를 네이버에서 헤드라인에 올려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면 그것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은 배포한 쪽에서 더 크게 지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거나 책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기사의 생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쪽이 기사를 작성한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사를 검열하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포털뉴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서(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에 그런 권한을 주면 참 편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민사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구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선일보의 기사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네이버에 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네이버에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희 보고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포털에게 권한을 준다고 하면 판단이 될 때까지 잠시 서비스에서 내리거나하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하기 참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사를 썼을 때 그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털이나 유포하는 쪽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지 또 가능한지에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에 정정보도가 들어오면 오마이뉴스 뿐 아니라 오마이뉴스와 제휴하고 있는 모든 매체, 포털이든 모바일이든 모든 연관 매체에 똑같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가게끔 언론중재법 안에 조항을 만들어 넣는 것입니다. 애초에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목표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포털은 이미 민사 소송 영역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사 소송 영역에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희재(런아시아넷 편집국장) : 어떤 기사든지 충분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선거법에 걸리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위험한 기사의 경우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메인에서 내리는 등 이미 포털이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포털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뉴스서비스 뿐 아니라 여타의 서비스로부터도 발생

포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소와 그 콘텐츠들을 보면 일반적인 언론사로부터 받은 피해와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기사 하나에 대해서 그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는 건데 포털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면 뉴스로 인해 파급되어 발생하는 여타의 서비스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그 피해 또한 엄청납니다. 양 변호사님께서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삼되 포털사이트 자체는 조정이나 중재 대상으로 삼지는 말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뉴스를 통해 블로그, 카페, 추천검색어 등으로 파급된 부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

이중적 부담이 생깁니다. 뉴스만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선의를 이해하자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호하자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각 포털사이트에 있는 블로그를 개인 미디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첫째, 각 포털의 약관을 보면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포털사이트는 사용권을 갖는다고 나와 있고 해당 콘텐츠에 대해 자유롭게 포털사이트 내에서 배치할 권리도 갖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콘텐츠에 의해 야기되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블로그 개인 운영자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니홈피 운영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는 포털사이트가 활용하되 그 부채는 미니홈피 운영자가 지라는, 상당히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지금 실제로 포털에서 어떤 식으로 편집하고 있느냐면 네이버의 경우 뉴스 하단에 붐업이라는 난을 통해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올려놓은 대중성있는 콘텐츠를 선별해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3만 명의 시민기자가 끊임없이 기사를 보내는 오마이뉴스는 이를 선별해 메인페이지에 편집을 하는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로 봤을 때 계속 글을 올리는 네이버 블로거들과 이를 붐업에 편집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블로거들이 과연 1인 미디어 운영자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서는 블로그 뉴스란을 만들어서 블로그 운영자들을 등록시키고 블로거들이 쓴 기사를 미디어 다음 뉴스란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나 포털사이트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 카페나 블로그, 그것이 포털사이트 서버 내에 있고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것은 개인미디어가 아니라 각 포털사이트의 회원, 포털사이트와 함께 움직이는 회원 기자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삼아야 포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여타 서비스까지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삼아야

또 검색이라는 부분, 추천검색어, 인기검색어 등을 정해놓고 그 순위를 매겨 그것을 메인에 편집해 둔다는 자체가 사실은 언론사 고유의 의제 설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검색어 순위 부분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면 현재처럼 막대한 피해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정용(네이버 미디어유닛장)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사의 생성과 배포의 책임에 대한 소재를 밝히고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사를 편집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뉴스 입장에서는 법이 생기고 그 부분이 정해지면 분명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규정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의 의도나 내용들을 작성자가 아닌 배포자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삼승 변호사(발표자) : 항상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정정보도라는 제도, 반론보도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를 잘 알면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만든 취지는 그 기사를 쓴 언론사나 배포자인 포털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사를 쓴 사람, 올린 사람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네이버의 입장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올렸다 하더라도 그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입법 취지는 그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기사는 언론사가 썼지만 네이버에 피해구제를 요청했을지라도 네이버는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정보도 등은 네이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 가지는 의문은 언론사와의 계약에 의해 임의로 기사를 손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잘 못한 것입니다. 잘 못 했다는 의미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편집권이 있는데, 즉 언론사로부터의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고 하면 뺄 또는 올리지 않을 권리, 책무, 편집권이 있는데 언론사와의 계약에 의해 그 편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네이버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언론사와 계약을 할 때 포털에게 편집권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언론사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계약을 한 마당에는 비록 포털이 그 중간에 꼈지만 계약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편집권이 포털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계약을 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포털이 취사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의 입법취지는 해당 언론사나 포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피해구제에 있어

한편 변희재 국장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제가 현업에서 생동감있게 블로그나 검색서비스 등을 다루는 분들보다는 감이 떨어지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언론을 정의한 법안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불확정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불확실한 개념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하고 법원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서포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월이 흐르고 발전하면 블로그가 인터넷 언론의 개념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현재의 상황이 이제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봐야 한다는 진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상황이 바뀌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의 능력으로는 블로그나 검색서비스들을 언론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논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로 만약 블로그 등이 언론 개념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취재, 배포, 편집이라는 언론 기능에 맞춰보니 이제는 될 만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추가로 더 넣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뉴스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에 같이

발맞춰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상곤(대전중재부 중재부장) :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뉴스를 제공한 측과 보도를 한 측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보도를 했을 경우 보도한 측에는 책임이 없겠지만 편집 등으로 인해 그 반응이 확대가 됐거나 손해가 확대되는데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가 되면 모두 다 연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면된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포털사이트와 뉴스 제공자 사이에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관련 문제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문제만이 조정 및 중재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차제에 손해배상에 관한 범위, 내부의 책임이나 구상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 내용을 잘 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회사들 간의 구상관계를 조정하는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언론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뉴스의 제공과 뉴스 배포에 관한 손해배상 구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대상으로 포함시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언론기관 간의 손해배상 구상문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및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양식을 매체의 특성에 맞게 좀 더 다양화해야 하지 않나, 피해자의 피해를 좀 더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용(네이버 미디어유닛장) : 양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측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포털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했을 경우 포털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낼 수 있는데, 그러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안 낼 수도 있는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사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적극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라는 등 포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시는데 그동안의 뉘앙스나 논조는 포털이 과도하게 편집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해당 기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삭제도 하고 평가를 해서 검색에도 반영하지 말고 반론보도도 임의대로 하라는 권한을 포털이 갖는 것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양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진행된다면 그렇게 서비스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송영천 부장판사(사회자) : 한 판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방법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방법을 신청인에게 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동황 교수(서울 제5중재부 중재위원) : 포털 저널리즘을 포함해서 인터넷 뉴스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의 저널리스트와의 개념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그것을 언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널리스트로 볼 것인지로 돌아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서 이것이 언론이냐 저널리스트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하신 두 분이 언론이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정의하셨고 그에 비추어 포털사이트가 어떻게 언론의 속성을 갖게 됐는지 명확히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주 속에 포털사이트의 저널리즘으로서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모아져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개념 자체에 대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시켰을 때 전혀 새로운 논란이 나올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취재와 보도 속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쉴드법'이라고 해서 기자가 자신의 취재원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을 권한을 대부분의 주가 보장하고 있고 또 미국의 선거 캠페인 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해 기부행위 등에 대한 비용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에 대해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 연방에서는 연방 쉴드 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 뉴스 미디어를 포함한 블로그에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그것입니다. 당연히 인터넷 미디어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연방선거 캠페인법의 미디어 예외 조항에 대해 인터넷 미디어들이 유권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미디어들이 입후보자에 대해 지지하는 기사를 쓴다든지 인터뷰를 쓴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연방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조항이 있는데 이 안에 인터넷 미디어들도 포함되는지, 인터넷 미디어들이 후보를 지지하는 기사나 해설이나 코멘트나 사설을 실었을 때 당연히 기존 미디어와 같이 그 행위가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의 미디어와 같이 미디어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가 똑같은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적 권한 부분 논의도 이루어져야

저는 미디어의 특권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미디어들이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기존 신문이나 방송들이 언론미디어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러한 특권에 대해 블로그나 포털이나 인터넷 신문들이 과연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널리즘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다면 그런 특권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고 저널리즘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언론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께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거나 법에 준해서 받고 있는 특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인터넷 미디어나 블로그들도 형법상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판례상의 상당한 이유로 기존 미디어와 같은 수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법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들이 갖고 있

는 특권들이 있다면 그에 준해서 인터넷 미디어들이 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삼승 변호사(발표자) : 종래 인쇄된 신문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청구되어서 인용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할 것이냐는 초기에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활자화시켜서 정정이나 반론 문구를 만들어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정이나 반론 문구를 만들어서 개인이 보도해라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며칠 자에 해라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몇 면에 해라, 다음에는 활자의 크기, 제목, 본문은 어떻게 해라라고 정하게 되는 등 그 형식은 상당히 진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TV의 경우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해야 할 경우 TV 뉴스가 원래 보도가 나갔을 때는 화면과 덧붙여서 말로 표현된 것이 나갔는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가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관례가 화면은 나가지 않고 문자나 말로만 정정이나 반론 보도가 나가는 것으로 거의 굳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언론에 관심있는 법률가들이 약간은 노력을 게을리 한 소치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고 원래의 보도가 나간 것이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화면과 같이 보도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구제하기 적절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화면도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 것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하려니까 TV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감이 너무 세고 그래서 약간 양보도 하고 법률가들이나 언론계 종사자들이 자제하거나 움츠러들어서 가장 최소한의 방법인 문자나 말의 형식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할 따름이지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형식 만들어 실효성있는 피해구제 되도록 해야

이와 같은 일이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당연히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의 형식으로 적어서 원래 나갔던 뉴스 검색 사이트의 해당 부분에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넣고,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거기에 네모 칸을 막거나 흔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린박스 제도라고 하는 것 등을 도입해 칸으로 막고 배경색을 그린으로 해서 눈에 띠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팝업의 형식을 빌려 좀 더 눈에 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또 외국의 예들도 찾아서 우리 나름대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 있어서 정말 효과있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의 보도가 피해주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실효성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들의 같은 임무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지우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허위이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운 분야, 즉 인터넷 매체 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법원에서 내린다면 기존의 미디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준(서울신문 인터넷 부장) : 저는 근본적으로 기존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사 사이트의 트래픽이 굉장히 늘 것이라는 그런 전제는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엄격하게 훈련된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예전문 사이트의 1 ~ 2년 훈련받은 기자의 기사와 똑같이 섞여서 취급받는 것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하다면 대립적 개념보다는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기사를 돈을 받고 넘겨주면서 포털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서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는 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과 박 유닛장이 이야기하신 것을 정리하면 정정보도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포털사이트가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 또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게재돼서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제요청을 했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양 변호사님의 말씀이시고 박 유닛장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피해구제라는 것이, 선의적이고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목표이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 작성했던 신문사 지면이나 그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포털사이트까지 공동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내는 것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에 기사 삭제나 수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냐는 박 유닛장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 법이나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딱 맞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사의 담당자와 포털뉴스의 담당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론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간의 상호 보완적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피해구제 부분은 좀 더 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삭제와 수정의 권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포털이 모든 문제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언론사와 포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구(전자신문 국제기획부장) : 오마이뉴스가 초창기 언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당당히 영향력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포털 역시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포털 스스로도 그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포털은 기자 출신들을 영입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포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종이신문 역시 온라인 신문으로 넘어가고 종합 포털로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신문들이 종합 포털로 갈 때 당연히 취재, 편집, 논평 기능을 할 것이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작한 포털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결국 포털이 뉴스를 서비스한다면 종합 포털이라는 차원에서 같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커다란 흐름으로 볼 때 포털 역시 언론중재법 등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영록(전북일보 미디어팀장) : 1주제에서는 인터넷 환경 논의를 통해 포털이 혁명기에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2주제에 왔을 때는 하나의 매체 수단의 변화로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 통신 수단,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2주제에 와서는 이를 단순히 미디어의 수단이 변화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포털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의 변화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여러분들, 열심히 발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또 포털 측의 의견 수렴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정도였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열띤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꼭 나와야 할 얘기는 충분히 나온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분야에서의 인터넷 언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면 인터넷 언론 범위도 확대하고 특히 포털사이트 중에 뉴스 분야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에서 더 나아가 그럼 과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방식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피해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느냐는 이런 문제, 또 기존 언론들에서 공급을 받아 포털뉴스가 취급을 했을 때 포털뉴스와 공급자인 언론 간의 책임의 안배 문제까지,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갔다는 점으로 인해 오늘 상당히 깊이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언론 현업에 계신 분들이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현장 속에서 얻어 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의 일만이 아니라 언론계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참석자분들로 인해 이 자리가, 정말 훌륭한 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호준 서울신문 인터넷뉴스 부장이 네이버 측에서 제기한 책임의 안배 문제, 기사를 공급한 측과 공급된 기사를 쓴 포털뉴스 만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았을 때 이 책임을 안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 때는 당연히 공급자도 공급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물론 그대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은 언론 스스로가 책임의식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토론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 많이 지켜봐주시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고논문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이 봉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 들어가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의미하기에 정치, 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오늘날 매스미디어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강력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보장은 주로 국가권력의 불개입 또는 최소개입의 원칙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면,[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위와 같은 공적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부 언론사들의 무책임하고, 자사 이기주의적인 보도, 막연한 추측성 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2] 한편으로는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인격권 보호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점차 고양되면서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 헌법재판소도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은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매커니즘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참조.

2) 한국언론재단이 2004. 4. 28.부터 같은 해 5. 4.까지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대인면접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2%(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0.6%)로 신뢰한다는 응답 19.5%보다 높았다. 특히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02년도 25.3%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인 반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6.7%에 이르렀다. 한국 언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무책임한 보도태도'가 32.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 28.6%, '언론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태도' 2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2004년에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언론 자유에 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데, 자유롭다는 응답이 41.2%로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 24.8%보다 높게 나왔다. (『신문과 방송』 2004년 7월호 "수용자가 본 2004년의 한국언론 - 신뢰도" 참조).

인격권 중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법규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사전금지청구,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를 들 수 있다.[3]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있는데,[4] 우선 언론보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나, 재산적 손해는 손해 액수의 산정이 곤란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인정된 예[5]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이와 같이 명예훼손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기대하고 비교적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고액의 위자료는 회사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명예훼손 책임의 인정 여부에 못지 않게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도, 지금껏 명예훼손 소송에 관하여는 위법성 조각의 인정근거, 위법성 조각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만이 활발할 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의 문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논의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언론사는 그 상업적 이익의 증대를 위해 센세이셔널한 내용을 보도하려는 속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특히 언론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종보도 또는 낙종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성급하게 보도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끼게 마련인데, 만일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거나, 보도 자체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고, 이와 반대로 법원이 명하는 위자료 액수가 회사경영에 큰 무리가 없고, 오히려 회사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명예훼손 행위를 해서라도 이윤을 추구할 우려가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5. 1. 27.공포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산재되어 있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통합되었고, 한편 위 법률은 종래의 반론보도청구 외에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정보도청구제도'를 신설하였는데, 민법 74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와는 달리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4) 한국언론재단의 2001년도 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언론 관련 명예훼손 소송은 민사소송이 239건(83.3%), 형사소송이 38건(13.2%)이었다고 한다. 민사소송 중에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95건(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정보도청구 42건(17.6%), 반론보도청구 36건(15.1%) 등이라고 한다.

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41, 40642 판결. 이 판결은 피고가 4개의 일간신문에 9차례에 걸쳐 원고의 제품제조과정 및 제조원료에 관하여 허위로 비방광고를 한 사례에서 원고가 대응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은, 텔레비전 뉴스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로 보도를 하면서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명하는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경우, 그 보도로 인하여 제조업자와 그가 제조한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쏟아진 사실 및 그 이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고 배척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액 입증에 있어 법원이 확실성의 원칙을 계속 엄격히 고수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의 배상은 사실상 배제될 것이므로, 재산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확실성의 원칙을 완화하여 피해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은영(2000, 여름)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 통권 75호. p.13).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단순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시키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하였든 가해자인 언론사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고액의 위자료는 '제재적 기능'과 '일반 예방적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의 본질을 종래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만 이해하여 온 통설적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위자료 산정시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과 일반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악성이 강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국내·외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도 그 피해의 치명성, 광역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고, 언론사의 보다 정확한 사실 및 자료 수집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액의 위자료를 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7] 일부 하급심 판결례에서 손해의 전보를 넘어 가해자 측의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 법원이 현재 인용하고 있는 위자료만으로는 보상적 손해배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히 대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언론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보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격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8]

이하에서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명예훼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1심법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경향을 살펴본 다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제재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 및 입법론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외국의 예

가. 독일의 경우[9]

(1) 위자료에 관한 법적 근거

독일에 있어서 위자료제도의 기원은 게르만법상의 "부세"(Busse)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래 "부세"는 민사·형사책임이 미분리된 상태에서 손해전보기능과 복수(復讐)기능을 지닌 제도였지만, 중세에 이르러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함에 따라 양 기능이 분리되고, 그로 인하여 "부세"제도는 점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전보기능을 지닌 위자료 제도가 독립적으로 손해배상법상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지만, 독일의 국민감정은 관념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당시 독일의 지도층도 인격적 이익을

7) 이상경(1992, 봄호),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언론중재」통권42호. p.54~p.55.
8) 2004. 8. 10.자 오마이뉴스 기사, 2004. 9. 2.자 문화일보 기사 참조.
9) 이하의 내용은 김덕태, '위자료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1면 내지 47면; 천종숙, '위자료에 관한 고찰 : 독일법을 중심으로' 효원민법학논집 : 효원 천종숙 교수 정년기념회(95.02) 175면 내지 184면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은 대단히 경멸스러운 일이고, 오로지 고통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이러한 국민정서 등이 반영되어 입법화 된 독일 민법 제253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7조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신체·건강·자유 및 정조의 침해의 경우에, 제1300조에서 약혼의 부당파기의 경우에 각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위자료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지만 1958. 2. 1. 연방대법원이 일반적 인격권 침해는 독일 민법 제847조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하여 이후 널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2)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독일 민법이 시행된 후 위자료의 본질에 관하여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순수한 손해배상으로 판례상 이해되었고, 그 산정에 있어서는 공평의 관점에서 사건의 모든 사정, 특히 가해자 측 과실의 정도, 재산상황도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위자료가 순수한 손해배상으로서의 기능만을 지닌 것이라면 오직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와 범위만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고 가해자 측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일 가해자 측의 사정도 고려된다면 그것은 손해전보의 기능을 초월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관하여 1955. 7. 6. 연방대법원은,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전보를 제공하는 전보적 기능(Ausgleichsfunktion)과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는 만족적 기능(Genugtuungsfunktion)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지닌 하나의 청구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생활침해의 정도 및 범위가 특히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그리고 양당사자의 재산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존재 등도 함께 포함해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자료에는 전보적 기능 이외에 만족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10]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판례의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판결은 비재산적 손해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자로 하여금 금전으로 보상하게 하여 손상된 안락을 금전으로 채워주게 하는 전보기능을 주요 부분으로 하면서도, 2차적으로는 만족기능[11]을 위자료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나아가 위 1955년 판결 이후 독일판례는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해석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의 만족적 기능이 전

10) BGHZ 18, 149.

11) 위자료의 만족 기능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독일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전보기능과 만족기능은 서로 대립하는 기능이 아니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동일청구권의 두 가지 작용방식으로 이해함이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한다. 한편 판례가 말한 만족적 기능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킨다는 사고의 특별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보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의 속죄적 급부(suhneleistung)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형벌적 사고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법학연구 2권(2000.03) 138면 내지 140면; 장재옥, '위자료와 사적제재', 중앙법학 창간호(99.06) 205면, 206면 참조).

보적 기능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기에 이르렀고,[12] 특히 매스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는 신체손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경향[13]이 있어 이 경우는 오히려 위자료의 전보적 기능과는 무관하게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으로 위자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 위자료에 관한 법적 근거

일본민법 제709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이어 동법 제710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와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묻지 않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민법에서는 신체·건강·자유·정조에 대한 침해에 한하여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민법에서는 법규상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본의 판례 역시 사회생활상 수인의 한도를 넘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자 그리고 금전으로 위자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정신적 이익을 상실한 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위자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는가 아니면 일종의 사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통설인 배상설(賠償說)은 위자료를 순수한 손해배상으로 이해한다. 이 학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하고 받는 기쁨이라든가 그 배상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긴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저축의 가능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느끼는 취미, 기호나 생활상의 즐거움 등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잊게 할 수 있다면 금전에 의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가능성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정신적 손해는 금전으로 구체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해석하면서 위자료 산정에 피해자 측 사정 이외에도 가해자 측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 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반해 위자료를 사적 제재로서 해석하는 제재설(制裁說)은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자에게 금전배상을 명하여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자료의 제재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손해, 약해, 산업재해 등의 출현을 감안할 때 불법행위제도는 순수한 개인적 영역을 넘어서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동일한 불법행

12) BGHZ 35, 369.
13) 예컨대, 인신손해의 경우 50마르크 내지 24만 마르크인데 비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600마르크 내지 6만 마르크 정도라고 한다. (김덕태, 전게논문, 116면).

위를 하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행위억제규범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그 수단으로서 가해자가 다시는 동일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위자료의 실질은 손해배상의 색채를 띤 사적 형벌이고 그 금액은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장래 동종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위자료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한 위자료를 제재적 기능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책임무능력자・사용자・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공작물의 소유자・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채무불이행자에게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을 긍정할 수 있는 지에도 의문이 있다.

일본의 판례는 대체로 배상설(賠償說)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4)]

다만,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매우 유연한 태도를 취하여 위자료의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제반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 예컨대 가해자의 자산상태,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그 외 불법행위의 동기, 가해의 상황,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판결이유에서 당해 사정을 참작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액수를 포괄적으로 판시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한다.

(3)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실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차 대전 후 20년 간은 10만 엔 이하였고, 1980년대까지는 평균 50만 엔이었다가,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 평균은 150만 엔에 불과하고 100만 엔 이하의 손해배상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5)]

나. 영・미의 경우

(1) 위자료의 인정 대상[16)]

영미법계에서의 위자료는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일단 구별하고 있지만, 양자를 포괄하여 손해배상(damages)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자료의 내용으로서는 '육체적・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위자료"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근래에

14)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99.) 117면 참조; 장재옥, 전게논문, 199면 이하에서 일본의 판례가 잘 소개되어 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징벌적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고 한다. 즉 건축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 건설회사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을 면하는 것이 화해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화해계약을 위반한 사건에서 경도지방재판소는 '…원고들의 고심과 노력의 결과,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소음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한 이 사건 화해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고의로 감히 행한 이 사건에서는,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견되는 구체적인 소음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위반 자체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내지 제재적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경도지재 1989. 2. 27. 판결, 판례시보 제1322호, 125면 이하.

15) 허만, 전게논문, 117면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잘 소개되어 있다.

16) 자세한 내용은 김덕태, 전게논문 78면 내지 102면 참조

들어와서 영국에서는 '육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명(餘命)에 대한 기대의 상실(loss of expectation of life)' 또는 '쾌적하게 살아갈 이익에 대한 상실(loss of amenities)'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족 공동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상실(loss of consortium)' 등 직접적인 고통 이외의 생활의 즐거움을 상실한 데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구체적인 손해항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소장에서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위자료액의 산정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미국의 경우 위자료의 산정은 배심의 평결에 대폭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2) 위자료의 법적 성격

영·미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의 위자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아무래도 영·미법에 있어서는 대륙법과는 달리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을 정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존재가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다만, 영국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로부터 얻어질 이익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보적 손해배상을 공제하고도 이득이라는 계산 하에 불법행위를 감행한 경우, 공무원이 억압적,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경우, 제정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해,[17] 미국에서는 그 적용영역이 다방면으로 확장되어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널리 인정되고 있고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사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관[18]

(가)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의 권리 내지 법익 침해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심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한편으로는 심한 고의에 기한 가해자를 응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해자 내지 다른 사람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만족을 의미하는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지우는 또 다른 손해배상을 말한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태, 동기나 그 밖의 주관적 사정, 재산상태 등의 가해자 측의 사정을 주로 고려한 다음, 실제 발행한 손해액에 더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의 틀 안에서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배상금을 취득하지만 그 성질 및 기능에 있어서는 제재적인 측면이 전면에 서는 사적 제재 성격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 및 목적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 번째 기능은 주로 위법행위의 처벌과 억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17) 윤정환, '징벌적손해배상의 합헌성' 현대법학의 제문제, 이재 이종상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94.12) 245면 참조.
18) 이하의 내용은 주로 김용대,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 1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처벌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형벌이 갖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며 또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벌금과도 구별된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보상적 손해배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전보적 기능이 있다고 한다. 즉 미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록 승소한 경우라도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 보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실제 소송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을 얻게된다는 것도 전보적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 밖에 사회평화의 유지, 민사법의 실효성 강화 등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

(다)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의 조건과 사건 유형

전보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사회가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심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불법행위로는 폭행(assault and battery), 명예훼손(defamation: libel and slander), 사기(deceit), 부녀유괴(seduction), 애정이전(alienation of affection), 악의소추(malicious prosecution), 불법침해(trepass), 사적안온방해(private nuisance), 횡령(conversion) 등이 있고, 근래에는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과 관련하여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자주 인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라)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가의 판단은 법률판단으로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사실심 법관이 결정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 부과 여부 및 그 산정은 사실문제로서 배심원이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 액수는 가해자의 이익과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회의 이익이 조화되는 선에서 결정되므로 보통 행위에 따른 결과의 정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가해자가 의도하였던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전보적 손해배상의 액수, 소송비용, 형사책임의 가능성, 동일한 소송의 반복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비판 및 위헌성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준별이라는 근대법의 대원칙에서 볼 때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응징과 억제는 형사법의 목적이므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에 국한되어야 하고, 더욱이 현재에는 정비된 형사법에 의한 악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형사법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가해자를 이중의 처벌이라는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형사법이 충분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 예컨대, 가해자가 법인이어서 자유형이 불가능하거나, 법정 최고액의 벌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여전히 효과적인 억제의 기능을 발휘하고, 이중의 처벌 위험에 방치된다고 하나 헌법의 취지는 동일범에 관

하여 2중의 형사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는 위와 같은 이론상의 문제보다는 소송실무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배심원들이 때때로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고액의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사실심 법관 및 항소심이 배심원의 결정에 아무런 합리적 통제를 가하지 않는 경우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을 도산시키거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것과 같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이다. 실제로 근래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거에 비해 그 인정되는 사례의 수뿐만 아니라 그 배상액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19] 배심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한도 없고 기준도 없다는 점이 공격받고 있고, 특히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과다한 벌금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8조[20] 또는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21]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 또는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판례법상 이미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고 주류적인 태도 역시 이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심원이 가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관한 논의로 관심의 초점이 모이고 있는데,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배심원의 권한을 박탈 또는 제한하거나, 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미연방대법원은 1989년 Browning-Ferris Industries v. Kelko Disposal 판결[22]에서 수정헌법 제8조는 사인간의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면서,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무런 제한 없이 배심원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그 후, 1996년 BMW of North America Inc. v. Ira Gore, Jr.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기하여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앨라배마주 대법원판결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23][24]

(4)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19) 장재옥, 전게논문, 188면 내지 191면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만, 김용대, 전게논문, 40면에 의하면, 사실은 해당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총 사건의 약 1 내지 7%에 대하여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고 있을 따름이고, 배심원이 인정하는 액수도 통상 5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20)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벌금을 과하지 못한다(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21)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22) 492 U.S 257(1989)

23)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은 조상희,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앨러배마주 대법원판결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인권과 정의 제42호(1996. 10.) 119면 내지 121면 참고.

24) 그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에 관하여는, 장재옥,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에 관한 미연방대법원판결 소고' 강원법학 제4권; 송흥섭,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관, 재판자료 제58집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명예훼손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분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미연방대법원은 과대하고 치명적인 손해배상 위험으로 인한 언론의 위축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판결[25]에서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하여는 그 표현 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ity)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은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 후 1967년에는 Curtis Pub-lishing Co. v. Butts판결[26]에서 현실적 악의의 이론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1974년 Gerts v. Roberts Welch Inc.판결[27]에서는 사인의 경우 이른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8]

위 New York Times 판결 이후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미국의 명예훼손법에 대하여는 현재 많은 비판과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한다. 이는 명예훼손법 자체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언론사 측의 승소율이 압도적이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승소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배심이 엄청난 징벌적 배상액을 안겨줌으로써 피고 측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치명적인 배상액의 가능성만으로도 언론의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특히 소규모 언론매체의 경우에는 소송제기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도 도산의 우려가 있어 공동체에서 소송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하여는 적대적인 보도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존재는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노린 원고들의 남소를 조장하여 언론사들로 하여금 비록 패소가능성은 적을 지라도 많은 변호사비용과 시간을 들여 응소를 하도록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29]

3. 우리나라의 위자료 제도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가. 위자료에 관한 법적 근거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 이외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5) 376 U.S. 254(1964)
26) 388 U.S. 130(1967)
27) 418 U.S. 323(1974)
28) 다만, 이러한 제한은 사인의 공공문제에 관하여만 적용될 뿐, 사적인 문제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1985)
29) 미국의 명예훼손법상의 개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광범, '미국 명예훼손법과 그 개혁론',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2000), 40면 이하 참조.

나.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및 학설상의 논의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일본에서와 같이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배상설(賠償說)과 제재설(制裁說)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30] 다만, 판례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는 본래 이를 금전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감정 기타의 증거방법에 의하여 그 수액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 등에 기속됨이 없이 피해자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재산정도, 악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위자료액을 확정할 수 있고[31], 판결이유에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32],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하여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자료에는 전보적 기능 이외에도 소위 '보완적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33]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통설적인 입장인 배상설(賠償說)은 위자료를 순수한 손해배상으로 보는 전제에서 정신적 손해는 그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배상금을 받는 것 또는 이를 점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이라든가, 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의 입수, 저축의 가능성, 긴급한 의무의 이행가능 등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상의 위안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면 그 한도에서 금전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정신적 손해의 이와 같은 배상가능성을 승인하려면 금전의 만족적 기능이 긍정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금전의 만족적 기능은 승인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고 한다.[34]

---

30) 다만, 전체적으로 보아 판례가 기본적으로 배상설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고, 실무에서도 판례를 배상설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경, 전게논문, 53면, 허만, 전게논문, 120면, 특히 김선석, '위자료의 산정과 그 기준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21집 (84.06) 84면에서는 판례가 위자료청구권을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 및 양도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한다.

31) 가해자 측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로는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판결 참조, 특히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에서는 비방광고로 인하여 인격과 명예 등이 훼손된 경우 가해자 측의 사정으로 비방광고 형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비방광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32) 대법원 1956.3.3. 선고 4288민상529 판결.

33)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34)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판 822면, 다만 곽윤직 교수는 금전의 만족적 기능으로 배상가능성을 논하고 있는데, 독일연방대법원이 위자료의 이중적 기능으로 들고 있는 만족기능과는 그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인다. 즉 금전의 만족적 기능과 위자료의 만족적 기능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 측의 제 사정까지 참작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액이 공평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정신적 손해의 내용인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적 이익의 상실은 가해자 측의 사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공평타당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거나,[35]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위자료액이 많아지겠지만 이는 가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액수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나,[36] 가해자 측 사정의 고려로 인해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을 일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기능 내지 작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37]

이에 대하여 소수설인 제재설(制裁說)은 통설인 배상설(賠償說)이 전통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학설인 차액설(差額說)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차액설(差額說)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유아나 정신장애인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한다.[38] 또한, 판례가 위자료액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사정 이외에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고려하고 있고,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39] 더 나아가 우리 판례가 가해자의 재산정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는 이상 우리나라의 위자료에는 단적으로 손해의 전보 이상의 제재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40]

또한, 위자료에 제재적 기능을 긍정하는 실제적 논거로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에 대하여 아직 형법적 보호가 없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과잉입법을 피하고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에 제재적 요소를 인정하면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면서도 인격권의 보호가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전과범으로 취급되지도 않으며, 위자료는 형벌로서의 벌금처럼 국가에 귀속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사적 제재로 본다고 하여 이중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일반대기업이나 언론기업 등은 영리를 추구하는 나머지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예상하면서도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적 제재로서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되면 대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41]

35) 김선석, 전게논문, 82면.
36) 김증한·안이준, 신채권각론 841면.
37) 서광민, 전게논문 140면.
38)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1982), 447-448면;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1990), 193면.
39) 이은영, 민법학강의(박영사 1995), 968면.
40) 이명갑, '제재적 위자료의 입론(3)', 사법행정(1987, 5,) 28면.
41) 이명갑 변호사는 손해의 공평분담을 이념으로 하는 과거의 불법행위법은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사회에서는 존립의 기초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자료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행하는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적 재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명갑, '제재적 위자료의 입론 (2)', 사법행정 통권 315호(1987) 51면.

다.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1) 산정시 고려할 요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도 다른 경우의 위자료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그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 측 사정, 가해자 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①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여부,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주간·월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그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곤란성의 정도 ② 피해자 측 사정으로,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③ 가해자 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④ 보도 이후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 판결에서 원상회복처분을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 수 있다.[42]

(2) 1심 법원의 위자료 산정 경향

(가) 1990년도 초반까지 우리나라 판례상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43] 그 후 사죄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44]을 계기로 점차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어 1990년 후반까지 위자료의 평균적 액수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45] 몇몇 사례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가 명해지는 경우도 있었다.[46]

(나) 2000년 이후의 언론사 또는 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전담재판부인 민사 25부, 민사 26부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명한 건수, 원고의 청구금액, 실제 인용된 금액,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을 보면 〈표 1〉과 같다.[47]

한편, 검사, 군법무관, 전현직 고위 공직자(군장성,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 유명 앵커, 언론사, 학교법인, 대학교수, 종교인, 종교단체, 정당 등 원고를 공인으로

42) 허만, 전게논문, 120면, 121면 참조.
43) 한위수, "명예훼손과 민사상의 제 문제" 사법논집 제24집(법원행정처,1993) 439면 참조.
44) 헌법재판소 1991.4.1.선고 89헌마160 결정.
45) 허만, 전게논문, 121면.
46) 대표적으로, 피고 파스퇴르분유 주식회사가 4개의 유력 일간신문에 9차례에 걸쳐 원고 남양분유의 제품제조과정 및 제조원료에 관하여 허위로 비방광고를 한 사안에서, 인격·명예·신용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3억 원(대법원 1996.4.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한약업사들이 정치자금으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에게 1억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하여 4억 원의 위자료(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1.26. 선고 94가합5021 판결), 피의자를 동료검사의 처남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 1억원(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호 판결)
47) 다만, 수인의 피해자가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배상을 명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합한 금액이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로 볼 여지도 있으나, 여기서는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많은 액수가 인용된 원고만을 기준으로, 여러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명한 경우에도 가장 많은 액수가 인용된 피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제시되는 통계는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볼 수 있는 경우[48]만을 분리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변호사[49], 세무공무원[50],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병리과장, 군인[51], 기타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사인 등과 같이 원고를 공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표 3〉과 같다.

위 통계들을 보면, 2000년 이후에는 1990년대에 비해 위자료액수가 다소 하향화되고 있거나, 적어도

〈표 1〉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까지)	합 계
인용된 건수		15	12	10	13	8	58
청구금액(원)	합계액	4,350,700,100	2,460,000,000	3,450,000,000	3,610,000,000	2,110,000,000	15,980,700,100
	평 균	290,046,673	205,000,000	345,000,000	277,692,307	263,750,000	275,529,312
인용금액(원)	합계액	583,000,000	233,000,000	122,000,000	287,000,000	138,500,000	1,363,500,000
	평 균	38,866,666	19,416,666	12,200,000	22,076,923	17,312,500	23,508,620
인 용 률		13.4%	9.4%	3.5%	7.9%	6.5%	8.5%

〈표 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까지)	합 계
인용된 건수		9	5	7	9	5	35
청구금액(원)	합계액	4,190,000,000	1,760,000,000	3,200,000,000	3,050,000,000	1,700,000,000	13,900,000,000
	평 균	465,555,555	352,000,000	457,142,857	338,888,888	340,000,000	397,142.857
인용금액(원)	합계액	320,000,000	137,000,000	110,000,000	225,000,000	110,000,000	902,000,000
	평 균	35,555,555	27,400,000	15,714,285	25,000,000	22,000,000	25,771,428
인 용 률		7.6%	7.7%	3.4%	7.3%	6.4%	6.4%

48) 공인의 개념과 그 범위는 명확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공직자와 공직자가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공인과 사인의 구별기준으로는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01) 137면 내지 162면을 참조하였다.

49) 미연방대법원은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선임된 변호사는 그 선임사실만으로 공적인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0) 서울중앙지법 2001. 7. 4. 선고 99가합53594호, 2004. 6. 30. 선고 2004가합7045호 판결에서 세무공무원의 공인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51) 서울중앙지법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호 판결.

〈표 3〉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까지)	합 계
인용된 건수		6	7	3	4	3	23
청구금액(원)	합계액	1,600,700,100	700,000,000	250,000,000	560,000,000	500,000,000	3,610,700,100
	평 균	266,783,350	100,000,000	83,333,333	140,000,000	166,666,666	156,986,960
인용금액(원)	합계액	263,000,000	96,000,000	12,000,000	62,000,000	28,500,000	461,500,000
	평 균	43,833,333	13,714,285	4,000,000	15,500,000	9,500,000	20,065,217
인 용 률		18.3%	13.7%	4.8%	11.0%	5.7%	12.7%

1990년대보다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는 상급심에서 파기 또는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금액을 보면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기대하고 비교적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금액 또한 평균 3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액이지만,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인용되는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액에 대비해 높은 비율의 금액이 인용된다는 점[52]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위자료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음도 고려해야겠지만, 법원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또한, 원고가 공인인 경우 사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금액이 훨씬 많지만, 그에 비해 인용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원고가 고위 공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만을 받아들이고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53]

한편, 하급심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하고 있는 요소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해당사건의 제반 요소, 즉 피해자 측의 사정은 물론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호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동료검사의 처남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도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 1억 원의 위자료를 명하면서, 이 사건 방송이 법 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한 검사, 기타 법조인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왜곡된 판단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우리 사회에 공직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 준 데

52) 이시윤,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에 관한 통계적 분석, 재판자료 5집 (80.05) 참조.
53) 서울지법 2000. 12. 27. 선고 2000가합16898호 판결, 특히 원고가 언론사임을 이유로 정정보도만을 인용하고 위자료를 기각한 사례로는 서울지법 2002. 4. 10. 선고 2001가합 18051호 판결 참고.

일조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이후 검사 또는 변호사가 제기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공직 사회 또는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 준 점을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를 삼은 사례들이 발견된다.[54] 이는 법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제재적 또는 일방 예방적 기능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의 제재적 기능의 고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배상설(賠償說)과 제재설(制裁說)의 대립(對立)이 있지만, 두 학설 모두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사정 외에도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 특히 가해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나 가해자 측의 재산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악성이 강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명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학설·판례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법관이 민사상의 불법행위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태양, 피침해 법익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널리 허용되고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만일 이를 긍정한다면 위자료 산정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일반 예방을 위한 목적까지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보다 솔직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배상설(賠償說)의 입장은 가해자의 행위태양, 피침해 법익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형사법의 영역의 문제일 뿐, 민사법에서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의 회복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법이 불비한 영역, 형사법이 행위규범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 또는 형사적 제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영역 등에 있어서는 민사법이 사회적 제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필요성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지르는 악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있어서는 형사적 제재가 곤란하고, 설령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인 가해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일 벌금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형사적 제재는 아무런 제재적, 예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고액의 손해배상금만이 효과적으로 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많은 비판에도 여전히 그 지위가 확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으로,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니는 이러한 제재적 효과를 위자료 제도에 도입하여 그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도 우리 법체계상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영역에서는 그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위자료

54)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60 판결, 2000. 6. 21. 선고 2000가합1377 판결, 2002. 7. 26. 선고 2001가합65620 판결 등 참조.

의 제재적 기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벌권에 기한 언론사의 처벌은 국가권력의 불개입 또는 최소개입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설령 형사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인인 언론사에 대한 벌금형만으로는 행위 억지의 효력을 제대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실제 피해자들도 형사고소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55]

더욱이 대법원은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56],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57]을 잇달아 내놓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비추어 볼 때 공인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사의 책임을 묻기는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하여도 좋을만큼 폭넓은 자유를 누리게 된 만큼 그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막강한 언론에 의하여 잘못된 보도가 이루어지면 그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인격권 보호와의 균형상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고액화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면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독일의 경우 위자료의 만족적 기능을 인정하면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만족적 기능이 전보적 기능에 우선하여 고려되어 신체손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학설상 위자료에 법적 성격에 관한 제재설의 입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여론 -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는 기능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55) 1990년대 이후 위자료가 고액화 된 이유 중에는 법원 외에는 언론의 횡포를 견제할 국기기관이 없다는 법조계 내의 공감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허만, 전게 논문, 129면 참조.

5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57)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한 판결로는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참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기업활동의 위축, 특히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많으나, 역설적이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기업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언론의 자유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폐단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배심원의 자의적인 배상액 결정에 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해 위자료액이 산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폐단을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의 위자료는 법관이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재량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관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특히 사실심 법관은 고액의 위자료를 명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산정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왜 자신에게 명하여진 손해배상액이 그토록 많은지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입법과정에서 제재적 손해배상액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2배 내지 3배를 한도로 허용한다면,[58]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위자료 산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판결이유에서 보상적 손해배상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변론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그 책임 범위에 관하여도 충분히 입증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판결 이후에는 판결에 대한 승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판단의 자료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고액의 위자료가 명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보상적 손해배상액으로 인용되는 액수는 평균적으로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제재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를 언론사의 악의적인 허위보도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재적 손해배상액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2배 내지 3배를 한도로만 허용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었다는 점이 충실히 심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전혀 뜻하지 않은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일부 나타나는 폐단만을 생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기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특성화하여 개별법의 형식으로 입법화하되, 징벌적 손해를 명하는 경우를 명백히 하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기업활동 또는 언론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그로 인한 피해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58)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2 내지 3배수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위원 김인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방안 보고서, 참조.

연구논문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검토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Ⅰ. 들어가며

1. 검토의 배경

뉴욕타임스의 기자였던 쥬디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올 7월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될 때만 해도 그녀의 이름은 '언론의 자유'를 상징했다. 밀러 기자가 수감되던 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타임스와 직원들에게 자랑스럽고도 가슴 아픈 순간이다.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대신, 징역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썼다고 한다.[1)]

밀러 기자의 구속 수감은 우리나라의 일이 아닌 다른 나라, 그것도 우리와는 법체계가 다르다면 아주 다를 수도 있는 미국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언론계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밀러 기자에 대한 미국 법원의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 언론계의 반응은 우리 언론을 통해 상세히 타전되었으며, 밀러 기자가 구속된 지난 7월 6일 직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밀러 기자의 수감 소식을 보도하며 한 목소리로 우려와 근심을 표명했다. 이처럼 밀러 기자 사건에 대해 우리 언론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무엇에서 기인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의 취재원 보호에 따른 실정법과의 충돌 문제가 우리 언론이 부담으로 안고 있는 당면 과제이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고민이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이상호 MBC 기자의 'X 파일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멀게는 2003년 8월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검이 SBS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른 논란은 지금도 거듭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2. 검토의 방향 설정

1) 한국일보 2005. 11. 8.자. 편집국에서, '알기 쉬운 언론의 자유'.

그렇다면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할까?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시각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자의 '윤리'와 이를 이해하고 허용하려 들기보다는 제재하고 처벌하려는 '실정법' 위반의 충돌로 보는 것[2]이었다. 다시 말해, 윤리적이지 못한 우리 실정법에 대한 비판이거나 기자 윤리에 친절하지 않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실정법상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가지는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며 취재원은 오직 기자의 높은 윤리의식으로서만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시각에는 우리 실정법 속에 취재원 공개 거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가지는 법적 지위가 지금과 비교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는 듯하다. 실제 우리는 한때 부족하나마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를 뒷받침하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언론기본법[3]에 기자의 진술거부권 및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에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일부 악법조항이 문제가 돼 위 법률은 폐지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들 취재원 보호에 관한 조항들도 사라지고 말았다.

위와 같은 기대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방패법'과 같은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를 근거지울 만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를 온전치 못한 실정법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에 앞서 현행 실정법 하에서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한 기자는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불이익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4] 밀러 기자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시킬 만한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현행 실정법 하에서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며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취재원 공개 거부에 관한 규정을 입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까지도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취재원 공개 거부권에 관한 입법적 논의의 실익이 어디까지인지도 살펴볼 수 있겠다.

Ⅱ. 취재원 공개 거부의 필요성 · 개념 및 그 구체적인 유형

1. 취재원 공개 거부의 필요성

기자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 사회의

2) 유의선(2003), 취재원보호의 적정 범주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방송학보」, 통권 17-4호. p.79.

3) 제8조(취재원의 보호) ① 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 다만, 기자 등 언론인이 그 공표를 이유로 처벌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2.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로 공표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
3.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가 공표내용에 비추어 사회안전법 제2조 각호가 규정하는 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한 때.
② 진술거부권이 있는 자가 보관하는 자료는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를 수사하거나 공표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4) 이 점에 대해서는 Ⅲ의 1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문제점들을 취재하여 세상에 알릴 수 없다. 기자가 직접 사실을 발굴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5]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만 기사를 쓰기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기자는 소위 취재원이라는 제3자의 제보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린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다. 즉,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는 곧 기자의 취재활동과 직결되어 있다.[7] 모든 정보를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기자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취재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취재활동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다. 취재원으로부터 긴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는 당연히 취재원의 신분 보호를 약속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취재원들이 아니고서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자신의 정보를 꺼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취재원의 보호 내지 공개 거부는 취재의 자유와 무관하지 않으며,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2. 취재원 공개 거부의 개념

가. 개념에 대한 정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취재원 공개 거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취재원 공개 거부'라 함은 기자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원 및 그 제보 경위 등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먼저, 취재원 공개 거부의 대상인 '제3자'는 기자와의 내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인 제3자는 기자에게 신원 등의 공개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며, 기자는 이러한 의사를 수락했어야 한다. 만약, 취재원이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어도 좋다고 허락했다면 취재원 공개 거부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자와 취재원 간의 공개 거부에 대한 의사합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재원 공개 거부권은 취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당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민·형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을 요구당할 수도 있고, 타인의 수사절차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어떠한 절차와 과정에서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당하든지 그 모든 요구를 거부하려는 행위를 취재원 공개 거부라고 할 것이다.[6]

이 외에도 취재원 공개 거부의 개념과 관련해서 권리의 주체 범위라든가, 공개 거부의 대상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7], 이들 쟁점은 이 글이 주

5) 유의선(2003), 앞의 책. p.77.

6) 그러나 취재원 공개 거부권에 대한 위와 같은 개념 규정은 아직 유동적이고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에 앞서 '취재원 공개 거부권'이라는 용어조차 검증된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취재원 공개 거부권이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실무상 취재원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할 용어가 없다고 본다.

7) 이에 대해서는 임병국(2005), 『언론법제와 보도』(개정3판), 서울:나남사. p.208.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된 초점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에 다음 기회로 그 검토를 미룬다.

나. 취재원 묵비·취재원 비닉과의 구별

'취재원 공개 거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할 때 먼저 정리되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취재원 묵비(默秘)'와 '취재원 비닉(秘匿)'이 그것이다. 현재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지만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1) 취재원 묵비와 취재원 비닉

취재원 묵비(默秘)는 그야말로 취재원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것,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취재원 비닉(秘匿)은 취재원에 대해서 묵비하고 은닉하는 것, 다시 말해 침묵하고 감추는 것을 말한다. 침묵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감추는 것이니 취재원 묵비와 취재원 비닉은 한 글자 차이일 뿐 동의어일 수도 있으나, 학자들 중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고자 시도해본다면, 취재원 묵비는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고 취재원 비닉은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에 더하여 물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취재원을 감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취재원 비닉은 취재원 묵비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2) 취재원 공개 거부와 취재원 비닉·묵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취재원 묵비보다는 취재원 비닉이 취재원 공개 거부의 개념과 가깝다. 그러나 취재원 공개 거부는 취재원 비닉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을 취재원 비닉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념적으로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기자의 행위가 취재원 비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다든가, 물적 형태의 취재원을 은닉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취재원 공개 거부의 취재원 묵비와의 구별은 취재원 비닉과의 구별보다는 좀 더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취재원 묵비의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현재 학자들 중에는 취재원 묵비권을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취재원에 대한 진술 거부권으로 보는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개념 정의조차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취재원 묵비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거의 대부분 기자가 타인의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취재원 묵비권은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권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재원에 대한 진술 거부에는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 이외에도 수사절차상 참고인으로서의 진술 거부와 민사상 피고 내지는 형사상 피고인으로서 취재원에 대한 입증을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취재원 묵비권은 오직 기자가 타인의 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강요당하는 상황 하에 그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권리(증언거부권)를 가리키는 의미로만 사용하기로 한다.[8)]

8) 개인적으로 증언 이외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를 취재원 묵비권이라는 용어로 다루는 것은 개념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3) 정리

요컨대, 취재원 묵비는 취재원에 대한 기자의 증언거부라고 할 수 있다. 취재원 공개 거부권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 증언 거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재원 묵비권은 '좁은 의미에서의 취재원 공개 거부권'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또, 취재원 비닉은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와 물적 형태의 취재원을 은닉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주로 사용되어질 취재원 공개 거부는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와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은닉을 포함하여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3. 취재원 공개 거부의 유형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를 의미하는 취재원 묵비에 비해 취재원 공개 거부란 취재원의 보호가 문제되는 모든 절차와 영역을 포괄할 정도로 매우 넓은 개념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말하자면, 어떠한 경우에든지 기자가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모든 영역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다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기자가 다른 사람의 소송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경우라든가, 수사절차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경우라든가, 기자 자신이 피소당해 패소를 면하고자 취재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취재원 공개가 문제되는 모든 상황 하에서의 기자의 항변권을 근거지우는 권리로서 '취재원 공개 거부' 내지는 '취재원 공개 거부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재원 공개 거부의 개념을 고려할 때 취재원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첫째,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요구당하는 경우이다. 이 때 취재원 공개 거부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취재원 묵비권의 유무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기자가 수사절차상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요구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차지하는 일반적인 지위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자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관건은 '입증책임의 소재'이다. 입증책임의 원칙상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자 자신이 쓴 기사의 공공성과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해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에서 기자가 소유·소지하고 있는 취재원 관련 물적 증거를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취재원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녹음테이프라든가, 취재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취재수첩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각각의 유형별 기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각 유형별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기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1. 타인의 소송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

맨 먼저, 기자가 타인의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과연 이런 상황에

서 기자는 취재원의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증언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떠할 것인가?

가. 기자와 증인의무

민사소송절차이든지 형사소송절차이든지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민소법 제303조, 형소법 제146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증인으로서 법원의 신문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를 진다.[9)]

그러므로 기자는 법원에 의해서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출석의무). 또한, 증언에 앞서 양심에 좇아 진실만을 진술할 것을 선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선서의무). 선서를 마친 증인은 소송당사자들[10)]의 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부의 신문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진술의무).

나. 증인의무 불응에 따른 제재조치

위와 같은 세 가지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절차법에 의거 몇 가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소송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 민사소송상의 제재

민사법원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다(민소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비하여 구인(拘引)제도(민소법 제312조)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법정에의 출석 자체를 회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설령 취재원 공개 거부권이 인정될지라도 그것이 법정에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원칙적으로 증언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할 의무를 진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민소법 제326조, 제318조). 이때에도 역시 취재원 공개 거부권을 이유로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서를 마친 증인은 이제 당사자나 재판부의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소법 제314조와 제3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증인에게는 신문사항에 대해서 증언할 의무만 있을 뿐 침묵할 권리는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민소법 제318조). 특히,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형법 제152조).

(2) 형사소송상의 제재

형사소송상의 제재조치 또한 민사소송상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9) 이시윤(2005), 『신민사소송법』 (제2판), 서울:박영사. p.409.
10)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될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될 것이다.

먼저, 형사소송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과는 달리 감치를 명할 수 없다. 과태료 역시 민사소송에서는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50만 원이 최고다(형소법 제151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역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같은 법 제161조).

(3) 정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감치처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과태료 역시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소액이라는 점을 빼고는 양 절차법상의 증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증언거부행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소송법이 기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이란 '과태료'뿐이다.

다.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한 증언 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정법 규정상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한 기자의 증언거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르면, 증인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책에 있거나 있었으면 그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항 제1호). 또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이 중에서 기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큰 조항은 민소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이다. 물론, 기자에게 있어 취재원의 신원 등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여 같은 항 제1호 전단의 적용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은 모두 법령에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다.[11] 현재 기자의 취재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이나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이다.[12] 이와 같은 윤리강령 내지 실천요강 상의 취재원 보호의무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의무일 뿐 법령상의 비밀준수의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자에게 해당 규정(민소법 제315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는 것은 해석상 불가하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자에게 있어 취재원이 위 규정 제2호상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이다. 현재까지 우리 판결 중에 이 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 예는 없는 듯하다.[13] 학계에서는 이 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민사소송법학자들[14] 및 언론법학자들[15]은 대체로 긍정

11) 민소법 제315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열거된 자들을 보면 변호사(변호사법 제26조)·변리사(변리사법 제21조)·공증인(공증인법 제5조)·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0조)·세무사(세무사법 제11조)·의료인(의료법 제19조)·약사(약사법 제72조의 8) 등인데 이들은 모두 법률에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개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12)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7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제5항에는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는 '신문기사에 관하여 그 기자는 그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한다(일·최고결 1980. 3. 9. 조일신문; 현암사 소법전(2004년판), 1343면). 또, 독일민사소송법 제383조 제5항은 신문방송기자에게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이시윤, 앞의 책, p.412.).

14) 정동윤(2005), 『민사소송법』, 서울:법문사. p.535; 장현중(2004), 『민사소송법』(제6판), 서울:박영사. p.555.; 이시윤(2005), 앞의 책 p.412.

15) 임병국(2005), 앞의 책. p.213.; 성낙인(1998), 『언론정보법』, p.116.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헌법학자들[16]은 문제점만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7] 긍정하는 입장에서 주로 내세우는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 내지 취재의 자유를 위해서는 취재원의 비밀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 주체 여하를 불문하는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라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취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18]도 있다.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소송절차를 통한 진실 발견의 중요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부정적인 결론만 내린 채 왜 그러한지 별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도 많아 아쉬움이 있다.[19]

개인적으로, 취재원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상의 '직업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20] 기자라는 직업상 취재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될 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적인 민사소송의 목적은 진실 발견에 있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며 개인의 권리를 확정하는 데에 있다.[21] 이러한 절차에서 기자에게 원칙적으로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은 결코 타당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예외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취재원이 공개를 허용했다거나 취재원 입수 과정에 기자 자신이나 타인의 위법 내지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증언거부 요청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어떠한가. 형사소송절차상 증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민사소송법 제315조와는 달리 증언거부의 가능성을 더욱 좁히고 있다. 위 규정은 증언거부권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 열거의 성격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22] 왜냐하면 형사사법의 목적을 희생하면까지 그 업무의 보호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23] 그렇다면, 위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단지 업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24]

라.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

타인의 소송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기자의 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법정모독죄로 구속된 밀러 기자의 경우와 같이 우

16) 권영성(2002),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p.474.; 전광석(2005), 『한국헌법론』, 서울:법문사. p.253.; 김철수(2005), 『헌법학개론』(제17전정신판), 서울:박영사. p.720.; 구병삭(1996), 『신헌법원론』(제3전정판), 서울:박영사. p.483.

17) 취재원의 보호에 다소 소극적인 듯한 다른 헌법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허영 교수는 취재의 자유에 취재원 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신정10판), 서울:박영사. p.662.).

18) 성낙인(1998), 앞의 책. p.116.

19) 권영성 교수·전광석 교수는 별 다른 근거를 제시함 없이 취재원 묵비권 내지 비닉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병삭 교수는 취재원 비닉권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최근에는 제반 사정을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씀으로써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 윤재윤·함석천(2005), 『언론분쟁과 법』. 서울:청림. p.221, p.224.

21) 윤재윤·함석천(2005), 앞의 책, p.224.

22) 이재상(2003), 『형사소송법』(제6판), 서울:박영사. p.425.; 신동윤(2005), 『형사소송법』(제3판), 서울:법문사. p.634.; 백형구(1985. 7.), 증인의 권리와 의무. 「월간고시」. p.40.

23) 이재상(2003), 앞의 책, p.425.

24) 윤재윤·함석천(2005), 앞의 책. p.221, p.224.

리의 경우에도 증언 거부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법정모욕죄와 위증죄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정모욕죄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소동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증인의 증언거부가 위 법 소정의 '모욕'에 해당되겠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증인의 선서거부나 증언거부도 모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25]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절차법에 정해진 제재를 받을 뿐 위 법 소정의 모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26]

그러므로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기자가 우리 형법상 법정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것이다.

(2)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인의 위증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판례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허위의 진술로 보고 있다.[27] 따라서 증인은 자신이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에 따라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

진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28] 따라서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표정에 의한 진술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진술거부의 경우는 증언거부에 따른 절차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단순 증언거부를 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기자가 당사자들이나 재판부의 신문에 "모른다" "아니다"라는 식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위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마. 소 결

결국, 타인의 소송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기자는 일차적으로 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도 민사소송절차상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증언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위증죄의 성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답변의 방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25) 유기천(1992), 『형법각론』, 서울:일조각. p.335.
26) 이재상(2004), 『형법각론』(제5판), 서울:박영사. p.746; 김일수・서보학(2004), 『형법각론』(제6판), 서울:박영사. p.869.; 배종대(2003), 『형법각론』(제5판), 서울:홍문사. p.798.; 박상기(2005), 『형법각론』(제6판), 서울:박영사. p.664.
2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28) 이재상(2004), 앞의 책. p.779.; 배종대(2003), 앞의 책. p.822.

2. 타인의 수사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

가. 참고인이 수사절차상 가지는 법적 지위

참고인이란 피의자 아닌 제3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범죄사건 수사에서 기자가 소환된 경우, 기자는 형사절차상 참고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가리켜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형소법 제221조 전단).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속한다.

또, 참고인에게는 반드시 진술하거나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 제1항).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피의자에 준하여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요컨대,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출석할 의무도 없고, 진술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그런 까닭에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참고인에게는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기자는 굳이 취재원 보호를 근거로 들지 않아도 수사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기자가 취재원에 대해 묻는 수사관에게 "말할 수 없다"고 진술 자체를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재원을 알면서도 "모른다"거나 취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에 이러한 진술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의 진술로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위계'의 의미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위계'이다. 학설은 대체적으로 위계를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9]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타인의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적극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 타인의 부지를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행위가 모두 위계에 해당한다.

(나)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이에 관하여 참고인의 허위진술의 태양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한 사실만으

29) 이재상(2004), 앞의 책. p.744.; 김일수・서보학(2004), 앞의 책. p.865.; 배종대(2003), 앞의 책. p.796.; 박상기(2005), 앞의 책. p.663.

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30]고 하고 있거나 "형사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인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를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31]고 하고 있다.

물론, 학설 중에는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32]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취재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기자의 "모른다" "없다"는 정도의 진술을 위계로 보기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단순한 진술 거부의 방법이 아닌 "모른다" "아니다"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2) 범인도피죄

(가) '도피'의 의미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피'라 함은 은닉(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다.[33] 즉, 유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도피를 원조하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고, 무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도피를 원조하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

(나)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이에 관하여 참고인의 허위진술의 유형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유형의 구분 없이 항상 그 범죄 성립에 부정적이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대조된다. 판례는 "참고인이 범인 아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 달리 참고인이

30)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31)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885 판결.
32) 손해목,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자백이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판례월보」제11호. pp.112~115.
33) 이재상(2004), 앞의 책. p.767.; 김일수·서보학(2004), 앞의 책. p.915.; 배종대(2003), 앞의 책. p.814.; 박상기(2005), 앞의 책. p.680.;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34]라고 한다. 참고인이 적어도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지목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알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진범을 가리켜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정도만으로는 그 범죄 성립에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소결

현재적인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고 하면, 이 경우 역시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한 기자의 진술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증거위조죄

(가) '증거' 및 '위조'의 의미

증거위조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증거'란 형사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이 국가형벌권 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35] 또한, '위조'란 허위의 증거를 새로 작출,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작출권한이나 내용의 진부 등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문서위조죄의 위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36] 이런 점에서 '위조'라는 용어보다는 '위작'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37]

(나)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38]라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역시,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가 증거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3.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기자 자신의 소송에서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소송상의 불이익

가. 소송상 불이익의 성격

이제는 입장을 바꾸어 기자가 타인의 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아닌 기자 자신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35) 이재상(2004), 앞의 책. p.784.; 김일수・서보학(2004), 앞의 책. p.910.; 이상철(1998),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 『형사판례연구』, 서울:박영사. p.295.
36) 이재상(2004), 앞의 책. p.787.; 김일수・서보학(2004), 앞의 책. p.911.; 배종대(2003), 앞의 책. p.833.; 박상기(2005), 앞의 책. p.695.; 이상철(1998), 앞의 책. p.295.
37) 이상철(1998), 앞의 책. p.295
3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취재원 공개가 문제되는 거의 모든 언론보도들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라든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 기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이라는,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고'라는 소송당사자의 신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위치에서 소송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자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이란 타인의 소송에서의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즉, 그것은 '소송의 패소'라는 좀 더 근본적인 불이익이라 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기자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형사소송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벌금형 등의 형벌[39]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 불이익의 원인: 입증책임

사실, 타인의 소송절차에서의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은 일개 처벌조항 또는 제재조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된 기자가 패소라는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규정 때문인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40]이라는 소송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입증책임이란, 간단히 말해서, 소송상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할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입증책임이 소송당사자 중 누구에게 있느냐는 소송의 승패를 달리지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흔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곤 하는 언론보도의 공공성·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검사에게 있지 않고 피고 또는 피고인에게 있다. 물론,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 제310조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여 이를 거증책임 전환에 대한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견해[41]도 있다. 이 견해는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증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 규정을 거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따르면 언론보도의 공공성·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은 피고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42] 물론,

39) 우리 형법에서는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각종명예훼손 관련 범죄를 규정하며 법정형으로서 징역형·금고형·벌금형을 정해 놓고 있다.

40) 민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거증책임'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민·형사절차 공히 '입증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41) 이재상(2004), 앞의 책. p.195.; 배종대(2003), 앞의 책. p.269.

4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향후 이 점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는 언론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0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미 오래 전에 판례의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기자는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라는 소송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언론보도의 공공성·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해야할 부담을 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와 입증책임의 관계

기자가 명예훼손의 가해자로서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특히 언론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자 본인이 취재원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언론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입증을 하지 못한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때로 패소라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일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참고가 될 만한 이웃 일본의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최근 일본 도쿄고법은 한 중의원이 도박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간지 〈주간신조〉의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사에게 30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사 쪽이 정보의 입수처를 밝히지 않는 만큼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취재원을 비밀로 함으로써 진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는 것은 (원고의) 반증 기회를 빼앗게 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43]

라. 극단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대안의 유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라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자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일단 소송을 당한 기자로서는 패소와 취재원 공개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없을까?

(1) 우선, 언론보도의 공공성·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모색해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원고라 할 수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보도의 허위성까지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고 측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있어서 원고 측에 해당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좀 더 근본적으로는 기자 스스로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전에 철저히

43) 인터넷한겨레 2005. 7. 8.자. '취재원 보호 기자 구속, 한국에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를 약속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당사자가 될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도 좋다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패소해도 좋다는 각오와 마음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취재원 보호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44] 취재원 보호를 약속하지 않은 제2, 제3의 취재원이 있다면 그만큼 취재원 보호에 따른 패소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4. 물적 형태의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

가. 물적 형태로 존재하는 취재원

이제까지 살펴본 취재원 공개 거부가 기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무형의 취재원에 대한 증언 내지 진술 등의 강요였다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는 물적 형태로 존재하는 유형의 취재원에 대한 것이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취재원은 기자의 취재수첩이라든가 다른 문서, 혹은 취재원의 육성이나 모습이 담겨있는 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기자가 취재원이 누구인지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형태의 취재원이 공개되면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난다는 점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취재원 공개와 효과면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물적 형태의 취재원 공개 거부는 일반적인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나.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공개가 문제되는 상황 및 그에 따른 기자의 책임

이러한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공개가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경우이다(민소법 제344조). 이 경우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증언거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받을 수 있다(민소법 제351조).

다른 하나는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법원·검찰의 압수처분이다. 법원과 검찰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형소법 제106조, 제215조). 이러한 압수처분은 취재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자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압수처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압수거부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2조를 볼 때,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언거부권자에 관한 규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취재원에 대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왜냐하면, 기자는 위 규정에 열거된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자들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라도 압수처분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자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45]

44) 박재선(2005. 8월), 미 리크게이트를 계기로 본 한국의 취재원 보호 실태와 방향, 「신문과 방송」. p.43.
45) 윤재윤·함석천(2005), 앞의 책. p.221.

Ⅴ. 글을 나오며

이상과 같이 현행법 하에서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진술을 거부하고 압수에 저항하는 기자가 당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자의 취재원은 분명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우리 언론법제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과거 언론기본법에서와 같이 취재원 공개 거부 내지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총론적인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최근에 제정된 바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취재원 보호의 입장을 고수하고자 할 때 현재적으로는 피해갈 수 없는 기자의 법적 책임들, 예컨대 증언거부 내지 문서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공무집행방해죄·위증죄와 같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취재원 보호가 기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용되어야 할 한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자의 취재원 보호가 기자의 윤리요,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취재원은 결코 절대적이며 영원한 비밀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기자는 결국 취재원을 밝힘으로써만 자신의 기사가 진실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일에 가려진 취재원은 의심스러운 언론보도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조 사 보 고

2005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리아리서치센터(책임연구원 오창엽 팀장)에 의뢰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그리고 '조사결과' 등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난 2005년 7월 28일부로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의 운용상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위원회를 찾은 모든 이용자를 포괄하는 다각적인 이용만족도 및 평가 조사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언론조정심리에 출석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물론, 언론피해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한 상담신청인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 대상자 등 위원회를 이용했던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변화된 언론피해구제 제도 및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중재위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글은 언론 조정 심리에 출석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요약한 것이다.

2. 조사 방법

- 조사대상 : 2004년 7월~2005년 9월까지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신청인 554명, 피신청인 445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신청인, 피신청인)
- 표본크기 : 총 220명(신청인 140명, 피신청인 80명)
- 조사기간 : 10월 29일(토) ~ 12월 5일(월)

Ⅱ. 요약 및 시사점

1.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인 보다는 피신청인의 인지도가 높았다. 이는 언론사에 근무하는 피신청인 직업상의 특징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위원회에 대한 주요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경우 TV광고, 주위 사람들, 방송보도 순이었으며, 피신청인은 신문보도, TV광고, 방송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위원회 필요 이유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다른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위원회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위원회의 필요성 근거로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 위원회 광고에 대한 평가 및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과반수가 위원회의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여러 매체 광고 가운데 TV광고를 가장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광고에 대해서 '광고 주목도', '이해하기 쉬운 전달', '기대감과 신뢰감 전달',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광고'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개선 요망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광고가 요청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향후 광고 제작에 있어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광고를 통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의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절반 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신청인은 이용도가 훨씬 낮아 응답자의 21% 정도만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최신 정보 제공', '이용의 편리성', '정보유익성', '전반적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홈페이지를 이용했던 신청인은 홈페이지의 이용편리성과 정보 유익성 측면에 대해서는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이 신청인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 특히 피신청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홈페이지 구성과 디자인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3. 조정(중재) 사건 관련 사항

신청인의 대부분이 잘못된 언론보도를 접하고 처음으로 취하는 조치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 또는 반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서 언론사의 41.0%는 '잘못을 불인정하고 책임을 회피' 했으며 25.0%는 '잘못을 불인정하고 위협적 발언'을 했다고 신청인은 응답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한편 해당 언론사에 항의 내지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은 언론사에 연락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언론피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58.3%가 위원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사 측이 자사 언론보도로 인한 불만을 위원회 창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언론사의 대리인으로서 위원회 심리에 참석했던 피신청인은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반론보도,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전권을 갖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비중이 가장 컸다.

4. 조정(중재) 절차 및 심리과정

중재위원들이 조정(중재)에 적극적이라는 의견은 신청인보다 피신청인 측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중재) 처리가 공정하다는 의견은 피신청인

보다 신청인 측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정(중재) 권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다 더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위원이 적극적인 중재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분위기에 있어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대부분이 의견교환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를 이용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 모두 중재심리에 출석하여 대기하는 공간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실 환경의 불만사항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비좁은 공간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가 심리전에 마주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또한 서울중재부 대비 지방중재부의 심리실, 대기실 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신청사건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처리기간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70%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정결과 합의된 신청인을 대상으로 합의 보도문의 형식과 내용 만족도를 측정해 본 결과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불성립 결과를 얻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법원 소송 제기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제기율과 비제기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언론사 보도 약속(36.4%), 정정보도 이행(22.7%) 등의 이유가 많았다.

언론보도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신청인의 75.2%가 위원회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재이용 의향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위원회를 추천하겠다는 의견은 신청인의 87.3%가 적극 권유한다고 응답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경우 조정(중재)심리 참석 후 '이전보다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9.6%로 나타나 중재위원회의 긍정적 기능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5. 언론중재법에 관한 사항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신청인, 피신청인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제도 도입'에 대해서 신청인은 93.7점의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으나 피신청인은 39.7점의 낮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중재)가능'에 대해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의 만족수준이 다소 높았다. '구술과 전자우편으로 신청가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경우 92.0점의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67.9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였다.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 신청하는 실질적 중재제도 설립'에 대해서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다소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의 만족 수준이 높았다. '조정(중재) 신청기간 3개월로 연장'에 대해서 신청인의 경우 88.6점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43.4점의 낮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세부 법안들을 토대로 언론중재법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신청인의 경우 86.0점의 수준을 보였고 피신청인은 51.9점의 수준을 보였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신청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인식하는 듯 하며 피신청인의 경우는 다소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인식하는 듯 하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신청인/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서 신청

인의 89.8%는 '피해구제를 돕는 제도'라고 응답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는 45.5%가 '피해구제를 돕는 제도', 54.5%가 '청구권 침해 소지 제도'라고 응답해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했던 신청인은 32.4%로 나타났으며 상담과정에 대해서는 66.7점의 만족수준을 보였다. 만족의 이유로는 '친절한 상담 및 안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구체적인 해결방법 제시'를 꼽았다.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언론피해 예방 교육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피신청인의 78.5%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법률 상담에 대해서는 96.2%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교육보다 법률상담에 피신청인은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를 상대로 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및 법률 상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Ⅲ. 조사 결과

1. 언론중재위원회 필요성

〈표 1〉 위원회의 필요성(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134	96.4	76	95.0
필요하지 않다	5	3.6	4	5.0
모름/무응답	1	-	-	-
총 계	140	100.0	80	100.0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공통으로 물은 결과, 신청인(96.4%), 피신청인(95.0%) 응답자 절대 다수가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도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2. 언론중재위원회 광고 및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

〈표 2〉 위원회 광고별 인지도(신청인, 피신청인)-복수응답

구 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TV광고	62	71.3	28	66.7
신문광고	38	43.7	22	52.4
인터넷광고	11	12.6	-	-
지하철광고	10	11.5	5	11.9
라디오광고	6	6.9	4	9.5
잡지광고	2	2.3	1	2.4
전광판광고	1	1.1	1	2.4
응답자수	87	-	42	-

언론중재위원회 광고를 인지했다고 응답한 신청인 87명과 피신청인 42명의 각 광고별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신청인의 경우 TV 광고를 본 비중이 7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신문광고(43.7%), 인터넷광고(12.6%), 지하철광고(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TV 광고가 66.7%로 가장 많이 접한 광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문광고(52.4%), 지하철광고(1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홈페이지 전반적 만족도(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	-	2	11.8
불만족	6	9.5	3	17.6
보 통	22	34.9	7	41.2
만 족	27	42.9	4	23.5
매우 만족	8	12.7	1	5.9
모름/무응답	6	-	-	-
총 계	69	100.0	17	100.0

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69명)의 55.6%는 '매우 만족+만족', 9.5%는 '매우 불만족+불만족이라고 응답해 만족도는 64.7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17명)의 경우는 29.4%가 '매우 만족+만족', 29.4%가 '매우 불만족+불만족'이라고 응답해 만족도는 48.5점의 수준을 보였다.[1] 신청인 대비 피신청인의 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정(중재) 사건 관련 사항

〈표 4〉 조정(중재) 신청 이전에 취한 조치사항 (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 또는 반론요구	66	61.1	92	66.7
위원회에 상담	30	27.8	34	24.6
변호사에 의뢰	7	6.5	6	4.3
언론관련 시민단체에 상담	1	0.9	2	1.4
기 타	4	3.7	4	2.9
모름/무응답	2	-	2	-
총 계	110	100	140	100.0

언론보도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를 살펴본 결과 신청인의 66.7%가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 또는 반론요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른 조치 없이 위원회에 상담'한 경우가 24.6%, 변호사에 의뢰한 경우가 4.3%로 응답되었다. 2004년 대비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 또는 반론요구'를 한 비중이 다소 늘어났다.

〈표 5〉 문제 발생 후 언론사에 연락하지 않은 이유(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효과 없을 것이라 판다	16	66.7	27	65.9
중재위원회를 통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지	5	20.8	11	26.8
접촉시도 실패	2	8.3	2	4.9
언론사에 대한 두려움	1	4.2	1	2.4
모름/무응답	4	-	7	-
총 계	28	100.0	48	100.0

문제 발생 후 언론사에 연락하지 않은 신청인 48명 중 신청인의 65.9%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6.8%가 '위원회를 통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지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2004년도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해당 언론사에 접촉하지 않은 경우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론사에 연락하지 않은 신청인의 절반 이상이 언론사가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보인다. 2004년도 대비 '위원회를 통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지 했기 때문'의 응답 비중이 6.8% 상승했다.

〈표 6〉 신청인의 요구에 대한 조치(피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언론중재 청구 제의	27	38.6	21	58.3
오류 인정, 협조 노력	18	25.7	12	33.3
보도내용설명, 양해구함	-	-	2	5.6
민원 상담부서로 유도	7	10.0	-	-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	4	5.7	1	2.8
기 타	14	20.0	-	-
모름/무응답	2	-	3	-
총 계	72	100.0	39	100.0

1) 점수 산출 : 본 조사의 측정 문항 중 일부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은 집단간 비교, 시계열분석의 편의를 위해 100점으로 환산되었다. 환산의 방법은 5점 척도상에서 1->0점, 2->25점, 3->50점, 4->75점, 5->100점으로 환산해 이를 분석대상 집단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조정(중재)심리 출석요구서를 받기 이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신청인은 전체 응답자 80명 중 39명이다. 이 중 언론보도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위원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비중이 전년도 38.6%에 비해 19.7%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는 피신청인이 언론사가 자사 언론보도로 인한 불만을 위원회 창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 조정(중재) 절차 및 심리과정

〈표 7〉 심리분위기(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유로운 분위기	62	71.3	105	78.4
강압적, 권위적 분위기	14	16.1	17	12.7
기타	11	12.6	12	9.0
모름/무응답	3	-	6	-
총 계	90	100.0	140	100.0

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정(중재) 심리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78.4%가 '자유로운 분위기'로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리분위기는 대체로 의견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대비 '자유로운 분위기'의 비중이 늘어나 신청인 입장에서의 심리분위기가 2004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조정(중재)처리결과별 만족도(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점수	빈도	점수
합 의	77	53.7	75	63.4
불성립	25	12.5	19	23.5
취 하	22	45.3	22	62.5
조정(중재)결정	-	-	44	54.4
기 각	4	16.7	6	12.5
각 하	5	41.7	3	25.0

조정(중재) 신청 결과(합의, 불성립, 취하, 조정(중재)결정, 기각, 취하)별 신청인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합의' 63.4점, '불성립' 23.5점, '취하' 62.5점, '조정(중재)결정' 54.4점, '기각' 12.5점, '각하' 25.0점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비 살펴보면 합의의 경우 9.7점 상승, 불성립 11.0점 상승, 취하 17.2점 상승, 기각 4.2점 하락, 각하 16.7점 하락의 결과를 나타냈다.

〈표 9〉 조정(중재) 신청 결과 별 만족도(피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점수	빈도	점수
합 의	74	55.1	51	58.9
불성립	38	54.7	27	54.8
취 하	11	70.0	10	72.2
조정(중재)결정	-	-	24	56.5
기 각	14	81.3	3	58.3
각 하	10	85.0	2	50.0

조정(중재) 신청 결과(합의, 불성립, 취하, 조정(중재)결정, 기각, 취하)별 피신청인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합의' 58.9점, '불성립' 54.8점, '취하' 72.2점, '조정(중재)결정' 56.5점, '기각' 58.3점, '각하' 50.0점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비 살펴보면 합의의 경우 3.8점 상승, 불성립 0.1점 상승, 취하 2.2점 상승의 결과를 나타냈다.

〈표 10〉 중재신청 취하의 이유(신청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언론사 보도 약속	8	36.4
정정보도 이행	5	22.7
언론사의 사과로 만족	5	22.7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3	13.6
중재위에서 취하 권유	1	4.5
총 계	22	100.0

취하 결과를 얻는 신청인(22명)을 대상으로 취하한 이유를 살펴보니 36.4%가 '언론사가 보도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언론사가 이미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는 보도를 해주었기 때문에'(22.7%), '언론사가 사과한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22.7%)로 나타났다.

〈표 11〉 언론보도 피해 재발생 시 행동(신청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위원회 재이용	103	75.2
해당 매체에 적극 항의	18	13.1
법원에 소송 제기	13	9.5
다른 상담기관 이용	2	1.5
대응하지 않겠다	1	0.7
모름/무응답	3	-
총 계	140	100.0

향후에 다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신청인의 75.2%는 '중재위원회에 상담을 하고 조정(중재)를 신청 하겠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해당매체에 적극 항의'(13.1%), '법원에 소송 제기'(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위원회 추천의향(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극 권유	73	67.0	117	87.3
소극적으로 권유	25	22.9	-	-
법원 소송 권유	6	5.5	15	11.2
비권유	5	4.6	2	1.5
모름/무응답	1	-	6	-
총 계	110	100.0	140	100.0

주변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을 접하게 될 때 위원회의 추천의향을 묻는 질문에 신청인의 87.3%가 적극 권유하겠다고 응답해 2004년 대비 20.3% 적극적 추천의향이 높아졌다. '권유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1.5%로 극히 낮았으며, 그 이유로는 '위원회의 권한 미약'을 지적했다.

〈표 13〉 조정(중재)심리 참석 후 태도 변화(피신청인)

구 분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이전대비 신중하게 다룸	69	89.6
전과 동일	8	10.4
모름/무응답	3	-
총 계	80	100.0

피신청인의 경우 89.6%가 조정(중재)심리 참석 후 '이전보다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응답해 조정(중재)심리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5. 언론중재법에 관한 사항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손해배상청구 도입에 대한 평가(신청인, 피신청인)

구 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1	0.8	21	28.8
바람직하지 않음	1	0.8	11	15.1
보통	-	-	23	31.5
바람직함	26	20.0	13	17.8
매우 바람직함	102	78.5	5	6.8
모름/무응답	10	-	7	-
총 계	140	100.0	80	100.0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에 대해서 신청인의 98.5%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1.6%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93.7점의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의 경우는 24.6%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43.9%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39.7점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54.0점 높은 수준을 보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에 대해서 피신청인보다 신청인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인터넷 신문의 조정(중재) 대상 포함 (신청인, 피신청인)

구 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1	0.8	2	2.8
바람직하지 않음	-	-	2	2.8
보 통	1	0.8	10	14.1
바람직함	23	18.0	21	29.6
매우 바람직함	103	80.5	36	50.7
모름/무응답	12	-	9	-
총 계	140	100.0	80	100.0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가능'에 대해서 신청인의 98.5%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0.8%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94.3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의 경우는 80.3%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5.6%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80.6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이 '인터넷 신문에 대한 피해 구제 가능'에 대해서 13.7점 높은 수준을 보여 '인터넷 신문에 대한 피해구제 가능'에 대해서 피신청인 보다는 신청인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구술과 전자우편으로 조정 신청 가능에 대한 평가 (신청인, 피신청인)

구 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2	1.6	4	5.7
바람직하지 않음	-	-	8	11.4
보통	3	2.3	15	21.4
바람직함	27	21.1	20	28.9
매우 바람직함	96	75.0	23	32.9
모름/무응답	12	-	10	-
총 계	140	100.0	80	100.0

'구술과 전자우편으로 조정 신청 가능'에 대해서 신청인의 96.1%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1.6%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92.0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의 경우는 61.8%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17.1%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67.9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이 '구술과 전자우편으로 신청가능'에 대해서 24.1점 높은 수준을 보여 '구술과 전자우편으로 신청가능'에 대해서 피신청인 보다는 신청인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실질적 중재제도의 도입에 대한 평가(신청인, 피신청인)

구 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4	3.1	1	1.4
바람직하지 않음	1	0.8	4	5.7
보통	19	15.0	19	27.1
바람직함	37	29.1	28	40.0
매우 바람직함	66	52.0	18	25.7
모름/무응답	13	-	10	-
총 계	140	100.0	80	100.0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

신청하는 실질적 중재제도 신설'에 대해서 신청인의 81.1%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3.9%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81.5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의 경우는 65.7%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7.1%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70.7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이 '실질적 중재제도 신설'에 대해서 10.8점 높은 수준을 보여 피신청인 보다는 신청인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조정(중재) 신청기간의 연장(1개월→3개월)에 대한 평가 (신청인, 피신청인)

구 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3	2.4	17	25.0
바람직하지 않음	5	3.9	13	19.1
보 통	4	3.1	17	25.0
바람직함	23	18.1	13	19.1
매우 바람직함	92	72.4	8	11.8
모름/무응답	13	-	12	-
총 계	140	100.0	80	100.0

'조정(중재) 신청기간 3개월로 연장'에 대해서 신청인의 90.5%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6.3%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88.6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의 경우는 30.9%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44.1%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43.4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이 '조정(중재) 신청기간 3개월로 연장'에 대해서 45.2점 높은 수준을 보여 피신청인 보다는 신청인이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언론중재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신청인, 피신청인)

구 분	신청인		피신청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1	0.8	5	7.6
바람직하지 않음	-	-	7	10.6
보 통	12	9.4	33	50.0
바람직함	43	33.9	20	30.3
매우 바람직함	71	55.9	1	1.5
모름/무응답	13	-	14	-
총 계	140	100.0	80	100.0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신청인의 89.8%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0.8%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86.0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의 경우는 31.8%가 '매우 바람직함+바람직함', 18.2%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해 51.9점의 수준을 보였다. 피신청인 대비 신청인이 '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34.1점 높은 수준을 보여 피신청인 보다는 신청인이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표 20〉 상담과정 만족도(신청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 만족	7	15.6
만족	24	53.3
보통	7	15.6
불만족	6	13.3
매우 불만족	1	2.2
총 계	45	100.0

언론피해상담을 받은 신청인의 68.9%가 '매우 만족+만족', 15.5%가 '매우 불만족+불만족'이라고 응답해 만족도는 66.7점의 수준을 보였다.

〈표 21〉 위원회 언론피해 예방 교육의 향후 이용 의사
(피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극적 이용	11	12.0	14	17.7
이용할 의사가 있음	66	71.7	48	60.8
이용할 의사 없음	12	13.0	16	20.3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	3	3.3	1	1.3
모름/무응답	1	-	1	-
총 계	93	100.0	80	100.0

피신청인의 경우 78.5%가 '적극적 이용+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2004년도에는 83.7%가 '적극적 이용+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2004년 대비 향후 이용의사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률 상담 이용 의사
(피신청인)

구 분	2004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극적 이용	20	21.7	25	31.6
이용할 의사가 있음	60	65.2	51	64.6
이용할 의사 없음	10	10.9	2	2.5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	2	2.2	1	1.3
모름/무응답	1	-	1	-
총 계	93	100.0	80	100.0

피신청인의 경우 96.2%가 '적극적 이용+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2004년도에는 86.9%가 '적극적 이용+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2004년 대비 향후 법률 상담 이용의사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황 용 경
경남중재부장,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용경 위원(경남중재부장,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이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경남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룡 위원(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1. 머리말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 제정, 공포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민의 권리도 한층 신장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언론중재법의 제정 경위

가. 헌법 및 민법의 관계 규정

헌법은 제10조에 행복추구권, 제17조에 사생활 보호,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4조에서는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의 조화로운 운용은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제정 경위

1980년 말 '언론기본법' 제정 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 규정을 모델로 한 '정정보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임)이 도입되면서 프랑스 및 독일에서부터 비롯된 '반론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흡수하는 완충장치와 이 제도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제도가 도입, 설립되었다.

위 언론기본법이 1987. 11. 28. 폐지됨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분리 수용되었다가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었다.

1995. 12. 31. 정간물법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 대신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명실상부한 정식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언론중재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민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에 단일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가. 인터넷신문까지 언론 범위 확대

언론중재법 제2조는 언론의 개념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고,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 인격권의 구체화와 사자(死者)의 인격권 보호

인격권은 이제까지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언론중재법 제5조에 인격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격권 보호가 법으로 명문화 되어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 것이다.

다. 고충처리인 제도의 도입

언론중재법 제6조에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충처리인을 내부 인사로 할 경우 언론불만처리기관으로서 독자나 시청자의 충분한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충처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인을 사외 인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라.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대와 정정보도청구권의 명문화

(1)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관한 사

항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공표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언론보도의 잘못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 내지 반박을 무료로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은 문자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그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가 훼손된 자가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잘못을 언론사로 하여금 시정하게 하여 정정된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 근거 및 취지

반론권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그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독자로서 피해자가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와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발견과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객관적인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은 종전에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한 방법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민법의 불법행위 이론에 의하여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했다.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종전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그 행사기간(민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당해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단축된 것 이외에는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의 권리구제는 쉬운 반면에 언론의 책임은 더 가중되었다 할 것이다.

(3)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 및 변천과정

종전에는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정확한 명칭과는 달리 그 성질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반론권의 특성상 갑자기 폭주할지도 모르는 반론권의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편법적이고 위장적인 전술로서 그 용어를 정식으로 '반론권'이라 하지 않고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였고, 이 의도적인 용어 선택의 부정확함이 그 후 필요 없는 논의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 1996. 7. 1.부터 시행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의 '정정보도청구권'에서 학술적인 '반론반도청구권'이라는 법률상 용어로 정비되었다.

(4)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차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여, 언론 보도가 사실이든 허위이든 반론이 가능하고, 반론을 주장하는 측은 그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만 입증하면 더 이상 입증은 필요 없으므로

반론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시간 내에 조정 내지 중재과정과 소송과정에서 대부분 승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허위의 점을 정정을 주장하는 언론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아니하여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즉 정정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5)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반론보도의 청구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종전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반론보도와 동일하게 하여 언론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였으나 언론사의 입장을 감안하여 사실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피해자가 그 보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6)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

이러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야 되고 언론사의 의견 내지 논평 등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문제의 보도와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보도내용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차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기사가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추후보도청구권 행사기간을 형사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월에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로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 한층 도모하였다.

바.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중재 신청권 인정

종전에는 언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조정이나 중재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언론중재법에는 피해자가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손해배상 청구를 도입하였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간단한 손해의 경우 소의 제기 없이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 구제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사. 금지청구권 정식 인정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받아들여 피해자는 인격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 피해자에게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고 사전 금지 외에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신문이나 방송의 발행, 상영, 판매, 배포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비교

언론피해구제제도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 언론중재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금지청구권 및 형사적 구제수단으로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 조정, 중재 절차의 정비

종전에는 언론분쟁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조정을 '중재'로 표현, 고유의 의미의 중재제도가 없었으나 언론중재법은 본연의 의미에 맞게 종전의 '중재'를 '조정'으로 표현을 변경하고 중재제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중재가 아닌 조정으로서 알선이나 권유나 직권중재결정과 같은 소극적 기능만으로는 분쟁해결의 한계가 있어 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유의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결국 이러한 중재제도는 권위와 증거조사의 기능을 가진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복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활동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 신청대리인의 확대

변호사 아닌 자가 중재부의 허가를 사전에 얻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도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종래 중재실무에 의하면,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기관, 단체, 회사 등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카. 조정, 중재기일 불출석의 효과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언론사는 2회 불출석하면 신청취지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신청인이 1회 불출석으로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4조에서 신청인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정 내지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타. 직권조정결정 제도의 개선과 조정, 중재 처리기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위 결정에 대하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는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신중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남발함으로써 중재결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중재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피해자가 중재부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언론사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기 때문에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소 제기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법조치가 되었다고 보인다.

파. 시정권고의 확대

시정권고 대상의 매체 범위를 종전의 정기간행물에서 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로 확대하였고, 무엇보다 언론보도에 의하여 법익이 침해된 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악의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 조정전치주의 폐지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국민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 먼저 거칠 것인지에 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지 않되 반론보도청구뿐 아니라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까지 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였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책무도 그만큼 무거워져 중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잘 이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거. 기타

그 외 개정안에서는 '부당광고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언론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 검토가 필요하여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언론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정부가 그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문제 등으로 채택이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상당 부분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권익이 더 한층 보장되는 반면에 언론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언론중재법이 본래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언론중재법을 이용하는 한편 언론중재법을 남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언론사 또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제도의 확대, 데스크의 기능 정립,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가입, 공제제도 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토 론

사 회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이건혁(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새로 시행된 '언론중재법'이 전반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킨 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권위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의 권위가 현재보다 더욱 높아져야 하며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윤용식(합천군 문화공보과 과장) : 우리 합천군은 지난 5월 28일 KBS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한바 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을 통해 합천군의 반론을 게재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KBS는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결국 이 건은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 역시 합천군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지난 9월 4일이 되어서야 반론보도가 방송되었다. 일련의 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이 있었고 반론보도만큼은 언론중재위원회 고유 권한으로 법에 명문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혹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만큼은 중재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토 론

원용관(마산MBC 심의부장) : 마산MBC는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고충처리인을 사외인사로 두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나 오히려 사내인사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사내인사냐 사외인사냐 하는 문제보다는 사주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

김찬호(KBS 창원방송총국 편성제작팀장) : 합천군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보도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자 한다. 합천군 관련 보도 이후 우리는 반론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또한 발표자의 발표내용 중 직권중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만큼은 크게 공감을 한다. 언론사 입장에서 이 제도가 반드시 불리한 측면만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회경(진주MBC 보도부장) : 반론권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점도 있다. 방송의 경우 사건보도 시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도한 다음 맨 마지막에 '한편'이라는 말을 통해 이해당사자 혹은 사건 관련자의 멘트를 인용하여 처리하는 포맷으로 진행한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한편'으로 처리한 멘트를 이해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론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어떤 사안을 보도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점을 멘트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요청하는가 하면 반론문의 내용 역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분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정당한 반론권을 주려 할 때는 회피했다가 보도 후 반론권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반론권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홍(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경남지역본부 이사) : 언론중재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중재위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우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 법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를 사법부로 봐야 하느냐 그리고 중재위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획득하느냐의 여부도 궁금하다.

김명현(경남신문사 법원검찰출입부장) : 수사 중인 사안,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반론권을 줘야하는 등 반론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기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언론의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공익적 가치가 큰 보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이를 정정하거나 반론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온 보도자료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 자료이다. 따라서 반론권의 무제한 확대는 언론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해외시찰 보고서

- 프랑스, 독일, 영국 사례 -

경남사무소 소장 **손 정 배**
조정1팀 차장 **류 석 창**

Ⅰ.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언론의 자유'는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는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독일, 영국은 근대 문명을 일찍 꽃피운 나라들이며, 언론의 역사 또한 오래된 나라들이다. 이러한 '언론 선진국'들에서조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 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이 글에서는 각국의 개괄적 언론환경이나 방문기관 개요, 대담내용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방문기관 탐방

1. 프랑스 Le Figaro

(1) Le Figaro 개요

- Le Figaro는 1826년 주간지 타블로이드판으로 당시 연극계의 거장이었던 보마르셰에 의해 창간되었다. 신문의 제호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자인 보마르셰가 오페라의 제목을 따서 지었다.
- 1866년 주간지에서 정치논설 중심의 일간지로 바뀌었다.
- 나치 괴뢰정권이 비시(Vichy)를 수도로 남부독일을 통치하자 1942년 11월 23일 자진 폐간하였다. 종전 후 프랑스 정부는 1942년 11월 26일 이후 발행한 신문에 대해 반민족지로 강제 폐간시켰는데, Le Figaro의 경우 4일만 더 발행했었다면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 1944년 프랑스 해방군의 파리 입성 전날 복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급 정론지로서 그 위상을 이어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 들어서는 기사내용에서 이념성이 많이 퇴색했다고 한다.
- 현재 발행부수는 43만부[1] 정도로 발행부수로는 프랑스 중앙일간지 중 네 번째다.

1) 프랑스 신문 발행부수 공사기구 OJD(L'Office de Justificqtion de lq Difussion)의 2004/2005 발표

〈프랑스 중앙일간지 발행부수(2004/2005)〉

중 앙 일 간 지	부 수
LE PARISIEN + AUJOURD'HUI EN FRANCE (Couplage)	673,495
L'EQUIPE EDITION GENERALE	505,177
LE MONDE	492,184
LE FIGARO	436,00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328,714
AUJOURD'HUI EN FRANCE	251,633
LIBERATION	200,211
LES ECHOS	177,273
PARIS TURF	135,201
LA TRIBUNE	124,528
LA CROIX	121,401
FRANCE SOIR	108,687
L'HUMANITE	73,127

출처 : ASSOCIATION POUR LE CONTROLE DE LA DIFFUSION DES MEDIA, 2005.

(2) 대담 요지

면담자 : Arnaud Rodier (경제부 편집부국장),
Sophie Fay (경제부 앙케이트 논단 담당)

Q : Sophie Fay씨는 Le Monde에서 근무하다 옮긴 지 얼마 안되었다고 들었다. Le Monde와 Le Figaro의 언론불만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가?

A : Le Monde에서는 독자불만이 접수되면 옴부즈맨팀이 종합하여 편집부에 전달하며, 자체적으로 독자의 불만사항과 이에 대한 편집진 혹은 기자들의 반응을 매주 정리하여 게재한다. Le Figaro의 경우 독자불만을 처리하는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이 없다.

Q : 그렇다면 Le Figaro의 경우 언론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부서가 없는가?

A : 그렇다. 기사에 따라 담당부서가 회의를 통해 독자불만을 해결한다. 물론, 기사가 독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같은 지면, 같은 크기의 반론문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

Q : 오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나 요강이 있는가?

A : 별도의 내부지침이나 요강은 없다. (지갑에서 기자증을 보여 주며) 이것은 '기자 신분카드 발급위원회' (La Commission de la cart d'identite des journalistes)[2]에서 매년 발급되는 것으로, 이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Q : 미국에서는 최근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가 다시 한번 언론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기자는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르피가로의 시각이 궁금하다.

A : 취재원 공개는 안된다. 프랑스에서는 법과 판례로 보장된다.

Q : 영국의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와 같이 독자불만을 접수·처리하여 언론보도 관련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기구가 프랑스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 언론사들이 독자불만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등 오보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기자 신분카드 발급위원회 : 공공영역과 관련된 신문 및 오디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기업 및 단체를 대표하는 8명의 사용자 대표와 기자증을 소지한 기자들에 의해 선출된 8명의 기자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들은 3년마다 교체된다.

2. 독일 바이에른 고등법원

(1) 독일 언론법 체계 및 반론권 제도의 특징

(가) 언론법 체계

- 독일의 헌법은 대표민주제 원칙 및 연방과 지방정부(州)간의 권력분배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신문·출판법 및 방송법 등 대부분의 언론관계법은 16개 지방주의 관할권에 속한다.
- 각 주 출판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정보(제공)청구권(Informationsanspruch), 주의의무(Sorgfaltspflicht), 간행요목(Impressum), 책임편집자(Verantwortlicher Redakteur), 표시의무(Kennzeichnungspflicht), 반박기사(Gegendarstellung), 증언거부권(Zeugnisverweigerungsrecht)과 압류(Beschlagnahme)·수색 등을 들 수 있다.
- 현재 독일 방송법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연방제도에 따라 각 주가 제정한 미디어법과 각 방송국에 관한 법률들이 있다.

(나) 반론권 제도의 특징

- 독일의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 보다 훨씬 합리적이고도 세련된 구제절차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반론권의 주체, 객체, 게재 의무자, 대상 등에서 프랑스 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 프랑스가 논평이나 의견 등 가치판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반면 독일은 사실주장에 대한 반론만 인정하고 있다.
- 반론권의 청구방법에서도 반론권자의 자필서명, 문서화 등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운용이 경직되어 있다.

(2) 대담 요지

면담자 : Peter Lemmers(판사), Walter Seitz(법학교수, 바이에른 고등법원 전 법원장)

Q : 바이에른 고등법원 언론전담재판부가 연간 처리하는 언론관련 재판은 얼마나 되는가?

A : 바이에른 1심법원 전체로 보면 연간 300여건 정도이고, 항소법원은 60~70여건 정도이다. 참고로 독일에서 언론 관련 재판이 많은 도시를 꼽으라면 뮌헨, 함부르크, 베를린을 들 수 있다.

Q : 독일의 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3]의 분쟁조정기능과 역할에 대한 독일법원의 평가는?

A : 조정기능은 있지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연간 150 ~ 200건 정도[4] 다뤄지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평의회 자체가 주로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Q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의 종류는?

A : 바이에른주 언론법과 독일 연방 민법에 의하여 반론, 정정, 사전금지청구, 금전적 손해배상, 이익환수 등 모든 청구가 가능하다. 독일의 언론법은 주마다 다르며 바이에른주 언론법은 1949년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주들은 1965년 이후 법이 정비된 반면 바이에른주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다.

---

3) 독일 언론평의회 조직 : 비영리 법인체이며, 주요 발행인단체와 기자단체들의 결합체임. 의장이나 산하 기구들의 의장이 모두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율적인 감시기구라 볼 수 있음.

4) 독일 언론평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평균 650건 이상의 불만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그 중 약 2/3는 불만처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에 앞서 사무국의 조정하에 초기 단계에서 처리되고 있다. 대담 과정에서 언급된 150 ~ 200건 정도의 숫자는 불만처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에까지 이르는 사건수인 것으로 판단됨.

Q : 위자료 산정시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가?

A : 언론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일정한 기준이 없다. 사건마다 모두 다르며 청구액수와 피고의 방어 논지, 그리고 판사의 재량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 언론피해 관련 소송은 상당히 어려우며 전문화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힘들다. 또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Q : 독일의 다른 주들은 반론청구소송을 가처분절차로 진행하는 반면 바이에른주에서만 본안절차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오해다. 반론청구소송은 독일의 전체 법원이 가처분절차로 진행한다.

Q : 언론사건에서도 참심제를 실시하는가?

A : 참심제는 민사법원 사건 중 상법 관련 사건은 참심제로 재판하고 있으나, 다른 일반 민사사건이나 언론사건은 참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법원 및 노동법원에서는 참심제를 실시한다.

Q : 언론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실무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제도적인 개혁 사안은 별로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언론 관련 소송은 판례가 특별히 중요한 분야이며, 따라서 판례로써 개선되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에서의 언론 관련 소송사건 중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심 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할 경우 재판부가 도와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직권 심리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프랑스와 같이 의견기사에 대해서까지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중에 있다.

Q :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와 인터넷 매체의 범주는?

A : 소송건수는 기존 매체의 두배 정도 되며, 인터넷 매체의 범주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활자매체와 동일한 내용이 자체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되는 형태의 e-paper를 말하며, 각 주 협약에 의해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 리스트가 있다.

(※ 대담과정에서 Walter Seitz 교수는 언론전담재판부를 거친 주요사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고, 언론평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원의 언론재판 기능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었다.)

3. 독일 Süddeutsche Zeitung

(1) 독일언론 및 Süddeutsche Zeitung 개요

(가) 독일언론

- 독일은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현재 약 430종 이상의 일간지, 60종 이상의 주간지, 2만 이상의 각종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신문 및 잡지는 특별지를 제외하고 일간, 주간, 월간지를 포함해 2,600개 정도이다. 전국지로 유명한 일간지로는 〈디 벨트〉〈도이체 자이퉁〉〈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쥐트도이체 자이퉁〉〈라이니셰 메르쿠어〉 등이 있고, 주간지로는 〈디 자이트〉〈데어 슈피겔〉〈슈테른〉 등이 있다.

- 독일의 방송은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공단(公團)으로 운영된다. 현재 9개의 방송공단은 각각 독자적으로 방송내용을 편성·방송하고 있으며 '독일의 소리' 방송은 30개 국어로, '독일국영 방송' 은 전유럽을 대상으로 방송한다. 텔레비전 방송사는 11개주 방송사 외에 이를 공단형태로 운영하는 ARD(제1TV)와 ZDF(제2TV)가 있다. 특히 ZDF 방송사는 유럽 최대이다.

(나) Süddeutsche Zeitung

-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으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디 벨트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일간지 중 하나이다.

- 1945년 바이에른에서 발행허가를 받은 최초의 신문이며, 현재 발행부수는 40만부 정도이다.

- 신중하고도 정확한 뉴스 보도와 민감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려깊고도 솔직한 편집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도 좌파적이면서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대담 요지

면담자 : Christian Schmidt(사내 법무담당 변호사),
Gerd Sowein(독자담당),
Dr.Joachim Käppner(국내정치담당)

Q : 쥐트도이체 자이퉁은 독자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가?

A : 독자투고 지면(2면)을 담당하는 직원이 독자불만을 접수, 처리한다.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독자담당이 편집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편집부는 수용여부에 대해 공개토론 후 결정한다.

Q : 불만신청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A : 하루에 평균 136건 정도이나 일반적인 투고가 대부분이고 정정이나 반론요청은 1주일에 15건 정도이다.

Q : 정정이나 반론요청 건수 중 언론사가 수용하는 비율은?

A : 3/4 정도는 당사자와 합의로 종결되고, 1/4 정도는 소송이 제기된다. 신청인과 합의하는 데 있어 독자투고란은 큰 역할을 한다. 1면에 보도가 나갔더라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면에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1면에 정정이나 반론이 실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언론사로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Q :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기자들이 취재방법이나 기사작성방법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고 있는 자율지침이 있는가?

A : 취재방법 및 기사작성방법 등은 언론인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교육받는다. 또한 언론인들의 보도 자율지침으로는 독일언론평의회의 지침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Q : 미국에서는 최근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가 다시 한번 언론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기자는 취재원 공개를 끝내 거부해 결국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 : 분노할 사건이다. 독일은 취재원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사, 기자, 변호사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진다.

Q :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문제는?

A : 독일에서는 뉴스까지 제공하는 형태의 포털사이트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사 작성자가 1차 책임, 기사를 인용한 포털사이트가 2차 책임, 인용 보도한 기자가 3차 책임을 진다.

Q : 쥐트도이체자이퉁의 보도에 대하여 언론평의회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는가?

A : 과거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독자투고를 게재하면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취지가 왜곡 전달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평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4. 영국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

(1) PCC 개요

- PCC의 전신인 언론평의회(The Press Council)가 공정성과 효율성 등 여러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해체된 후 1990년 캘커트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1년 1월 출범했다.

- PCC는 현재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의 임명은 지명위원회(Appointment Commission)가 전담하고 있다. 17명의 위원 중 7명은 언론사 편집장이며, 나머지는 일반 시민대표이다.

- PCC의 연간 예산은 약 150만 파운드 정도이며, 대부분 회원 언론사에게서 할당해 조달하고 있다.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회원사들로부터 기부금을 걷는 전담 기구는 언론재정표준위원회(PRESSBOF, Press Standards Board of Finance)이다.

(2) 불만 처리절차

- 시민들은 누구나 PCC에 불만을 제소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는다.

- 불만이 제기되면 PCC 위원은 먼저 해당 언론사 '독자대표' (representative to readers)에게 연락을 취한다. 영국의 5개 권위지들은 모두 독자대표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 연락을 받은 언론사 독자대표는 해당 기자와 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정정할 것인지 해명할 것인지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윤리강령 위반차원을 넘어서는 경우 언론사 독자대표의 손을 거쳐 전담변호사에게로 사안이 넘어간다.

- 이 과정에서 PCC는 빠른 시일 안에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불만제소자와 신문사가 접촉할 기회를 마련하며,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PCC가 조사에 착수한다.

- 신문이 보도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위반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PCC는 교정의 평결문을 내게 되는데, 신문은 평결문 전문을 원래 보도된 기사와 상당한 정도로 눈에 띄게 게재해야 한다.

(3) 언론불만 처리건수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수	2,400	2,250	3,000	2,600	3,649	3,618

출처 : PCC, Annual Review 2004

- 2004년의 경우 신청인 중 일반인이 92.2%,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5.5%, 기타 2.3%였다.

- 보도실천강령 위반 통계를 보면 보도의 정확성 위반이 56.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장애인이나 인종 관련 차별보도(13%)와 사생활침해(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3.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5)]

-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6개월간 처리한 사건[6)] 중 70%는 행동실천강령과 무관한 분야(광고라든가 의견이나 가치판단 등과 관련된 것들) 혹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며, 12.3%는 행동실천강령 위반이 아닌 사건, 11.7%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 4.4%는 신청인 취하, 1.2%가 재정결정 단계(총 22건 중 결정 5건, 기각 13건, 계속 4건)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보도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은 총 17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다. 어린이나 장애인, 성적 피해자, 인종차별, 범죄보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도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 신청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영국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제3자에 의한 불만의 제소가 가능하다.

6) PCC, Report No 68/69, p4.

(4) 대담 요지

면담자 : William Gore (사무국 부국장)

Q : PCC 위원 중 언론인 7명 외에 10명의 위원들의 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가?

A : 없다. 직업이나 직책은 고려사항이 아니고 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고려사항이다.

Q : PCC의 결정에 대하여 언론사가 수용을 거부한 경우는 없는가?

A : 지금까지는 전부 수용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PCC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언론사들도 알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한다.

Q : 캘커트위원회가 1993년 PCC의 역할을 비판하면서 다른 대체기관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들었다.

A : 사실이다. 캘커트위원회가 PCC에 대해 진정한 독립기구가 아니라 언론계에 의해 구성되고, 재정지원을 받고, 지배되고 있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강력한 기관[7]으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에서 반대했다. 이후 PCC는 국민과 언론, 정부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Q : 인터넷언론이나 방송 관련 신청은 없는가?

A : 언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기구인 'Office of Communications'가 방송에 대한 규제와 방송에 의한 피해구제까지 담당[8]하고 있다.

Q : PCC에서 해결이 안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가?

A :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잘 모르지만 별로 안되는 것으로 안다. 과거 PCC에서 조정한 결과 언론사가 보도를 하여 해결이 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그 때 법원은 PCC의 노력과 언론사의 후속보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했다.

(※ PCC의 17명의 위원 중 언론인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위원은 일반 회사원, 초빙교수, 사기업 대표이사 등으로 직역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5. 영국 The Guardian

(1) The Guardian 개요

- 1821년 존 에드워드 테일러가 창간하였으며, 현재 소유는 Scott 재단이다. Scott 재단은 통상적인 신문사주의 성격이 없어 특정 사주의 사업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영은 배제되며,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 영국 유일의 독립언론이자 좌파적 성향의 고급 진보지로 평가받으며, 96년부터 인터넷 온라인 쪽으로 눈을 돌려 제2의 창간을 이룩했다. 99년에는 가디언 언리미티드를 만들어 20~30명의 인원을 배치, 현재는 전세계 200여 국가에서 한달에 1천만명이 접속하고 있다.

- 또한, 97년 영국 최초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독자불만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2) 대담 요지

---

7) 캘커트위원회는 언론불만처리법정(Press Complaints Tribunal)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이 법정은 보도정지, 사과, 정정, 반론 등에 관한 결정 뿐 아니라 배상 또는 벌금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8) 'Office of Communications' 산하 방송기준위원회는 1996년 개정된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6)에 따라 설립된 방송내용 심의 기구로, 영국내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다룬다.

* 대담자 : Ian Mayes(가디언 옴부즈맨)

Q : 옴부즈맨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 기자들과 신분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A : Scott 재단에서 나의 신분을 보장하며, 편집장이 옴부즈맨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 독립성이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것이지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편집장이나 기자들과 충돌을 빚는 경우도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Q : 불만신청이 접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가?

A : 해당 기자나 편집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여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정란에 정정하고,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칼럼을 쓴다.

Q : 칼럼을 쓸 경우 편집장이 거부할 수도 있나?

A : 그럴 수는 없다. 그건 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편집장이라 해도 간섭하지는 못한다.

Q : 연간 접수, 처리하는 불만신청 건수는?

A : 일년에 약 1,600건 정도를 처리한다.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가 많다.

Q : 오보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원칙이나 기준이 있는가?

A : PCC에서 만든 보도실천강령(Code of Practice)가 있으며, 가디언 내부의 편집강령(Editorial Code)이 있다. 편집강령의 경우 보다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Q : 불만 접수후 처리기간은?

A : 바로 다음날 보도되는 것이 처리사건 중 38% 정도이고, 83% 정도는 일주일 안에, 99%가 한달 안에 해결된다. 나머지 1% 정도가 한달 넘게 걸린다.

(※ The Guardian에서는 기자들의 편집회의를 직접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자유롭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전 날 보도된 기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Ⅲ. 맺음말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언론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어 급기야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매체의 다양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럽의 '언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나, 이들 나라 언론인들이 갖는 직업의식이나 자부심, 긍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유럽 언론사들은 우리의 언론 관련 법제가 그들 나라보다 더욱 발전된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피해구제에 있어 자율규제와 제3의 기관에 의한 타율규제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외 언론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언론사 내부적인 피해구제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옴부즈맨제도의 일종인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당장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자율적인 고충처리인 제도를 타율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부 있으나, 시간을 두고 가다듬는다면 언론중재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위/원/칼/럼

강정구 교수 발언과 미디어 효과 이론

장 호 순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소위 '친북 반미 발언'을 두고 벌어졌던 소동이 잠잠해졌다. 지난 11월 25일 검찰이 강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단신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다. 한국 언론은 어느새 강 교수를 버리고 "황 교수"에게 매달려 있었다. 덕분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의 발언을 두고 "국가정체성 위기" 혹은 "학문의 자유 침해"등을 주장하며 살벌했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대립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다.

강 교수 발언을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양상과 함께,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한국사회의 "냄비" 기질을 재확인 시켜주기도 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에 적용되는 다양한 미디어 효과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강 교수 발언 소동 초반에는 '탄환이론(bullet theory)'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강 교수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심지어 그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취업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탄환이론의 신봉자들이었다. 탄환이론이란 어떤 메시지에 대해 수용자들이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이론이다. 메시지가 마치 총알처럼 직선으로 날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힌다는 것이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대규모 선전선동을 통해 독재권력을 장악한 1930년대에 등장한 탄환이론은 인간을 선전선동에 쉽게 조작되는 수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강 교수의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3자 효과이론(third person effect theory)'도 적용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접하더라도 나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얼핏 보면 자신보다는 타인이나 공동체를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들이 반대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강 교수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강 교수의 주장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자신들은 강 교수의 주장을 접하고도 의견변화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 교수의 주장을 수용하고 동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의 발언을 제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강 교수의 발언과 처벌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치열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강 교수 발언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과거와 같은 레드 콤플렉스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강 교수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탄환이론과 제3자 효과이론에 근거해 주장을 펼쳤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이론과는 상반되는 '의제설정효과이론(agenda-setting effect theory)'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의제설정효과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수용자들에게 어떤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의제에 대한 입장변화까지 유도하지는 못한다. 강 교수 발언 문제로 예를 들면, 언론보도 덕분에 그의 친공 발언과 좌우이념 대립에 대한 관심은 생겼지만, 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견해가 새롭게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각 개인의 정치·사회적 성향과 주변 환경에 따라 강 교수 발언에 대한 입장은 형성되어 있고, 언론은 대체로 그것을 확인하고 공고하게 해줄 뿐, 여론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강 교수의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marketplace of ideas theory)'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을 최대한 교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한 메시지들 중 상호 경쟁과정을 거쳐 다수에게 수용되면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대신 소수자들에게는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다수를 설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와 소수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 교수의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신봉자로 간주하기는 아직 이르다. 자신들이 혐오하는 극우적 표현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적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소동은 결국 법적 판단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판례를 보면, 탄환이론이나 제3자 효과 이론에 따라 소위 반사회적, 반국가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을 근거로 엄격히 처벌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말 잘못한 죄로, 글 잘못 쓴 죄로 수년 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의 법원판례를 보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의 한 판결에서 좌우 이념, 민족과 통일 등의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고 관용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한국 사회에 보다 폭넓게 수용되는 때가 되면 강 교수 발언을 둘러싼 소동은 지난 시절의 웃지 못 할 코미디로 기억되지 않을까? □

홈페이지상의 기사제목 무단이용은 불법이지만,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판결-

홈페이지의 기사제목이 무단으로 복제(複製)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가 digital contents 기획·제작회사인 「Digital Alliance」(본사 ·고베시)에 대해 2,480만 엔의 손해배상과 기사제목 복제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적재산(知的財産)고등법원 4부는 지난 10월 6일 "Digital사의 일련의 행위는 요미우리신문사의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시, 요미우리신문사 측의 제소를 기각한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2004년 3월)을 변경하여 Digital사에 약 24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인터넷상의 기사제목 무단이용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저작권침해는 부정되었으며, 금지청구도 기각되었다.

문제가 된 Digital사의 서비스는, 등록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광 게시판의 방식처럼 흐르는 최신뉴스기사 제목을 볼 수 있게 한 것.

제목은 인터넷서비스회사 「Yahoo」의 뉴스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며, 요미우리신문사가 Yahoo에 유상으로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Yahoo의 뉴스사이트가 표시되고 기사 전문을 읽을 수 있으며, Digital사는 제목 사이에 내보내는 광고로 수입을 얻도록 되어있다.

요미우리 측은 "홈페이지상의 기사제목 무단복제는 저작권 침해로서, 기사제목의 정보선도(鮮度)가 높으며, 상품가치가 가장 높은 단계에서 무단으로 복제·제공하는 행위는, 실태면에서 네트상에서의 뉴스배신(配信)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 요미우리의 사업과 경합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Digital사의 「무임승차」행위는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제목의 저작물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뉴스보도에서의 기사제목의 저작물성이 긍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표현 여하에 따라서는 창작성을 긍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기사제목의 표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문제가 된 각 제목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창작성을 갖고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홈페이지상의 기사제목에 대해 ① 많은 노력(勞力)과 비용을 들인 보도기관으로서의 일련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상응한 노고(勞苦)와 연구에 의해 작성되어 간결한 표현으로 뉴스의 개요를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③ 유료로 거래되어 독립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

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Digital사의 서비스는 "요미우리에 무단으로, 영리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정보선도(鮮度)가 높은 시기에 특별한 노력(勞力)도 없이, 실질적으로 dead copy(타기업의 동종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하여 제목을 작성, 배신한 것으로, 요미우리의 업무와 경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장통념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황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며, 1개월에 10,000엔(10만원 상당)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Digital사의 장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물리쳤다.

(신문협회보 2005년 10월 11일자) □

현시점에서 60여 년 전의 사건 기사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중일(中日)전쟁 중이던 1937년 「百人斬り」(「군도로 백 명 베어죽이기」)를 했다고 보도된 구 일본군 장교 2명의 유족 3명이 허위의 기사로 경애추모(敬愛追慕)의 정을 침해받았다며 아시히 신문과 마이니찌 신문, 전(前)아사히신문 기자였던 本多勝一 씨 등을 상대로 3,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23일 "현시점에서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도쿄일일(日日)신문(현 마이니찌 신문)은 1937년 장교 2명이 「군도(軍刀)로 백 명 베어죽이기 경쟁」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本多 씨도 아사히 신문이 72년에 단행본으로 발행한 「中國の旅」(중국여행)등의 서적에 「군도로 백 명 베어죽이기 경쟁」에 관해 기술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도쿄일일신문의 기사는 장교 2명이 기자에게 「군도로 백 명 베어죽이기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연재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허위, 과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기자의 창작이라고는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서적의 적시사실이 한눈에 명백하게 허위라고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마이니찌 신문에 대한 제소는, 도쿄일일신문에의 게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除斥)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9월 13일자) □

기사의 중요부분에서 진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2003년에 발생한 후쿠오카(福岡)일가 4명 살해

사건을 둘러싼 「週刊新潮」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살해된 처의 실형(實兄) 부부가 신조사(新潮社) 등을 상대로 5,5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6부는 지난 8월 29일 "기사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 신조사 측에 합계 33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실형 부부는 이 사건과 관련, 「프라이데이」(동년 10월 10일호)의 기사에 대해서도 講談社를 상대로 3,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 지방법원은 講談社 측에 880만 엔의 지불과 함께 판결의 결론을 광고로 게재할 것을 명했다.

문제가 된 「주간신조」(동년 7월 10일호)의 기사는 「『후쿠오카 일가참살사건』, 뒤범벅이 된 『극비 수사정보』의 진위(眞僞)」라는 제목으로, 살해된 처의 친척 중의 한사람이 후쿠오카 일가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트러블이 있고 수사당국으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이혼전력 등을 익명(匿名)으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익명으로 작성됐으나 면식이나 경력 등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 수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기사 전체적으로는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되나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에 국한해서 볼 때 그것을 취급한 목적이나 의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9월 13일자) □

공문서 외의 첨부서류 열람 제한하는 새 법 시행 논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공문서에 첨부되는 문서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기자들이 알권리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법은 공문서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첨부된 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원할 경우 기자는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Associated Newspapers, New International과 Trinity Mirror는 "언론이 법정의 절차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열린 사법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라며 "새 법의 10번 조항인 언론의 자유에는 당연히 대중들이 정보를 접할 권리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균형이 맞추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들이 대법원 소송에 대한 정보와 그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며"법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사건과 그 일에 관련된 단체들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분야다"라

며 이번 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새 법의 시행은 또 법원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기자들의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기자인 사라 림브릭은 "나는 17년 동안 대법원의 공문서를 담당해왔다. 이번 일로 나와 동료들의 직업은 매우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아무런 협의 없이 문서를 열람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은 열린 사법의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런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법부의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Civil Procedure Rule Committee에서 시작된 것이고 단지 현행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법은 항상 공문서만을 공개한다고 정해져있었다"며 "공문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딸린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0월 7일자) □

범죄 관련 증거, 언론 공개 확대

검찰청(이하 CPS)은 범죄 재판 과정에서 CCTV의 자료화면이나 사진 등의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공공 검찰국(이하 DPP) 켄 맥도널드 국장은 편집장위원회(The Society of Editors)와 함께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맥도널드 국장은 "많은 검사들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서 CPS와 언론사 대표들 그리고 경찰협회는 자료들을 언론에 숨기기보다는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약을 갖게 됐다. 검찰이 법정증거로 사용한 자료들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은 언론에 공개된다.

- 지도, 사진(피고를 연행하는 사진 포함), 도표나 법정에서 제작된 다른 모든 서류
- 사건 이후 경찰이 촬영한 사건 현장 비디오
- 압수된 증거품(무기, 배심원이 확인한 의류, 운반된 마약, 훔친 물건들)의 비디오
-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터뷰나 발언의 발췌문들
- 범죄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나 사진
-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담은 CCTV 장면

한편 다음과 같은 자료는 CPS가 경찰 및 관련된 피해자, 증인, 피해자 가족들과 상의 후에 공개될 수 있다.

-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배심과 참관인들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본 비디오나 사진 중 피해자와 용의자가 같이 있는 것이나 피해자 혼자만 있는 것
- 피고, 피해자, 증인이 경찰과 나눈 인터뷰가 담겨있는 비디오나 음성자료
-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서

맥도날드 국장은 세미나에서 "이제는 비밀을 감추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라며 "이 규약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새롭게 발전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0월 21일자)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관련 부처간 충분한 사전조율없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8일자 2면)

내 용 :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 봐주기'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처리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삼성공화국' 파문의 불길이 국무회의까지 번진 셈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형식상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갑자기, '일부 부칙 조항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계열사 지분 불법보유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덕수 재경부 장관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설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두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자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게 설명하도록 했고, 이 위원장은 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안이 형식상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부결된 것과 같고, 잘해야 조건부 통과로 보면 된다"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건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각계 전문가 사이에 충분히 논의된 다음 통과의례로 다뤄지는데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재경부에서 뒤늦게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바람에 관련 국무위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한겨레신문은 2005년 7월 8일자 2면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관계부처간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재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칙 조항의 문제 지적에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동 법안 중 일부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하는 조건이 붙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차관회의 상정전에도 관련 부처간 최종 실무협의를 거쳐 이견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제안한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문

·본 문 : 본지 지난 6월 3일자 『부처사전조율도 안됐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관계부처간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재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칙 조항의 문제 지적에 설명을 하지 못했으며, 위 법안 중 일부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견 없이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조건부로 통과된 조항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합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토요일자 제외)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일부 부칙조항 문제 지적에…)과 같게하고 본문은 본문 활자체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 싣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2일자 2면)

내 용 : 〈한겨레〉6월3일치 '금산법,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견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조건부로 통과된 조항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타 대학에 재직중인 남편과 같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1. 주간 교수신문
2. 인터넷 교수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주간 교수신문 : (1) 『학계, 표절 관행 심각』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자 1면)

내 용 : (중략) ㄱ 교대 ㄱ 교수는 비슷한 시

기에 남편인 ㄷ 대학 ㅈ 교수와 같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ㄱ 교수와 남편인 ㅈ 교수는 같은 설문지를 각각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에게 돌려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 교대는 위 논문에 대해 6곳의 학회, 대학에 표절 여부 심사를 의뢰해 3곳에서 심사를 받아 '표절'로 판정하고 ㄱ 교수에게 '감봉 1개월' 조치를 내렸으나 ㄱ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후략)

(2)『같은 시기에 남편과 같은 주제 논문 발표』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자 3면)

ㄱ 교대 ㄱ 교수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설문 항목을 사용해 논문을 발표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논문은 2003년 초등과학교육지에 발표된 ㄱ 교대 ㄱ 교수의 '예비 초등 교사들의 환경 인식 조사'와 같은 해 한국지구과학회지에 발표된 대구 소재 ㄷ 대 ㅈ 교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예비 중등 교사의 환경 인식".

실제로 아내인 ㄱ 교수의 영문 초록이 남편인 ㅈ 교수의 영문 초록과 단 한 문장을 빼고는 같아 표절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 두 논문 모두 '환경인식 검사 도구'로 Kuhn과 Jack-son(1989)이 개발하고, 노경임(2000)이 번안한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 검사도구를 수정, 보완해 사용했다.

검사 결과도 총 21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6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후략)

인터넷 교수신문 : (1)『교수사회 만연한 표절문화』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1일자 1면)
내 용 : 〈주간 교수신문 보도내용 (1) 참조〉

(2)『학계, 표절관행 심각』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1일자 2, 3, 4면)
〈주간 교수신문 보도내용 (2)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주간 교수신문 2005년 7월 4일자 1면과 3면, 인터넷 교수신문 2005년 7월 1일자 1면과 2, 3, 4면에서『교수사회 만연한 표절 문화』,『학계, 표절 관행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ㄱ 교대 ㄱ 교수가 타 대학에 재직 중인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논문을 발표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논문의 영문 초록이 단 한문장을 빼고는 모두 같고, 이에 ㄱ 교대는 위 논문에 대해 표절여부 심사를 의뢰해 놓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논문에서 초록은 당해 논문의 기본적인 틀을 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다르다는 것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검사 도구는 같은 것을 사용했더라도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일 뿐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던 ㄱ 교수의 승진계약취소처분 및 징계처분취소청구에서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보도문

상기 기사에서 ㄱ 교대 ㄱ 교수가 남편의 논문을 베낀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2개의 기관에서는 표절판정을 하였으나,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학회 등에서는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여 표절여부가 확정된 바 없으며, 권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위반으로 취소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교

수신문' 인터넷 판 관련기사(2건) 본문에 첨부하여 2005년 8월 17일자부터 게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교수신문 :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7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교도소에 수감중인 신청인이 치료를 빙자하여 수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경남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일보 : 『진주교도소의 이상한 수감생활』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9일자 15면)
내 용 : 유죄 확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지병을 이유로 수감생활 중 평균 10일에 한번꼴로 외진을 나가는 등 이상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법집행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재소자는 지난 3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총 100여일 수감기간 중 지병을 이유로 지금까지 11회에 걸친 외래진료와 함께 한번 외래진료를 나오면 적게는 1일에서 길게는 5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소자가 열흘에 한번꼴로 외부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자 일각에서는 '진주 교도소가 특정인에게 남다른 배려를 하고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29일자 15면에 『진주교도소 이상한 수감생활』 제하의 기사에서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지병을 이유로 10일에 한번꼴로 외진을 나가는 등 이상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법집행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건강악화로 인한 적법한 집행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남일보는 지난 6월 29일자 15면에 『진주교도소의 이상한 수감생활』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진주교도소 특정 재소자가 지병 악화를 빙자하여 잦은 외래진료를 나가는 등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강 악화에 의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2005년 8월 17일자 1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진주교도소의 이상한 수감생활)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7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금품수수, 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05대구조정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신문 : (1) 『공금횡령 등 혐의, 대학교수 영장』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1일자 31면)
내　용 : 대구북부경찰서는 21일 ㄱ대 교수 ○(45)씨에 대해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씨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해 준 대가로 돈을 받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는 또 일부 여자 강사들에게 성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사학위 논문에 탈락한 모 학생의 투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2) 『상아탑 '도덕 불감증'』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2일자 31면)

전·현직 학과장이 포함된 같은 학과 교수들이 무더기로 금품수수,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1일 학생들에게 학점 등 편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연구비를 착복한 혐의로 경북대 전 교수 오모(45)씨를 구속하고, 같은 과 교수 4명을 연구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전임교수 재직 당시인 2000년 9월부터 1년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 인건비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 2000~2004년 소속 대학원 석·박사과정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뒤 따로 강의한 것처럼 속여 강의료 1천만 원을 챙기고, 출석·학점·시간강사 배정 등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과 교수 4명도 2001년 12월부터 1년간 대학원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1인당 100만~400만 원씩 모두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여자 시간강사에게 "학과강사로 추천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 강사에게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3년 5월에는 시간강사 수업 배정을 미끼로 "다른 사람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대신 빌려주라"며 모두 1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박사과정 논문 발표를 미끼로 자신의 지도학생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고 학회지에 논문을 실어주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21자 31면 『공금횡령 등 혐의, 대

학교수 영장』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북부경찰서는 ㄱ대 ○씨에 대해 연구비 유용, 성상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자 31면에서는 『상아탑 '도덕 불감증'』 제하로 '○씨는 전임교수 재직당시인 2000년 9월부터 1년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 인건비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리고 오씨는 여자 시간강사에게 학과 강사로 추천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 강사에게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3년 5월에는 시간강사 수업배정을 미끼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대신 빌려주라며 모두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교수는, 성상납과 금품수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오모 교수 성상납 등 일부 무혐의
・본 문 : 대구지검은 공금횡령 및 성상납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오모 교수 사건(본보 6월 21, 22일자 31면 보도)과 관련해 성상납 및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 1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2005년 8월 16일자 이전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공금횡령....)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오모 교수 성상납 등 일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노동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지침을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노동부가 '노조탄압 지침'』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13일자 8면)
내 용 : 노동부가 노동부 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직원 찬반투표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응지침'을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의 강력대응은 이미 정부부처내 다수의 기관들이 노조간판을 내건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노조전환 찬반투표 관련 대응 철저'라는 제목의 노동부장관 명의 내부 공문에는 이날 실시키로 한 노조 전환 투표와 관련, 상식을 벗어난 갖가지 지침이 담겨 있다.

우선 ▲투표소 설치 사전차단 및 투표소 봉쇄 ▲투

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 ▲부서별 방문투표 금지 지시 및 저지 등 투표진행 자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직원은 "투표에 참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전화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중략)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집단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의 투표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7월 13일자 8면에 보도한 『노동부가 '노조 탄압 지시'』 제하에서 '노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부에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며, '탄압지침'이라고 하였으나, 공무원 노조법 시행 전 국가공무원이 노조전환 투표를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인 바, 위 공문은 정당한 복무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전공노 불법집회 및 총파업 찬반투표 관련 정부 대응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응지침"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본 지침이 현행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복무관리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노조탄압 지침 관련 노동부의 입장
· 내 용 : 경향신문 7월 13일자 8면 『노동부가 '노조 탄압지침'』 제하의 기사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노동부에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으며, 공무원노조법 시행 전 공무원이 노조전환 투표를 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조전환 찬반투표 관련 지침'은 정당한 복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독자투고란에 2005년 8월 23일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입장을 밝힙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4일자 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노조위원장 시절 취업비리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부산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상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상일보 : (1)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도 입사 추천』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28일자 6면)
내 용 :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2~2003년 노조를 이끌었던 이모 전 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집행부 여러명도

취업 희망자의 입사를 추천한 사실을 잡고 금품수수가 있었는 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노조 간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취업비리 외 성질이 다른 1~2건의 추가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사·노사협력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한 신입사원 입사구비 서류와 면접 자료 분석과 회사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명의 노조 집행부가 많게는 수명씩 입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략)

(2)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어떻게 된겁니까"』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28일자 14면)

현대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7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사·노무팀 사무실에서 압수한 신입사원 입사 구비서류와 면접 자료, 노무관련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제10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입사를 추천한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대차 노조의 취업비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8일자 사설과 사회면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 위원장이 취업 희망자의 입사를 추천한 사실을 잡고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전 노조위원장은 입사 추천한 사례가 없으며, 입사비리에 연관이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의해 밝혀져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 지난 5월 28일자 사회면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도 입사 추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이○○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입사 관련 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상일보 2005. 8. 22.자 1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내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상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2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자 판결 (2005가합2739)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강OO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소재를 제공하여 피고 프로덕션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의 대상이 곧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프로덕션이고, 원고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며 원고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부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

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난 1992년 자신의 사연을 담은"여자를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이후에,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들이 모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여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으로 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한 모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2739 손해배상(기)
원　　고 : 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선 룡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문순
　　2.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
　　대표이사 김지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변론종결 : 2005. 8. 18.
판결선고 : 2005. 9. 22.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0.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7. 6.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그러한 사연을 내용으로 한 원고의 시집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문학수첩, 1994)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이하 피고 프로덕션이라 한다)은 원고의 삶을 소재로 하고 직접 원고를 출연시킨 "여자는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

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1996. 12. 14. 이를 방영하였다.

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문화방송 측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래보다 짧은 시간의 분량으로 편집하여 자사의 보험모집인들을 교육하거나 연수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보험사들의 보험모집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CD-ROM을 휴대하고 있던 노트북을 통하여 상영함으로써 생명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실제로 고객을 상대로 하여 자사의 보험상품 모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3. 12. 10.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PCA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630초 분량을 2,56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회사내부에서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프로덕션은 1997. 10. 16.부터 2004. 6.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이하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라 한다) 개인 및 회사들에게 635개를 14,85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여 왔고, 그 중 보험사들에게는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재로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를 기획하여 배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 9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먼저 피고들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다음으로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여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으로 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 더 나아가 PCA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 동의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판매한 행위는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험영업에 이용한 보험사들이지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여기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해야 하는바,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되기 위하여는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 자체에 기여를 하여야 하고,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거나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한 데 불과한 자 등은 저작자로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소재를 제공하여 피고 프로덕션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사

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의 대상이 곧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프로덕션이고, 원고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원고와 피고 프로덕션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들이 국내 30여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PCA 생명보험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PCA 생명보험 외의 보험사들이 구입한 것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이다), 또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허락한 것은 피고 프로덕션이 아니라 피고 문화방송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 프로덕션이 피고측 인터넷사이트인 imbc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장기간 게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원교육용으로 사용을 허락한 부분,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보험사들에 직원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까지 해 준 부분 및 이를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로까지 만들어 배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허락한 방송 외에 원고의 초상을 타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원고가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직원교육용으로 630초 분량의 콘텐츠사용허락을 한 사실, 피고 프로덕

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보험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여 이를 보험사들에 공급한 사실,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재로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를 기획하여 판매, 유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초상은 어디까지나 1996. 12. 14. 당시의 방송과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방송, 예를 들어 통상적인 재방송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등의 사정 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정도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보험사들에게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의 사연을 소재로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은 원고가 처음에 동의를 한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를 소재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책자로 제작한 부분도 또한 같다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을 소재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보험회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책자로까지 만드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이 보험사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보험사에게 허락하거나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피고 문화방송이나, 다수의 개인, 법인들, 특히 보험사들에게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피고 프로덕션이 위 보험사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험영업에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피고들은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원고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던 것이지만, 보험사들은 원고의 남편이 사망 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유족인 원고가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다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왜곡하여 보험영업활동에 사용하였는바,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것과 보험사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보험사들이 보험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가 개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라 할 것이고, 이 부분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방조하였다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3호증, 갑 5 내지 10호증, 갑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손해액에 관하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원고의 초상이 촬영된 경위와 방송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된 경위, 태양, 정도와 그 공개범위 및 그로 인한 피고들의 영업적 이익 등 이 사

건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은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2003. 12. 10.부터, 피고 프로덕션은 보험사에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2003. 4.(갑 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중 2003. 4.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지막으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였다) 이후인 2003. 5.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22. 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 명 중
판사 이 흥 주
판사 이 수 민 □

판결 2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다루어진다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자 판결 (2004가합4676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남○○(예명 : 유△△)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4. 6. 11.『신강균의 사실은』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작한 프로그램이 원고에 관한 허상을 밝혀 비방하는 것을 주된 보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원고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래 알려진 원고의 모든 경력과 재능이 사실은 허위였던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 피디(PD)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제작·보도함에 있어 원고와 그 소속 회사 사이의 내부적 갈등문제를 주된 소재로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취재에 협조한 원고를 속이고 원고 개인의 허상만을 드러내는 방송만을 제작함으로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위반하고,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취재방향의 변화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전반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언론사들의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한 경우에도 그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취지나 보도 목적을 속이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적극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서만 방송을 제작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피고 기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자 등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라든가 피고가 기존에 제작해 온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방송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이 원고가 처음에 의도한 것 역시 밝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취재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46767 손해배상(기)
원　　고 : 남 ○ ○(예명: 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우
　　담당변호사 이 정 호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김 혜 라
변론종결 : 2005. 9. 2.
판결선고 : 2005. 10. 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피고 제작의 뉴스 프로그램 방영 후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 보도를 방송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라는 예명으로 의류패션 등의 홍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경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몰에 원고의 이름을 딴 '유△△ 공화국'이라는 의류매장이 개설되면서부터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여 대중들에게 '20대 젊은 여성 사업가' '서울대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미국 유학 중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국내 독점수입계약 따낸 당찬 신세대 여성' '20대 여자 이사'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특히 2004. 3. 1. KBS 2TV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300억 원의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언하였다(위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 박차고 1,300억원 투자유치 성공한 유△△'라는 자막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나. 피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매주 금요일마다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왔는데, 2004. 6. 11.자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 및 기존에 원고에 관하여 다루었던 각종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에 대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측의 제보로 기획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기획사인 '△△21'과의 내부 갈등(부당계약 문제, 계속되는 월급 연체 등)을 폭로하고, 한편 '△△21'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원고가 더 이상 '유△△ 공화국'이라는 프랜차이즈 의류판매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계속하여 원고의 이름을 신뢰하고 '유△△ 공화국'의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취재에 응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방송은 '공인의 책임이 이렇게 큰 건지 미쳐 몰랐어요.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싶구요'라는 원고의 발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래 원고에 관하여 다루었던 신문, 잡지나 방송 등의 기사 및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원고가 오늘날의 유명 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고, 특히 위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300억 원의 해외자본유치에 성공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 방송 당시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현재는 모두 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결국 신문과 방송이 사실 확인 없이 경쟁하며 서로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그 소속 기획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획사와 연예인 약정을 맺고 있으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부당계약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마. 이 사건 방송에서 내보낸 인터뷰 장면 중 원고 스스로 '이사'의 직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거나, 1300억 원의 해외자본유치가 문서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관계자들의 요구로 언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해외자본의 유치가 성사되지는 않았고 원고가 독점 수입했다는 미국의 패션브랜드는 이미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 관한 허상을 밝혀 비방하는 것을 주된 보도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원고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래 알려진 원고의 모든 경력과 재능이 사실은 허위였던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 작업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고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한 부

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설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 방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주된 목적이 그 동안 언론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20대에 사업가로 성공한 신세대 스타라는 점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하는 보도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주로 공적 존재인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 영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전제된 사실관계인 '원고의 해외자본 1300억원 유치여부' '원고의 이사로써의 역할' 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표현의 정도에 있어서도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은 전반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언론사들의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 피디(PD)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제작·보도함에 있어 원고와 그 소속 회사 사이의 내부적 갈등문제를 주된 소재로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취재에 협조한 원고를 속이고 원고 개인의 허상만을 드러내는 방송만을 제작함으로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위반하고,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취재방향의 변화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한 경우에도 그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측의 제보로 기획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속 회사와의 내부갈등 문제를 폭로하고 더 이상 '유△△ 공화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보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방송 제작을 위하여 원고, 원고의 매니저 소외 김□ □, 원고가 소속된 기획사인 '△△21'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취재해 나감에 따라 원고가 '△△21'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원고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통역 등 실무적인 업무에만 종사하였으며, 위 '△△21'과 소위 '연예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등 등 종래 언론에 의해 알려져 있던 '신세대 경영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실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종전까지 언론사들에 의하여 왜곡 전달된 정보가 있다면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방송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원고나 '△△21'과 그간의 사업내용의 실상(특히 해외자본 1300억원 유치 부분)과 왜곡정보 형성에 대한 언론의 기여도 등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인터뷰 방향을 유도하고 취재를 집중하였던 사실, 나아가 피고의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성상 취재원의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대로만 방송이 기획될 수는 없고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서 이를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원고에게 미리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방송의 말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21' 간의 부당계약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21' 관계자의 반박 발언 역시 방송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취지나 보도 목적을 속이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적극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서만 방송을 제작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피고 기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자 등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라든가 피고가 기존에 제작해 온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방송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이 원고가 처음에 의도한 것(원고와 기획사 간의 부당계약 문제, 원고가 '△△21'과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점 등) 역시 밝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취재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제작·방송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상의 신용, 성명권, 초상권, 브랜드 가치를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가.,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취재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미국 판결

보도 대상자가 한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쓴 것이 원래 한 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의로 알고 한 것', 즉 '실질적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FREEDOM NEWSPAPERS OF TEXAS v. Conrado M. CANTU】

텍사스 주대법원
FREEDOM NEWSPAPERS OF TEXAS 등(피고 겸 상고인) 對
Conrado M. CANTU(원고 겸 피상고인)
2005년 6월 24일 선고.

텍사스 제4구역 항소심 재판장 Valdez 판사의 판결에 대한 상고임.

신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임. 피고의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법률적 판단 문제만 남아 있는 경우에,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선고하는 판결)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고,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를 함.

당원(텍사스 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함.

대법관 Brister:

Texas 주 Cameron 카운티의 전직 보안관이 Brownsville Herald 신문사와 2명의 전직 피용자(이하 "Herald"라고 부른다)를 상대로 "2000년도 선거 직전에 벌어진 후보자 토론에 관한 2개의 기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Herald 측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당원은 "실질적 악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이므로,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I

2000년 11월의 총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0년 10월 4일에 Cameron 카운티의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Brownsville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후보자들 중에는 보안관선거에 입후보한 민주당 측 후보이자 이 사건 피상고인 Conrado M. Cantu와 그의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 Terry Vinson이 있었다. 두 후보자는 약 30분간 발언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였다.

청중 한 사람이 이 토론내용을 녹음하였다. 약식판결기록에 나타난 위 녹음의 녹취록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은 "그 녹취록이 후보자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다. 토론 중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Cantu: 경찰학교에서 당신이 나의 교관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훌륭한 교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Los Fresnos 시의 경찰서장이라면 왜 사람들이 그를 경찰서장으로 선출하였을까 의문이 남는다. 그 곳에 나가 이웃 앞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중문화권자(bi-cultural)여서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봉사정신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 * *

Cantu: 나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나의 봉사정신 때문에 학교구역이나 카운티 다른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당신이 11월 7일 투표를 하러 갈 때 마음 속 깊이 진정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의 모든 납세자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Vinson씨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교관일 뿐 보안관이 아니다. 당신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보안관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행동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이중문화권자(bi-cultural)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철이 들 필요가 있다. 성장할 필요가 있다.

Vinson: 그는 자신이 이중문화권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는 우리 구역 사회에 동양인들, 필리핀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의사를 소통하여 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Cameron 카운티의 길거리에서 13~14년간을 일해 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해 본 일이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보고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중문화권자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장벽에 불과하다. 나는 이중문화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고,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고 함께 존경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 * *

Vinson: 나는 단짝주의(compadreism)를 참을 수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그 점은 사과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이 점 한 가지만은 보장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Herald 신문사는 Brad Pierce로 하여금 위 토론을 취재하도록 하였다. 그는 메모를 하였지만, 녹음은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의 기사는 편집장이 덧붙인 아래의 헤드라인과 함께 신문의 첫 페이지에 실렸다.

Cantu: "앵글로계 미국인은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수 없다".

2000년 선거: 민주당 후보가 자신이 히스패닉 혈통인 것을 강조하다.

Conrado Cantu는 수요일에 개최된 그의 정적 Terry Vinson과의 보안관 선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앵글로계 미국인은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Cantu는 Vinson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은 히스패닉 출신이고 주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관으로서 적격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Cantu는 그가 이중문화권자이기 때문에 더 나은 후보자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Vinson은 "이중문화권이란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장벽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믿는다"고 답변하였다.

두 명의 후보자는 '좋은 정부를 위한 남(南)텍사스 사람들'이 후원하는, 수요일에 열린 공공도서관에서의 토론회에서 30분이 넘는 시간을 팽팽히 대립하였다.

Cantu는 현재 자신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형사상 직권남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냈고, 그가 이 문제를 토론하려 했다고 말했으며, Vinson이 자기를 속이려 했다면서 그를 비난하였다.

Cantu는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antu는 "법집행을 3년 반밖에는 하지 못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안관에 적격자임을 강변하였다.

Cantu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지 못한다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우리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욕구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경력에서 보듯이 20년 이상 법집행을 하여 왔고 경찰훈련 교관을 지내 온 Vinson은, Cantu가 보안관 자격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이 없는 풋내기 경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Vinson은 "시간이 됐다. 나는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직원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나는 경찰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차이점이 많다. 문제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Vinson은 "보안관 부서를 재정비하고, 보안관 Omar Lucio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부보안관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단짝주의(compadreism)를 참을 수 없으며, 보안관 부서에 정직과 책임을 주입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Cantu는 "경찰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antu는 "우리 카운티에서 수많은 강도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Vinson은 강도문제도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마약을 몰아내야 하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자기라고 강조하였다.

그 기사는 다른 후보자들 간의 토론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다음 날 그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그 신문사 편집장인 George Cox는 그 기사에 대하여 Pierce와 대화를

하였다. Pierce는 Cox에게 "Cantu는 '앵글로'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기사의 요지는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날 아침 Cantu는 Herald 신문사 사무실로 찾아와 Cox에게 신문기사에서 "앵글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토론의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 Cox는 그 테이프를 들어보기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Cox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는데 동의를 하였고, Cantu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Pierce를 만났다.

다음 날인 2000년 10월 6일 토론과 관련하여 두 번째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기사 내용은 전적으로 다음과 같다.

보안관 후보자는 "인종문제는 이슈가 아니었다"고 말하다.

선거: Cantu는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중문화권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Conrado Cantu 경관은, 이번 주에 열린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 선거 토론회에서 "그의 정적이 히스패닉이 아니어서 보안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 그의 언급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인 Cantu는, 그의 선거캠페인에서 인종문제를 이슈로 삼을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가 Rio Grande Valley 출신이고, 그 지역 주민 대다수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Terry Vinson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Cantu는 "Rio Grande Valley의 주민들은 이중문화권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중문화권자이기 때문에 Cameron 카운티의 최고 법집행권자로서 주민을 대표할 최고의 후보라고 설명하였다.

Cantu는 '좋은 정부를 위한 남(南) 텍사스 사람들'이 후원하는 수요일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듣기에는 Vinson을 인종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젊은 농구코치이자 Cantu의 지지자인 Chris Patterson은 "Cantu의 발언 취지가 잘못 오해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atterson은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나는 Cantu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앵글로계 미국인은 보안관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은 Cantu의 말을 제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표현은 Cantu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그러나 Vinson은 "자신이 Valley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히스패닉 주민과 연결될 수 없다"는 Cantu의 말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Vinson은 "내 출신 성분 때문에 내가 히스패닉 문화와 소통을 하거나 연관을 맺을 수 없다는 취지로 들렸다. 그것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나를 솎아내려 하였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나는 무척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독립적으로 투표를 한 Henry Gonzalez는 "이 지역 주민의 90%가 히스패닉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는 아주 요점을 잘 짚은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여러 인종이 거주하고 있으며, 히스패닉계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antu는 "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내가 남 텍사스에서 자랐고, 주민들이 Cameron Park에 살던지 아니면 Valley International Country Club에 살던 지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앵글로계 미국인은 보안관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중문화권자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을 보호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까지 Cantu를 지지하고 있었던

Tracy Larimore는 "그가 앵글로계 미국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왜 Vinson은 히스패닉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Larimore는 "나는 '보안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히스패닉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가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으며, 이제 그는 이 점을 홍보하고 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Patterson은 "Cantu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를 단순한 경관으로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가 지역사회 젊은이들의 복지에 매우 관심이 많은 관대하고 자상한 사람이란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요일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Cantu는 보안관이란 직책에 대한 그의 에너지와 열정을 말했고, 반면 Vinson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였다.

Cantu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보안관이 된지 9개월이 지나 그는 Herald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Herald 신문사는 약식판결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Herald 신문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3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당원은 Herald 신문사의 상고를 받아들인다.

Ⅱ

A. Cantu와 같은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Herald 신문사가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거짓이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약식판결 단계에서 Herald 신문사는 '문제가 된 기사가 거짓임을 알고서 또는 진실인지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함으로써 보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법률문제로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음'을 부인하였다.

Herald 신문사는 약식판결 신청을 하면서 발행인, 편집장, Pierce와 Cox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진술자 모두가 기사의 보도 전에 그 기사의 부정확성이나 그 기사의 부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Cantu나 항소심은 이 선서진술서들이 약식판결 적용기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배심원들은 이러한 선서진술서의 신빙성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이 선서진술서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 것이 곧바로 반대 사실을 지지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Herald 신문사가 '악의 없이 보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약식판결을 하여서는 안 되는 반대증거를 제출할 입증책임이 Cantu에게 돌아간다.

항소심은, 신문사 측의 악의를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적시하면서 Cantu가 그러한 입증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 증거들에 대하여 당원은 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B.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antu의 주된 주장은 Herald 신문사의 첫 보도기사 헤드라인과 그 첫 문장에 나타난 단어를 그가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Herald 신문사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항소심은 "Pierce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후보자들의 발언을 들었고, Cantu는 '앵글로계 미국인은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의'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과 달리 Herald 신문사는 위 마지막 문장에 인용부호를 붙인 적이 없다. 후보토론회에서 Cantu가 한 말의 일부는 인용부호가 붙었지만, 이 문장은 인용부호가 없었다. Cantu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사 헤드라인에 사용된 콜론 부호는 인용부호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Masson v. New Yorker Magazine, Inc.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기자의 말을 말한 사람 본인의 말처럼 보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는 악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인용부호는 그 문장이 말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인용부호는 독자로 하여금 그가 '話者의 말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지 '글 쓴 사람의 의역이나 간접적인 해석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話者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모두 악의의 증거가 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메모에 의존하는 기자들로서는 종종 화자의 말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녹음에 의존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면 부족과 편집 방침 때문에 화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고 있다.

[1] 대신 대법원은, 재구성(변경)된 말이라도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화자가 실제로 말한 단어(문장이 아님)라고 오인하게 하고, 그 재구성(변경)이 실질적이라면' 악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원이 최근에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의 독자 기준'은 주관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맥 속에서 그 전체 기사를 읽는 일반적 지식을 가진 통상의 독자'를 가정하여 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3가지의 명백한 단서를 살펴보면, 일반 독자들은 'Herald 신문사가 Cantu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기보다는 해석을 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첫째, 일반 독자들은 '인용문구가 Cantu의 말 중 8개에는 붙어 있지만, 문제가 된 말에는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둘째, 일반 독자라면 그 기사의 특정 형식, 즉 각 후보자가 한 말의 요약이 첫 문장에 나오고(예를 들어 첫 번째 기사의 1, 6, 8, 11, 14번째 문장) 그 요약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부호가 붙은 1~2개의 문장이 뒤이어 나온다. 글의 문맥으로 보아 통상의 독자들은 인용부호를 붙인 문장의 앞에 쓰여 진 '기사의 첫 헤드라인과 첫 문장'이 Cantu의 말을 바꿔 쓴 것이란 점을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개의 기사 모두 명예훼손적인 보도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Herald 신문사의 2번째 기사는 "나는 '앵글로계 미국인은 보안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Cantu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2번째 기사 내용 중에는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떤 참가자들이 듣기에는 Cantu가 인종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는, 그가 말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말했다기 보다는 묵시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당원은 Cantu가 명예훼손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는 2개의 기사들의 전체적인 문맥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일반적인 독자들이라면 Herald 신문사의 기사가 Cantu의 말을 바꿔 쓴 것이거나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바이다. 따라서 'Cantu가 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Cantu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만으로는 '신문사의 악의'에 대한 입증으로 부족하다.

C. [3]물론 고의로 공적 인물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인용부호 안에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간에 명예훼손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한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쓰는 것은, 만일 그 풀어 쓴 것이 원래 한 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과 Gertz v. Robert Welch, Inc. 사건에서 말하는 '고의로 알고 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Cantu는 Herald 신문사가 '자신이 이중언어자이고 이중문화권자'라는 말을 '인종과 민족'에 관한 말로 바꿔 쓰면서 결과적으로 고의적이고도 실질적인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원은 약식판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Cantu의 주장, 즉 그가 '이중언어자이고 이중문화권자'라는 점만을 의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진실하다고 가정한다. 더 나아가 당원은 '통상의 배심원이라면 그 기사를 보고 Cantu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을 것'과 '두 가지의 차이는 실질적인 것'이라는 Cantu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곧바로 '신문사의 악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Cantu는 '신문사가 고의로 그의 발언을 왜곡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그 내용이 부적절하여 언론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도저히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애매모호한 사실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오역을 하였다고 하여 오역한 사람에게 악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Time, Inc. v. Pape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하였는데, 거기서는 문제의 단어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었지만 그 의미는 모호하였다. 그 사건에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관한 미국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시카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Time 잡지사는 위원회의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보고서에 나타난 "주장된"이란 단어를 생략한 채 그 주장을 사실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사건을 "주장된" 것으로 열거하였지만, 사실상 그 보고서는 그 주장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터무니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였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을 "경찰 가혹행위에 대한 11가지 전형적인 사건에서 주장된 사실들"이라고 요약하였는데,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어떤 가혹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사건"이 될 수 없다. 그 보고서는 각 사건의 진실성 여부는 법원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가혹행위에 대한 다른 증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후 문맥에 비추어 '시카고 사건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암묵적으로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Time 잡지사가 "주장된"이란 단어를 누락한 것은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찬 서류에 대한 수많은 가능한 합리적 해석 중 하나를 채택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한 의도적인 해석의 선택은 잘못된 생각을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New York Times 판결 하에서 "악의"에 관한 배심원 문제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주장된"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악의' 문제를 배심원 앞으로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단어의 문맥과 그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비본질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아닌 '해석이나 판단에 대한 오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책임 기준을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에서 토론회에서의 Cantu의 발언 역시 애매모호함으로 가득하였다. Cantu는 누구나 이중언어자나 이중문화권자가 될 수 있듯이 그의 발언이 인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 토론에서의 문맥을 보면, Cantu는 자신을 그의 정적과 구별시키고 있다. Cantu는 그의 증인진술서에서 '자

신은 토론상대방이 히스패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지를 몰랐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이는 적어도 그가 '이중언어자'란 단어를 후자의 의미보다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Cantu는 왜 그의 토론상대방이 Rio Grande Valley에서 Cantu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법집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중문화권자가 아닌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Cantu의 상대방은 'Cantu의 발언이 인종이나 민족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명백하다. 상대방의 해석 때문에 Cantu의 발언 자체가 애매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Cantu는 토론의 나머지 시간 동안 상대방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토론한 날부터 지금까지 Cantu의 설명, 즉 '그는 단지 출생장소, 모국어 및 대다수 주민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그의 설명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하다. 출생장소와 모국어가 필연적으로 인종적 특성이나 민족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이런 것들이 그런 특성의 대용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왔다.

Cantu는 Herald 신문사의 첫 보도기사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판단기준은 '그 요약보도가 Cantu가 말한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민족적 유대나 인종적 편견에 호소하는 것은 항상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관 Peeples가 배심원 요지의 문맥과 관련하여 이러한 호소를 분석하면서 말한바와 같이, 교묘하게 민족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교묘하게 뭉뚱그리려는 계책에 보상을 주는 것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헤드라인은 만일 후보자들이 명백하게 민족적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거리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은밀하게 민족적 감정에 호소한 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처벌함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조한 후보의 주장이 인종적 감정에 호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후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유권자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더욱이 유권자들과 그들의 대리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공화정부가 자신이 봉사하는 국민을 반영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맥은 실질적으로 그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후보자의 인종적 배경의 차이는 토론에 참석한 자들에게는 너무도 명백하였고, 당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Cantu가 자신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말들은 때때로 은밀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말들과 유사하다. 더욱이 이력(경력)은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의 구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청중은 이력의 문제이다 - 선거기간 중 이루어진 통계조사에 의하면 Cameron 카운티 주민의 84.3%가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사람들이었다. 만일 Cantu의 유일한 목적이 지역적 유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덜 애매모호한 단어를 선택했어야 했다.

Cantu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달려있지만, 'Herald 신문사의 보도기사가 Cantu가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헌법상 법관에게 주어져 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당원은, 토론에서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Herald 신문사의 보도기사는 토론회에서 Cantu가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판시하는 바이다. 따라서 보도기사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 악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D. 항소심은, 실질적 악의에 관한 사실 문제를 형성

한다고 믿고 있는 4가지의 정황증거를 열거하였다.

[4] 첫째, Cantu는 그의 증인 진술서에서 Herald 신문사 기자들이 말한 여러 개의 법정 외 진술, 즉 신문사 임원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자세히 적었다. 이러한 소문이 진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지 '나쁜 의도'를 입증할 뿐이지 '실질적인 악의'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배심원들은 피고 측의 "혐오, 심술, 나쁜 의도, 해칠 의사"를 들어 피고 측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정 관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압력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악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실질적 악의는 진실에 대한 피고의 태도에 관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일련의 거짓 주장으로 드러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면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편견 없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둘째, 항소심은 '신문사가 Cantu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토론회의 녹음테이프를 받고 난 후에도 그 내용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는 증거로 두 번째 기사를 지적하였다. "'공적 인물이 자신에게 해로운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다른 해명을 하였다는 것'을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정치계에서는 "그러한 부인이 너무 흔한 것이어서, 양심적인 기자로 하여금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Herald 신문사의 신속한 후속기사는 Cantu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과 그의 지지자들의 의견을 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악의가 없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번째 기사에 실린 Cantu의 말은 원래 한 말만큼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사의 내용 자체는 실질적 악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6] 셋째, 항소심은 Cox가 첫 번째 기사를 읽고 던진 질문들을 들어 '신문사는 그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악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초점은 편집과정에서의 피고의 마음상태에 맞추어야 한다. 신문이 인쇄되고 배포된 후의 사건에 관한 증거는 쟁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7] 마지막으로, 항소심은 '기사를 다루는 Herald 신문사의 방법을 비판하고, Cantu에 관하여 편견을 가진 보도의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확인한' 전문가 저널리스트의 의견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악의라 함은 피고의 정신상태에 관한 것이데, 그 전문가는 그 방면에는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었다. 또한 그 전문가의 의견은 '보도된 기사 그 자체'와 '이미 토론된 정황증거'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 증거가 증거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의 의견은 "'그 기사들은 Cantu가 한 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신문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 * *

"정부활동에 대한 뉴스의 대부분이 보도, 연설, 기자회견 등에 대한 설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활동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 요약만을 제공하는 수많은 전통적인 언론 및 방송사에 의존한다. 그 결과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대로 보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의 요지를 걸러 추출하거나 내포한 뜻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출처에서 나타난 단어들을 그대로 완전하게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발행인은 불가피하게 한정된 언어로 수많은 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건국 이래 정치후보자들은 '이러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노골적이고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평하여 왔다. 그러나 헌법상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

당원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로서 'Herald 신문사의 기자는 Cantu가 말한 내용의 요지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약식판결의 요건은 성립된다. 따라서 Herald 신문사의 기사에 있는 오류는 '과실'은 될지언정 '실질적 악의'는 되지 않는다. 당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Cantu의 청구를 기각한다. □

출처 : Media Law Report Vol.33 No. 37, PP.1907 ~ 1916
번역 : 윤 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독일 판결

반론보도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

해당조문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출판법 제11조

판결요지

1. 반론보도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주장이 보충이나 제한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 사실을 오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주 상급법원 뒤셀도르프(Dusseldorf) 2004년 9월 29일자 판결 - 15 U 118/04

사실관계

원고(Verfugungsklager : 法定原告, 이하에서는 원고로 통칭함)는 경찰서장이자 주택임대인이다. 피고(Verfugungsbeklagte : 法定被告, 이하에서는 피고로 통칭함)는 일간지 "R"을 발행하고 있다. 주택관리 및 청소업체를 경영하는 W부인이 원고를 고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70조에 의거하여 중간에 중단된 수사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다.

2004년 3월 27일에 일간지 "R"의 지방판 K의 1면에 "원고가 여자 임차인이 사망한 후에 그녀의 유산관리인의 동의도 없이 다른 경찰관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그녀의 주택에 출입을 하며 여러 가지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으며, 특별한 관리를 받는 범죄기록철을 열람하여 임차희망자들을 몰래 조사하였다"라는 상세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또한 신문은 "나는 모든 사안을 직업적 시각으로 본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특징짓는 문구의 기사를 거듭해서 실었다. 물론 원고는 범죄기록철에서 자신의 미래의 잠재적인 임차인들을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2004년 3월 29일에는 일간지 "R"의 지방소식란 M에 "이웃사람들로부터"라는 제목으로 3월 27일자 신문기사 중 "나는 모든 사안을 직업적 시각으로 본다"라는 제목만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시 실렸다. 이 신문기사는 3월 30일에 "이웃사람

들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사안이 변하지 않은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실렸다.

원고는 2004년 3월 30일 피고에 대하여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2004년 4월 5일에 원고는 또다시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2004년 3월 31일 지방판 K에 "검찰이 정보의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수사하다"라는 제목으로 검사 K가 원고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신문에는 원고가 특별한 관리를 받는 범죄기록철을 열람하여 제3자의 비밀을 알아내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과 주 정보보호감독관이 그 서류를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원고는 2004년 4월 22일에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공식적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년 4월 26일에 이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원고는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장들, 즉 원고가 주택에 몰래 침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갔으며, 특별한 관리를 받는 범죄기록철을 열람하여 의심가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철에 있는 전과자들을 조사하게 하여 미래의 주택임차희망자들을 조사함으로써 범죄기록철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신문기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법원의 중재 없이 반론보도의 게재에 대하여 가처분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희망한 반론보도기사의 내용에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표현이 있었으며,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형법상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신문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형사고발로부터 제기된 비난, 즉 원고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2004년 3월 30일자 반론보도의 내용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기사내용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보도 때문에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경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2004년 3월 30일자 반론보도내용을 출처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법원은 2004년 6월 23일자 판결로 2004년 5월 4일의 가처분청구를 항목 I.3과 I.4와 관련해서만 인정했다. 이 외에도 주법원은 피고의 가처분조치를 취소하고, 관련법을 근거로 제출된 가처분청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즉각 항소하여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임차희망자들을 수사한 바가 없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사에 실린 주장이 완전히 허위의 사실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 반론보도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법원이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원고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보았는지 또는 경찰의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가 아니라,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조사를 남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결정이유

원고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출판법(이하는 주 출판법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장은 가처분 조치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과는 별도로 적법하다. 이는 주 출판법 제11조 제4항 제3문이 가처분조치규정의 적법한 적용은 청구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확신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안판단이 배제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가처분조치규정을 근거로 한 신청서에서 항목 I.3과 I.4에 대한 명백한 반론보도문의 게재규정과 그에 기인하여 창설된 주 출판법 11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청구권의 소멸은 서로 모순된다.

원고에게 반론기사의 게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기사를 게재할 의무는 주 출판법 제11조 제2항 a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보도청구권과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은 반론보도기사를 통해 당사자가 - 원고의 관련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공청회 석상에서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중에게 변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언론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청구권은 공공의 의사형성에 대해 현대의 언론이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출판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독립기구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어떠한 상황을 보도할 때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기회가 차단되어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유용하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법적 형태는 알려진 바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법원이 심사를 할 때 본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원고가 주 출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실주장을 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어떤 사실에 대한 반론보도는 최초기사가 공표되었을 때 알려진 사실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이다. 특히 허위의 반론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초보도의 허위성 또는 본안소송에서 검증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청구에 대한 규정적용과 관련한 반론의 진실성이 궁극적으로 심사될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는 단지 진실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 반론보도는 바로 "거짓의 확증증명인"을 받은 경우, 명백하게 법원에 의해 허위성이 밝혀지는 경우 또는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을 오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지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뮌헨 주 상급법원, NJW-RR 1999 S. 386 [387]). 어떤 주장이 보충이나 제한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사실을 오도할 위험성이 존재하고(Burkhardt, in: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5. Aufl. 2003, Kap. 11 Rdn. 130; 또한 Sedelmeier, in: Löffler, Presserecht, 4. Aufl. 1997, § 11 LPG Rdn. 64 참조), 그러한 사실을 오도하는 행위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를 통해 조그만 변화를 가하더라도 없어지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시각으로는 허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잘못 추론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원고는 임차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 중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와의 인터뷰에서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사는 원고에게 제기된 형사고발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2004년 3월 30일 일간지 "R"의 지방판 M에 게재된 "A가 범죄기록철을 이용하여 잠재적 임차희망자들을 수사했습니까?" "예. 인정하는 바입니다"라는 인터뷰 진행과정이 사실 그대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옳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원고와 신문사 편집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살펴볼 때 어느 주장이 옳

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논쟁거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화인터뷰는 있었고, 원고는 2004년 3월 30일의 그가 스스로 작성한 반론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기 드문 개별사건에서 경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범죄행위의 의심을 가졌다.

원고에게 수차례 범죄기록철을 몰래 봤다고 전화인터뷰에서 말한 사실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내용의 반론기사를 허용한다면, 편견 없는 일반 독자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에 사익을 목적으로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 라는 견해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원고가 2004년 3월 31일 게재를 희망했었던 반론보도의 내용도 비슷한 경우이다. 원고는 특별히 관리되는 범죄기록철을 몰래 조사하여 제3자의 정보를 알아냈다고 그를 비난한 신문기사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비난은 그에 대한 형사고발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경찰서에서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조사하도록 한 행위로 형사고발되었다. 신문기사에서 틀린 내용은 기껏해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 특별히 관리되는 범죄기록철을 몰래 봤다는 부분이다. 물론 이는 경찰의 전자정보시스템 내에서는 그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는 ① 구체적 내용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이, ② 은밀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③ 임차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필요한 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정보취득을 한 행위로 고발된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자는 여기서 문제가 된 보도가 완전히 허구이고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사고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언론이 강조함으로써 대중들은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만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반론보도기사를 게재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의 임차희망자에 대한 사적 정보취득행위가 공무 중에 공무원은 업무상의 특권을 이용한 개인정보접근을 금한다는 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의 정보비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위경찰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비밀보호의 명백한 위반에 대해 공중이 가지는 이익은 원고가 가지는 권리인 비교적 사소한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소하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원고는 청소년 범죄의 혐의가 있는 17살의 여성 임차희망자에 대해서만 경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러한 진술은 새로운 공격수단으로써 이미 민사소송법 제3531조 제2항에 따라 배제되었다. 1심에서 원고가 경찰정보시스템을 사용한 행위는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되어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4년 3월 30일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요구할 때, 드문 경우지만 그가 사적 목적으로 경찰정보시스템을 사용한 다수의 사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한 보기 드문 개별사례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최초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게 된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경찰정보시스템 대신 경찰범죄기록철에 대한 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은 확실히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문기사의 부정확성은 의미가 크지 않고, 반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인

정하는 경우 독자들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그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신문기사가 표현하고자 한 본래의 의도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방식의 개인정보비밀 침해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신문보도가 의미하는 사건의 개요가 잘 드러난다. 허가되지 않은 사적 조사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산자료목록을 사용했는가는 광범위한 대중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개인정보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비난받지 않았고(항목 4),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지 않는(항목 3) 인상을 자아내는 표현이 관련된 부분에서만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원고가 반론보도기사를 작성하여 이러한 표현(이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을 의도했다면 원고의 반론보도에 대한 기대는 법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을 오도하게 되는 반론보도의 형식은 반론기사를 게재하고자 하는 희망과 모순된다.

피고는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진상을 규명하는 기사를 작성하든지 또는 원고의 상이한 반론보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진실과 허위에 걸쳐져 있는 반론보도의 긴장관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이의제기방법이 너무 광범위하다 관점 하에서 토론되어진다.

실제사건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보다 장황한 해명을 필요로 할 때, 당사자에게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의 의무와 함께 진상에 대한 편집기사가 같이 게재될 수 있을 것이다(Wenzel/-Burkhardt, Kap. 11 Rdn. 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대해 반론보도를 조절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그 범위가 너무 넓게 확대될 것이다.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신청하면 기각될 위험성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출처 : AfP 36. Jahrgang Heft 4 - 2005 SS. 368 - 370.
번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사례

보도대상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다면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불만처리위원회는 John Redwood가 Daily Mirror 지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이 지난 2005년 4월 2일 보도한 "그는 사람이 아니다... 투표하지 말라"라는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조 "정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자는 위 신문의 보도가 많은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만신청인이 자선사업에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 1999년부터 불만신청인이 니키 페이지 양과 간통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판사가 불만신청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보도한 것 Shadow cabinet 임원들에게 대해 헐뜯는 발언을 했다는 것 등을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또 위에 언급된 기사에서는 불만신청인의 아내가 선거 전에 불만신청인을 비판하는 공개편지를 지역 신문사에 보냈다고 전했다.

불만신청인은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교육기금을 정기적으로 낸 것과 British Legion에 1년에 한 번씩 자선기금을 냈다는 것을 은행 서류로 증명했다. 또 불만신청인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지역 단체도 도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 신문은 작성된 기사가 주요 정치가의 전 아내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 뉴스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위 신문은 그 편지들의 주장(논란이 되는 모든 부분들이)은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의 전 아내가 말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독자들에게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위 신문은 기사를 보도하기 전 Conservative Central Office를 통해 불만신청인과 접촉을 했고 답변으로 보내준 일반적인 의견을 기사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기사에 불만신청인의 자선 사업에 관한 일은 그의 전 아내가 주장한 것이라고 명확히 나타나 있지만, 불만신청인은 이것에 상반되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위 신문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위원회는 기사에 나타난 주장들이 표현된 방식을 보나, 위 신문이 불만신청인과 접촉해 의견을 얻은 정황으로 보나 신문사의 사과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문사에서 주석으로 불만신청인이 페이지 양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 및 Shadow Cabinet 멤버들을 헐뜯는 발언에 대한 반박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제의했다는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

위 신문은 보도 전에 Conservative Central Office에 자세한 기사내용을 제공하면서 불만신청인의 입장 또한 보도하려 했다. 비록 전 부인의 주장보다는 게재된 것이 적었지만 불만신청인의 반대 입장은 보도됐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위원회는 독자들이 레드우드 부인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그러므로 제1조 "정확성"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호주사례

범죄 용의점이 있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Council of Official Visitors(정신질환자 옹호단체)의 주디슨 왓슨 박사와 Western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의 수석 정신과 의사인 로완 데이비드 박사가 The West Australian 지에서 2005년 3월 16일 발간한 두 기사에 대해 낸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위 신문이 제1면에 보도한 "나체의 행인이 2명을 죽인 용의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마가렛 리버 지역의 한 여성과 그녀의 4살배기 딸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또 살인용의자로 지목된 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족(親族)임도 밝히고 있다. 기사에는 사건 이후 주위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벌거벗은 남자의 사진이 포함됐다. 그 사진에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름과 그가 살해당한 2명의 친족이라는 주석이 붙어있다. 한편 두 번째 기사 역시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가 살인용의자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 18일, 신문사는 사진 게재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항의 편지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 편지들과 함께 당일 신문에는 전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의 동일한 사진이 게재됐다.

불만신청인들은 살인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이름을 기재한 것과 그의 정신질환 내력을 기재한 것 그리고 그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불만신청인들은 그 남성의 사진이 공개됨으로 해서 남성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민신청인들은 남성의 정신질환을 불필요하게 강조함으로서 신문을 읽는 독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The West Australian 지는 사진의 게재 여부를 무모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수석 편집장들과의 오랜 토론 끝에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는 대중들이 목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은 뉴스가치로 따져볼 때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남성의 정신질환은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는 해당 기자가 정신질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고, 독자들의 비판 편지들을 게재함으로서 반대 입장에도 비중을 두었다고 주장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는 불만신청인들과의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호주신문평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중재에서 The West Australian 지는 데이비슨 박사에게 정신질환 환자와 정실질환 이슈에 관한 언론의 신중한 처리방법을 위해 1000자 이내로 신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The West Australian 지의 신입직원 감독관과 함께 신입 기자들을 지도할 기회도 제공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박사와 왓슨 박사는 The West Australian 지의 요청을 거절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의 중재 노력은 불만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진실하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며 독자의 편지를 지면에 실은 것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사와 이틀 뒤의 기사에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 등을 금지하는 호주신문평의회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만신청인들의 불만을 인정한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주성영, 오마이뉴스에 16억 소송 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 의원은 인지대로 615만 5천 원을 냈다.

주 의원은 소장에서 "〈오마이뉴스〉의 허위 기사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지장 및 손해를 입었고 명예와 인격을 훼손당했다"며 "오 대표와 기자 등 7명과 윤정원 대구여성회 사무국장 등 모두 8명이 각각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성적 폭언의 당사자는 동석한 검사임이 밝혀져 검찰이 공식 사과했는데도 〈오마이뉴스〉가 계속 왜곡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9월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대구지검 간부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오마이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 의원이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주성영 의원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명예훼손된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16억 원이란 소송금액은) 소송 당사자가 8명인데, 각각 2억 원씩 8명으로 해서 16억 원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일

"사실과 다른 의혹보도 명예훼손 해당 손배"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의혹이 사실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신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비리의 고발을 생명으로 하는 시사보도의 기능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14일 신부 Y씨가 KBS와 당시 '추적60분'의 담당 PD 홍모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천 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판결 뒤 첫 방송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름 및 성당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일간지가 보도하고 시민단체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에서 영문 이니셜과 성당의 전경이 방영됐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접적으로 '원고가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식으로 방송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제목이 '신의 이름을 더럽히다-교회 내 성폭력'으로 돼있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성추행 장소로 지목한 욕실을 보여주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등의 구성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암시하거나 간접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반론 차원에서 경찰이 취재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취재하고 원고 측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취재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뉴스와 달리 신속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Y 신부는 2003년 3월부터 지방 모 성당 부설 유치원에서 원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04년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아동 측의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KBS 2TV '추적60분'은 피해아동과 이들의 보호자, 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의사 등을 취재, 2003년 7월26일 Y 신부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했고, Y 신부는 "사실무근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 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방송PD연합회 이강현 회장은 "유력인사의 비리와 의혹에 대한 보도는 믿을 만한 상당한 여지가 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용인돼야 한다"며 "특히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5년 9월 14일

<조선> "귀족 현대차 노조" 보도, 항소심서 패소
법원, "1천 만 원 지급" 판결…노조 "오보 인정 환영"

법원이 지난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당시 이를 '배부른 투쟁' 등으로 묘사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가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진행해 승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현대자동차노조가 지난 2003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돼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됐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의견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현대차노조)가 제공한 것처럼 느끼게 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慰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3년 7월 현대차노조가 주5일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자 〈현대차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설 등에서 "평균임금이 5400만 원인 대기업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보도했으며, 파업 타결 직후인 8월 초에도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추월〉 등의 기사에서 "현대차 노동자의 연간 휴가일수가 선진국들보다 많은 결정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차휴가가 12일이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는 △실제 과로사한 노동자가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제수당을 모두 합쳐야 겨우 5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월차 휴가를 합친 국내의 22일(2년차 노동자)은 ILO 최저기준인 '3주 이상'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며 모두 7건의 기사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모두 2억10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연말 1심 판결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상 오보에 해당하나 공익성이 강한 대규모 노조인 현대차노조라면 이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현대차노조 장규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지극히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마녀사냥 식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2005년 10월 19일

"MBC의 유밀레씨 보도, 공적 비평에 해당"

성공한 여성기업인이자 방송인으로 널리 알려졌던 유밀레 씨(28)가 MBC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0일 유밀레 씨가 "비방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 대한 MBC 보도는 공적 비평 영역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나 보도내용 전반을 고려할 때 보도 목적이 원고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 행태나 선정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에 대한 피고의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취재원인 자신의 승낙 범위를 넘어선 사실들을 보도해 사생활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인에 대한 방송은 예상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방영해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며 MBC가 취재원인 자신과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유 씨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2002년경 자신의 이름을 딴 '유밀레 공화국'이라는 의류매장을 개장한 후 각종 언론매체에 '서울대를 자퇴한 20대 젊은 여성 사업가', '1300억 원대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독점 수입계약을 따낸 당찬 여성' 등으로 소개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유 씨는 그러나 2004년 6월 MBC의 보도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에 대한 언론의 선정주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신강균의 사실은'에서는 유씨가 '이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와도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약정계약을 맺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머니투데이 2005년 10월 10일

조선일보 비방신문 100만부 배포 '조아세' 회원 3명에 벌금 21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허위사실 적어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李炳世) 판사는 26일 '조아세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조선일보사를 비방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조아세)' 전 대표 임현구(45)씨와 전 운영위원 김창수(46), 이경섭(44)씨 등 조아세 회원 3명에게 벌금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아세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를 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2002년 8월 31일부터 추석연휴를 거쳐 10월까지 전국의 귀성객 등에게 허위내용이 담긴 '조아세 신문' 등 100만부를 배포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 등은 당시 '조아세 신문'에 ▲조선일보사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고, ▲2002년 월드컵 때 미국의 쇼트트랙 선수 오노를 빗댄 안정환의 골 세레모니에 대해 반미감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못 본 채 무시했다고 게재했다.

또 ▲조선일보사가 5공화국 7년 동안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결국 1위로 뛰어올랐고, ▲코리아나 호텔 신축 때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를 조아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아세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한 의견, 논평"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게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 ▲안정환의 골 세러모니와 같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바꾸고 ▲보안사 안가 부지 가격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50억 ~ 80억 원에 해당한다는 월간 말지 보도내용을 '당시가격으로 50억 ~ 80억 원이었다'고 바꿔가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조아세의 기본 목적, 설립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비방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2002년 10월 26일자 조선일보 '독자와의 대화' 면에 "조아세 회원들은 신문을 훔치고,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한다. 조아세의 활동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김홍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발행 비용에만 2억 원이 소요되는 활동의 자금 출처가 공개되지 않았고, 엄청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기사 역시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05년 8월 27일

"언론보도 과장 섞여도 진실이면 적법"

언론 보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 된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동영)는 25일 군인공제회가 "S영농조합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보도한 KBS와 해당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파기의 궁극적 원인은 군인공제회가 S영농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 단가를 정한 뒤 이를 강요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가 원고를 비난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가 일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측면이 있지만 내용으로 볼 때 진실성과 공공성이 존재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언론기관은 공공법인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감시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6월 S영농조합과 "5% 이상 가격변동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국산 두부콩 납품계약을 맺은 뒤 콩값이 떨어지자 "단가를 낮춰 수정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뒤 S사가 불응하자 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KBS가 올 2월 9시 뉴스 등을 통해 '계약 일방적 해지'란 제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군인공제회가 농민 입장은 아랑곳없이 자신들 잇속만 채우고 있다"고 보도하자 "S사가 수정계약 체결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고 S사는 영리법인일 뿐 농민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2005년 10월 25일

여야의원들 "포털도 언론 중재대상에 포함돼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를 지적하며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7월28일 신문법과 함께 발효된 언론중재법은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 대상에도 빠져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29일 언론중재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이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에 비해 훨씬 방문자 수가 많은 데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지 않아 오프라인 신문에서는 정정보도등으로 피해가 구제돼도 포털 사이트들이나 신문사 닷컴에서는 정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선거법)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매체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의 윤원호 의원도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 가운데 27건이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언론중재 대상이 아닌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이 13건 이었다"며 법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파급력 등의 면에서 어떤 매체보다 영향력이 큰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언론중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면서 "신문법의 개정 없이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재홍 의원은 "반론보도·정정보도 청구사례 9건을 분석한 결과 단 1건만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기사' 형식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했다"면서 "언론중재법 15조 3항을 개정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등의 제목을 단 관결문을 게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도 "원문을 수정하더라도 여기저기 유포된 기사를 하나씩 찾아서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인터넷 뉴스 유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8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언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매체가 6시간 안에 소명문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그린박스제' 도입 방안에 대해 "해당자의 거짓말과 변명에 무력하게 될 우려가 있어 언론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비판하는 한편 "인터넷언론 전담 중재부를 신설하고 24시간 당직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여 동안 500% 이상 급증했다"면서 "인터넷 공간의 기사는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수정하는 동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와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과 박형준 의원도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바꿀 것을 주장했으며,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이른바 '개똥녀' 사건을 예로 들며 "쌍방향성, 지속성, 익명성 등의 속성을 지닌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된 기준과 세부적 지침, 그리고 중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신문법을 제정할 때 인터넷신문의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언론중재위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단 조금 더 시행해본 뒤 문제점을 파악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2005년 9월 29일

한겨레신문 상대 10억 손배소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4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받은 돈의 일부가 손 지사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최악의 보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존재하지도 않은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려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어낸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번 사태를 한나라당과 본인에 대한 의도적인 핍박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본인과 한나라당이 입은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한겨레신문 발행인등 5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5년 11월 6일

위원회소식

신임 중재위원 10명 위촉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설된 서울 제6중재부 위원과 9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후임 중재위원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05년 9월 2일부터 2008년 9월 1일까지 3년이며, 소속 중재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제2중재부 : 고 승 우(한성대 교수)
- 서울 제5중재부 : 조 인 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 효 봉(변호사)
  임 연 택(전 KBS 취재주간)
  이 기 중(전 전자신문 상무이사)
- 서울 제6중재부 : 박 정 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 충 웅(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 동 호(전 중앙일보 공익사업이사보)
  한 부 환(변호사)
  조 수 정(변호사)

2005년도 상반기 내부 회계감사 실시

200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가 지난 8월 26일 실시됐다. 전세봉(서울 제4중재부), 박충선(대구중재부) 감사는 위원회의 실행예산 모두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물품 및 자산이 적정하게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언론중재법 시행 초기인 만큼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통한 위원회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위원회, 국정감사 받아

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조준희 위원장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 등 조정·중재 대상에서 제외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시행 후 달라진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다.

사무처 체련대회 가져

지난 10월 14일, 사무처 직원들의 체련대회가 열렸다. 서울 사무처 직원들은 시립창동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이뤄진 배드민턴 시합과 남자 직원들의 박진감 넘치는 축구 경기를 펼쳤으며, 지역사무소에서는 등산 등의 자체 체련행사 시간을 가졌다.

10월 21일 경남토론회 개최

지난10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위원의 사회로 황용경(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남중재부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위원장, 유럽 언론유관기관 시찰 마치고 귀국

조준희 위원장은 9박 10일간의 유럽 언론유관기관 시찰을 마치고, 지난 9일 귀국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바이에른 고등법원, 영국 PCC 등지를 방문하여 현지 언론피해구제 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위원회를 홍보했다.

직원 혁신 워크숍, 강원도에서 열려

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혁신 워크숍이 지난 11월 3, 4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다. 김지숙((주)태평양 뷰티교육센터) 강사의 친절 교육과 직원들의 자체 혁신 토론회가 이어졌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위원회의 비전과 업무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위원회, 2005년 정기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3일간 충남 부여문화관광호텔에서 '포털 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언론계 인사, 중재위원, 포털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털 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과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양삼승 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발제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언론법제관련문헌

강경근(2005, 가을). 편집권과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96호, 30-44

권호영(2005). 외국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 IP-TV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따른 규제 모델 및 정책개념에 대한 모색' 세미나 발제논문. 2005. 8. 19.

김경환(2005).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최 '인터넷 언론과 선거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발제논문. 2005. 12. 2.

김기태(2005).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개념 차이에 따른 문제점. 한국방송학회 200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11. 11.

김병국(2005, 가을). 언론관계법의 언론 자유 침해 논란 고찰. 언론중재, 통권 제96호, 17-29.

김서중(2005). 신문법과 관련 위헌 소송에 대한 문제점.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 '신문법 위헌 소송 관련 긴급 토론회' 발제논문, 2005. 6. 16.

김영욱(2005). 국가미디어 정책의 목표와 신문법. 한국언론재단 주최 '신문 산업의 위기와 국가 지원 방안' 토론회 발제논문, 2005. 7. 1.

김옥조(2005). MBC PD 수첩 관련 언론윤리상의 문제.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윤리 - MBC PD수첩의 황우석 교수팀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 보도를 중심으로' 토론회 발제논문. 2005. 12. 12.

김정대(2005). 미디어 공공성과 인터넷 신문 관련 법 개정 과제.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주최 '참여와 다양성, 사회진보를 위한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발족실 및 기념 워크숍' 발제논문. 2005. 10. 24.

김평호(2005, 가을). 방통융합 관련 법제 개편 논의의 비판적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0호, 121-142.

문재완(2005). 황우석과 PD 수첩 그리고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윤리 - MBC PD수첩의 황우석 교수팀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 보도를 중심으로' 토론회 발제논문. 2005. 12. 12.

박형상(2005, 가을). X 파일 사건보도를 지켜보며. 언론중재, 통권 제96호, 82-89.

변희재(2005, 가을). 포털사이트 왜 문제인가?: 포털 콘텐츠 위법 소송 잇달아...언론법 개정 통한 규제 필요.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5호, 166-177.

송종길(2005).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규제.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세미나 발제논문. 2005. 9. 22.

심상민(2005). 포털시대, 인터넷 신문의 그 전략: 블루 콘텐츠, 생태미디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인터넷 신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세미나 발제논문. 2005. 8. 19.

양경승(2005, 가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 통권 제96호, 45-81.

양삼승(2005).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5년도 정기세미나: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발제논문. 2005. 11. 30. ~ 12. 2.

원용진(2005). PD 저널리즘의 문제와 대안.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황우석 신드롬과

PD 수첩 그리고 언론보도의 문제' 토론회 발제논문. 200. 12. 13.

이상헌(2005, 9월). 민언련 포털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선정적인 포털, 더 선정적인 언론. 신문과 방송, 통권 제417호, 165-168.

이승선(2005, 여름).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1, 227-262.

이승선(2005).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 적격. 한국방송학회 200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11. 11.

이승훈(2005, 8월). 인터넷 언론 관련 법·제도 변화: 저작권, 인격권 등 관련 법규 강화 추세. 신문과 방송, 제416호, 164-167.

이영주(2005). 언론 과잉 시대의 언론윤리에 대한 소고: 아프로디지아와 필리아. 2005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10. 8.

이희용(2005, 가을). 현장에서 바라본 언론의 법적 환경 변화. 언론중재, 통권 제96호, 4-16.

임동욱(2005). 지역방송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방송학회 200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11. 11.

임종일(2005). 인터넷 언론과 선거보도의 공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최 '인터넷 언론과 선거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발제논문. 2005. 12. 2.

장행훈(2005, 9월). 불법도청 처벌하고 불법내용 공개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17호, 32-37.

정상윤(2005). 지역주의 구현을 위한지역방송의 법, 제도 정책적 방안. 국회 이광철 의원실 주최 '뉴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위상정립' 세미나 발제논문. 2005. 9. 15.

조대근(2005, 10월). 언론사 고충처리인 현황: 대부분 심의나 독자서비스 업무와 겸직. 신문과 방송, 통권 제418호, 160-161.

차정인(2005). 가짜 뉴스의 실태 및 폐해. 한국언론재단 주최 '온라인 뉴스 저작권 보증제도' 세미나 발제논문. 2005. 9. 23.

최경진(2005). 인터넷 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의 문제.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황우석 신드롬과 PD 수첩 그리고 언론보도의 문제' 토론회 발제논문. 200. 12. 13.

최성진(2005). 뉴미디어 시대 방통융합 현안 및 관련법제 검토.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주최 '뉴미디어시대 방송통신융합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속 대토론회' 발제논문, 2005. 8. 22.

한국언론재단(2005). 세계의 언론법제(상) 제17호. 서울: 한국언론재단.

황성운(2005).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문법령 규정.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최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공청회 발제논문, 2005. 6. 3.

황용경(2005).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경남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5. 10. 21.

황용석(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5년도 정기세미나: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발제논문. 2005. 11. 30. ~ 12. 2. □

http://www.pac.or.kr

On-Line 중재상담실

Q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심리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상 참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 이민자는 아니며 해외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언론사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 소속 직원, 변호사 등에게 조정신청 사건을 위임하여 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새 언론중재법에 대한 질문*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나요? 법이 개정되어서 반드시 거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반드시 거쳤어야 했습니다(필요적 전치주의).

하지만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중재(실질적으로는 조정)는 조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FAQ 에 보니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직접 조정·중재신청을 해야만 하고 보도내용 중 팬과 관련된 사항이 없다면 팬은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아니기에 조정·중재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심의팀입니다.

시정권고 신청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3자도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수단입니다.

시정권고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지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구술, 전자우편 등 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정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Q 중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KBS 전주방송 뉴스에서 2005. 8. 31 ~ 2005. 9. 2 저녁뉴스까지 연일 보도하고 있는 "군산 항운노동조합"관련하여 일방적인 편파보도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글 올립니다.

문의사항은

1. 공영방송인 KBS가 현재 수사 중인 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제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

2. 수사결과 다른 사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보도 내용이 비슷한 사항을 연일 계속해서 방송해도 되는지

3. 공영방송 KBS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민간인인 제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보도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지라 정정보도 보다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듯 보입니다. 물론, 추후에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 무혐의가 밝혀진다면 형사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보도에 직접 언급이 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사안의 경우 항운노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도내용이 비슷한 사항을 연일 계속해서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보도내용이 현저히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당사자가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잡지책에 올라온 사진

저의 형이 형사상 잘못을 해서 2004년 11월 15일 부터 검거가 된 24일까지 공개수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검거가 되었으니 공개수배는 자동으로 해제가 됐구요.

그런데 모 잡지책 2005년 1월호에서 저의 형 사진과 다른 여러 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죄자를 찾으라는 퀴즈가 나왔다고하는군요.

그리고 그 사진은 경찰서에만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잡지회사에서 사진을 구했는지도 의문이구요.

저의 형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교도소에서 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 사안은 신청인 형의 초상권 및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 형의 공개수배가 해제되었고 흥미위주의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의 공공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인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할 소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잘못된 보도 수정바랍니다.

www.economist.com(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 기사에서 조류독감이 200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을 몇 곳에 싣고 있어 직접 수정요청 해보았지만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 기사로 인하여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A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을 상대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해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대해서는 관할이 미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매체는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방송되는 언론보도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질의한 보도 내용에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조정 및 중재 신청과 처리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상담센터는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객 방문시 상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하루 24시간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언론사, 대학, 기업,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정 권 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6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8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8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조정 및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6개,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6개 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 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 구역

• 조정 및 중재관할권은 조정 및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사(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

넷 신문 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조정과 중재

청구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도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및 처리 절차

▶ 조 정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처리결과로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등이 있습니다.

▶ 조정신청 방법

- 서면에 의한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

는 손해배상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보도 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담당 직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조정 대상 표현물의 내용, 보도일 및 인지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 원하는 보도문, 손해배상액, 작성일 등을 진술하여 담당직원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부장은 신청인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즉시 이를 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정 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조정 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처리절차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조정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

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조정처리결과

• 합 의 : 피해자와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가게 되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정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언론사를 피고로 합니다.

• 조정불성립 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중 재

•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재신청 방법

- 중재합의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 소정 양식).

• 문제가 된 보도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중재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대상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정기간행물(신문, 잡지)·뉴스통신·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재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 처리절차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합의(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 : 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결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절차는 종국결정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여 중재부가 종료결정을 한 경우 종료됩니다.
•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중재처리 결과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

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합니다.

• 개인적 법익으로는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 사회적 법익으로는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자살 보도에 대한 상세묘사, 마약에 대한 상세보도 금지 등이 있습니다.
• 국가적 법익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국가기밀 누설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시정권고 신청 가능

▶ 자체심의 이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언론 보도가 시정권고심의기준에서 정한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 행 : 2005. 7. 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한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 (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

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중재절차 등의 중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정처리기간 및 직권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보도물의 공개) ①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당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용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요구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회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접수일은 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제14조 (중재의 개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5조 (중재신청의 취하) ①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 (시정권고소위원회)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시정권고의 신청) 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권고 요구대상인 언론사명, 보도일자, 보도내용 및 시정권고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의 신청을 구술로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서류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의 신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심 청구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재심청구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권고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